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Corruption Practices in Sports and Related
System Improvements

황지태·남기연·이윤영



발간사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스포츠계 종사자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였다. 본 연구를 구상하여 신규과제로 제안한 시기는 2020년 초반으로 코로나 사태가 막 발생한 시점이긴 하였으나 조만간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기였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시작해야 했는데, 이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연구를 수행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스포츠계는 관광업계나 문화예술계 등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더 힘든 분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계의 부패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시스템적 미비가 한편으로는 부패와 비리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스포츠계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포츠계의 기본적인 열악함에 더해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스포츠계의 부패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은 덜 힘든 시기에 과제가 수행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싶었다.

그래도 어쨌든 갈 길은 가야 했다. 제도적 부실로 인해 조직사유화 문제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승부조작과 입시비리 등으로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스포츠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데에 연구 시점의 문제를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를 모두 마치고 보니 연구책임자의 불찰로 인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공동연구진들의 노고를 빛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빛을 바래게 한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통감할 따름이다.

그나마 보고서로서의 최소한의 골격이라도 갖추게 된 것은 공동연구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연구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 연구의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1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단국대학교 법학과의 남기연 교수님, 한라대학교의

ii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이윤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연구 보조를 맡아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태훈 조사연구원님과 홍유진 인턴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윤영 교수님과 더불어, 공동연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를 위해 체육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협조를 해주신 부경대학교의 김대희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황지태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황지태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6
1. 연구방법	6
2.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황지태·남기연	
스포츠계 부패 문제 개관	9
제1절 개념 정의 문제와 유형 분류	11
1.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스포츠계 부패	11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	12
제2절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별 주요 언론보도 사례	17
1. 조직사유화	17
2.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19
3. 입시비리	22
4. 승부조작	23
5. 기타	25
6. 참고 : 스포츠계 부패 해외 사례	26

제3절 각종 수치로 살펴본 스포츠계 부패 실태	27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7
2. 기타 자료에 나타난 체육계의 청렴 수준	29

제3장 황지태·이윤영

스포츠계 부패인식조사 설문지 분석결과 33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35
1. 조사개요 및 조사 항목	35
2. 조사 진행 절차	37
3.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방식	38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40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0
2.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2
제3절 체육계 전반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45
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45
2.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56
제4절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65
1.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분석	65
2. 소속 단체 및 팀의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70
3. 소속 단체 및 팀의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76
제5절 체육계 반부패 시스템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85
1.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에 관한 일반적 분석	85
2.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적발 및 처벌에 관한 분석	93
제6절 체육계 반부패제도 관련 응답결과 분석	98
1.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의 인지, 효과에 관한 일반적 분석	98
2. 체육계 부패와 비리 근절 관련 정책에 관한 일반적 인식	110

제7절 체육계 부패 상황판단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12

1. 예시1에 관한 인식 분석 113
2. 예시2에 관한 인식 분석 116
3. 예시3에 관한 인식 분석 119

제8절 체육계 부패 및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23

1. 체육계 전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결과 124
2.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126
3.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적발·처벌 128
4. 체육계 반부패제도에 관한 분석 132

제4장 이윤영·황지태

스포츠계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35

제1절 심층면접의 대상과 방법 137

제2절 선수 대상 심층면접 결과 138

1. 대인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138
2. 기록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144

제3절 지도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52

1. 개인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152
2. 단체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158

제4절 심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66

제5절 스포츠행정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 174

1. 종목협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174
2. 지방체육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180

제6절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소결 185

제5장 남기연

스포츠계 부패방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189

제1절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의 변천과 현황	191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191
2. 대한체육회 정책	199
제2절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204
1. 국민체육진흥법의 역할과 변화	204
2. 스포츠산업 진흥법 : 프로스포츠 분야	210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11
제3절 스포츠계 부패/비리 관련 국내외 기관 현황	217
1. 국내 기관 현황	217
2. 국외 기관 참조	221

제6장 남기연

스포츠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25

제1절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227
1. 스포츠단체 관리 주체 현황	227
2.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독상 부적절 사례	230
3.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232
제2절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236
1.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한계	236
2.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238
제3절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241
1.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241
2.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방안	243
제4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정비	245
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징계기준 현황	245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선 방안	247

제7장 황지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49
제1절 연구의 의의	251
제2절 연구의 한계	252
참고문헌	255
Abstract	263
부 록	265
부록1 조사 설문지	265
부록2 체육계 문제점에 대한 젊은 체육인들의 서면 답변	276
부록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비리 관련 조항	282

표 차례

[표 2-1]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대상	13
[표 2-2] 조직사유화의 규정에 따른 분류-1	15
[표 2-3] 조직사유화의 규정에 따른 분류-2	16
[표 2-4]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대한체육회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27
[표 2-5]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28
[표 2-6]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29
[표 2-7]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산업부문별 종합 결과	31
[표 3-1] 설문조사 항목	36
[표 3-2] 조사 진행 절차	37
[표 3-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1
[표 3-4] 응답자의 현재 주 활동 분야	43
[표 3-5] 선수 응답자의 현재 소속	44
[표 3-6] 응답자의 종목단체 선수 등록 경험 유무(선수 제외)	45
[표 3-7]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45
[표 3-8] 체육계 전반_부패 심각성(%)	46
[표 3-9]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1순위)	47
[표 3-10] 체육계 전반_가장 심각한 체육단체 부패행위 (1순위)	48
[표 3-1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	49
[표 3-12]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된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인식 수준	50
[표 3-13] 체육계 전반_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 심각성	51
[표 3-14] 체육계 전반_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 심각성	52
[표 3-15] 체육계 전반_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심각성	53
[표 3-16] 체육계 전반_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심각성	54
[표 3-17] 체육계 전반_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심각성	55
[표 3-18]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1순위)	57

[표 3-19] 가장 심각한 체육계 현장 부패행위 (1순위)	58
[표 3-20]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2순위) ...	58
[표 3-2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 ...	59
[표 3-22] 체육계 전반_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심각성	60
[표 3-23] 체육계 전반_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심각성	61
[표 3-24] 체육계 전반_승부조작 문제 심각성	62
[표 3-25] 체육계 전반_편파판정 문제 심각성	63
[표 3-26] 체육계 전반_입시 관련 비리 심각성	65
[표 3-27]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66
[표 3-28]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부패 심각성	67
[표 3-29]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1순위)	68
[표 3-30]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가장 심각한 부패행위 (1순위)	69
[표 3-31]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	70
[표 3-32]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단체관련 부패행위의 정도	71
[표 3-33]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 심각성 ...	72
[표 3-3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 심각성	73
[표 3-35]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심각성	74
[표 3-36]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심각성 ...	75
[표 3-37]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심각성	76
[표 3-38]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1순위)	77
[표 3-39] 가장 심각한 소속단체 혹은 팀 현장 부패행위 (1순위)	78
[표 3-40]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2순위)	78
[표 3-41]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개인관련 부패행위의 정도	79
[표 3-42] (고교 시절 소속 팀에서) 입시와 연관된 비리의 심각성	80
[표 3-43]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심각성	81
[표 3-4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심각성	82
[표 3-45]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승부조작 문제 심각성	83
[표 3-46]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편파판정 문제 심각성	84
[표 3-47] 고교 시절 소속 팀_입시 관련 비리 심각성	85

[표 3-48] 체육계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	86
[표 3-49] 부패행위 신고 의향	86
[표 3-50] 체육계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 경험	87
[표 3-51] 부패행위 신고 경험	87
[표 3-52]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기관 (복수응답 가능)	88
[표 3-53] 신고행위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89
[표 3-54]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90
[표 3-55] 신고행위의 일반적 효과성	90
[표 3-56]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1순위)	91
[표 3-57]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1순위)	92
[표 3-58]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2순위)	93
[표 3-59]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94
[표 3-60]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 적발에 대한 평가	94
[표 3-61]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95
[표 3-62] 부패행위자 처벌에 대한 평가	96
[표 3-63]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1순위)	97
[표 3-64]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2순위)	97
[표 3-65] 체육계 내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인지 정도	99
[표 3-66]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1) 스포츠윤리센터	100
[표 3-67]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101
[표 3-68]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102
[표 3-69]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103
[표 3-70]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104
[표 3-71]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105
[표 3-72]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 제도적 장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106
[표 3-73] 제도적 장치 효과성 1) 스포츠윤리센터	107
[표 3-74] 제도적 장치 효과성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107
[표 3-75] 제도적 장치 효과성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108
[표 3-76] 제도적 장치 효과성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109
[표 3-77] 제도적 장치 효과성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109
[표 3-78] 제도적 장치 효과성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110

[표 3-79]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 ..	111
[표 3-80] 부패 근절을 위한 정책 중요도 (1순위)	111
[표 3-81]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2순위) ..	112
[표 3-82]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114
[표 3-83]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누군가(지도자 또는 회계담당자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14
[표 3-84]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소속 단체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15
[표 3-85]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117
[표 3-86]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지도자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18
[표 3-87]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체육팀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19
[표 3-88]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121
[표 3-89] 위 예시에서 B팀 지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21
[표 3-90] 위 예시에서 A팀 감독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122
[표 5-1]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 내용	192
[표 5-2]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 내용	200
[표 6-1] 4대 스포츠계 부패 중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경우의 판단기준 유무 여부	24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7
[그림 2-1] 2020년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30
[그림 2-2] 의료·체육·문화예술계의 문제	32
[그림 3-1] 체육계의 부정부패에 관한 인식 조사	35
[그림 3-2] 온라인 조사 설계 예시1	38
[그림 3-3] 온라인 조사 설계 예시2	39
[그림 5-1] 스포츠 공정 관련 기관 관계도	217
[그림 6-1] 스포츠 단체 조직관리 현황	230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각종 문헌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계 부패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다각적 파악을 시도함과 더불어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현황을 비롯하여 스포츠계 부패 관련 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혐의의 스포츠비리 개념을 정리한 후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따라 스포츠계 부패의 주요 언론보도 사례들을 살펴보았고(비교 참고용으로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봄), 뒤이어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소속 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 처벌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계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은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스포츠계 부패 근절 및 예방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제6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등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 결과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전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론

황 지 태

제1절 |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주요 스포츠 국제대회(IOC 하계 및 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5번째로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이다. 하지만 스포츠계가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사유화, 횡령 및 배임,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부패에 노출되어 스포츠의 절대가치인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과 '청렴성(Integrity)'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계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계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인권 문제는 그 심각성에 걸맞게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 그 실태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들(정혜원·권수현·장안식, 2019; 정혜원·강지현, 2020)이 연이어 출간되는 등의 연구 성과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비리신고센터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내용상 스포츠계 부패 신고 건수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제2장 제1절 내용 참조). 하지만, 스포츠인권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¹⁾ 스포츠계 부패의 실태와 대책에 관해서는 연구 성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계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서 주로 스포츠계 부패 문제에 집중하여 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나라

1) 스포츠계 부패 수준 역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지표들이 존재한다. 제2장 제3절 참조.

6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부패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조직사유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스포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조직사유화는 지역·종목별 지연 및 학연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 경기단체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총회에서 선발되는 점 등 스포츠 조직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 스포츠 발전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발전의 주요 저해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사유화, 횡령 및 배임, 입시비 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계의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근의 스포츠계의 부패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국내외 법령 및 제도, 스포츠계 부패 근절을 위한 관련 조직의 분석 등을 통해 현재 스포츠계 부패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스포츠계의 부패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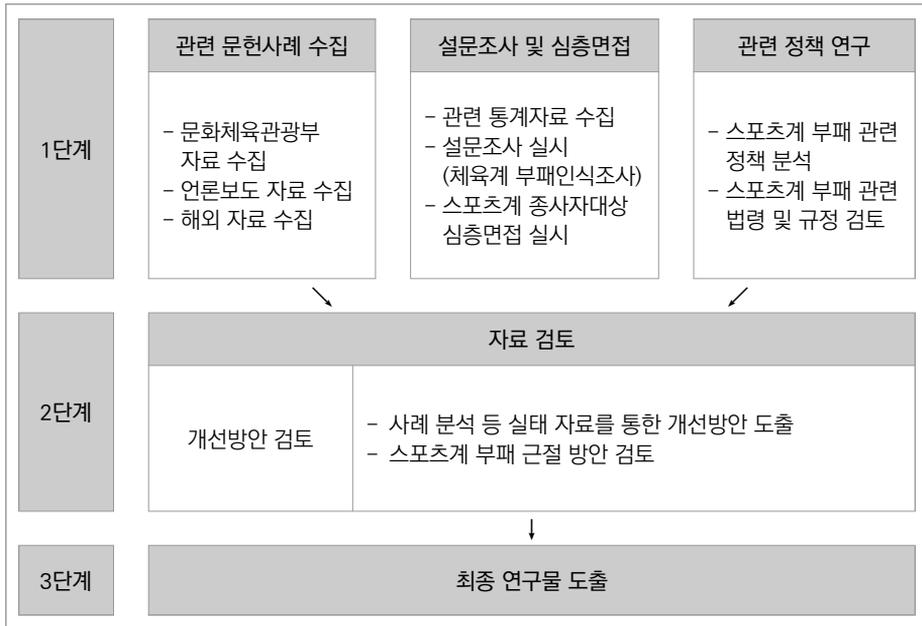
제2절 |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각종 문헌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계 부패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다각적 파악을 시도함과 더불어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현황을 비롯하여 스포츠계 부패 관련 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방법과 추진전략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1]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혐의의 스포츠비리 개념을 정리한 후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따라 스포츠계 부패의 주요 언론보도 사례들을 살펴보고(비교 참고용으로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봄), 뒤이어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선수, 지도자, 감독, 스포츠행정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소속 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 처벌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계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8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제4장에서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은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스포츠계 부패 근절 및 예방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등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 결과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전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2 장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부패 문제 개관

황지태 · 남기연

스포츠계 부패 문제 개관

제1절 | 개념 정의 문제와 유형 분류

1.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스포츠계 부패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스포츠계 부패라는 용어보다 ‘스포츠비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를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포츠계 부패’ 개념과 사실상 일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스포츠비리를 ①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비리’(협회의 스포츠비리)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스포츠계 부패’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통상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 ‘스포츠비리’에 스포츠계의 폭력이나 성폭력 혹은 그 밖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이다(광의의 스포츠비리). 이에 본고에서는 그 혼란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스포츠비리’란 용어 대신에 ‘스포츠계 부패’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서는 스포츠인권센터가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②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③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④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였다. 본고에서는 ①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과 ⑤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거하여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는 ①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② 체육 관련 입학비리²⁾, ③ 폭력·성폭력, ④ 승부조작³⁾, 편파판정, ⑤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⑥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⑦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⑧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등을 징계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스포츠계 부패 행위(협회의 스포츠비리)와 그 외의 것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대상 8개 사항 중 ①번 사항(금품수수, 회계부정 등), ②번 사항(입시 비리), ④번 사항(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각각의 세부 분석 유형으로 삼고, 나머지 ③번

2) 참고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별표 1)에서는 입학비리의 유형을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3)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승부조작을 승패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승부 또는 득점을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항(폭력과 성폭력), ⑤번 사항(음주운전과 불법도박 등), ⑦번 사항(대회 질서 문란 행위), ⑧번 사항(기타 행위)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표 2-1]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대상

유형	내용
스포츠계 부패 행위 (협회의 스포츠비리)	①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② 체육 관련 입학비리
	④ 승부조작, 편파판정
그 외	③ 폭력·성폭력
	⑤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⑦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⑧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이상과 같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유형분류법에 따른 스포츠계 부패 유형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조직사유화’라는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유형과 때에 따라 어느 정도 겹치기도 하지만 완전히 포섭되지도 않는 유형이면서 여러 자료에 중요한 유형으로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2016년 접수된 사례 총 415건 중 조직사유화에 관한 사안이 113건(전체 건수의 2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⁴⁾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9월 2일 신고 및 상담 접수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총 382건의 신고 및 상담을 접수하였는데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제외하고는 조직사유화가 횡령·배임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⁵⁾

조직사유화의 주요 사례로는 경기단체 회장 또는 결정권자의 지위 오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횡령, 사무직원들의 횡령조력행위 그리고 가족들을 결정권이 있는 사무주요직에 배치하는 등의 단체 운영 사유화 등이 있다. 조직사유화에 있어 횡령은 주로 조직 운영과 시행 사업에 필요한 목적 자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지원금을 갈취하는 행태로 나타난다.⁶⁾ 이처럼 스포츠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는 조직사

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18면.

5) 스포츠윤리센터,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추진 성과”, 보도자료, 2020.12.31.

유화는 금전과 관련되어 대부분 횡령·배임으로 귀결된다. 이 외에도 승부조작, 입시비리 또한, 조직사유화의 연장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비록 형태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횡령이나 배임 혹은 승부조작 등의 행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횡령·배임이나 단순한 승부조작 등과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조직사유화 유형을 스포츠계 부패 내지 스포츠비리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2018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에 접수된 스포츠 비리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학비리, 승부조작) 중 횡령·배임 등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총 810건의 사건 중 조직사유화가 251건, 31%의 비율로 다른 스포츠 비리⁷⁾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사유화가 스포츠 비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근거로 조직사유화 같이 스포츠 단체의 구조적 문제가 입학비리, 승부조작 등과 같은 개인적 내부문제로 연결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⁸⁾ 또한, 조직사유화를 조직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로 설명하기도 한다.⁹⁾

조직사유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서로 협력해가는 2인 이상의 모임을 의미하는 조직과 조직의 출발 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유로 변경되는 사유화라는 명사의 합성어이다. 즉, 조직사유화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공동 또는 법인의 소유로 만든 조직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소유와 같이 변화되고 사용되는 조직의 운영 성향이라고 정의되어 진다.¹⁰⁾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 조직사유화를 정의하면, 스포츠 관련 단체 및 조직이 특정 인물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의 영향력으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 및 이해관계인의 안위와 재산의 축적, 권력의 유지 등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라고 할

6)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백서”, 2020.02, 555면.

7) 승부조작 89건(11%), (성)폭력 33건(4.1%), 입학비리 23건(2.8%) 순으로 스포츠비리 사건이 처리되었다.

8)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백서”, 2020.02, 556면.

9) 정배근, “스포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상 특별 취급의 정당화 여부와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02, 28면.

10) 정태린, 권관배, 김창우, “대한공수도연맹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조직사유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16, 371면.

수 있을 것이다.

조직사유화의 유형은, 먼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상의 따른 분류에 따라자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동 규정 제25조(징계대상)에서는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의 비위 사건에 대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직사유화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구분¹¹⁾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별표 1]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분하여 조직사유화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 [표 2-2] 조직사유화의 규정에 따른 분류-1

규정	내용	
제25조(징계대상)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조직사유화의 유형은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규정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른 분류로도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속적으로 혈연, 학연 등이 관여된 조직사유화 비위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규정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스포츠단체 임원의 구성 비율,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여 임원선발 및 구성에 있어 친족의 선임을 금지하고 동일대학 임원의 비율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직사유화를 친족에 의한 비위행위와 학연 및 지연에 의한 비위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11) 조직사유화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조직사유화의 특성인 다른 비위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과 같이 다른 스포츠 비리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직권 남용, 부정청탁 등의 모습을 한 조직사유화를 통해 다른 유형의 비리 행위가 자행되기도 한다.

» [표 2-3] 조직사유화의 규정에 따른 분류-2

규정		내용
정관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시도 체육회 규정	혈연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사무처) ④ 시·도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학연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 비율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회원 종목 단체 규정	혈연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사무처) ④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학연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고에서 다룰 주요 스포츠계 부패 유형(조직사유화, 금품거래, 입시 비리, 승부조작)을 중심으로 유형별 부패 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별 주요 언론보도 사례

1. 조직사유화

가. 연맹회장의 비리 행위

대한△△연맹의 회장 A는 우리나라 ○○종목의 독보적인 인물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금 유용 등의 조직사유화 및 횡포가 심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맹의 사무처 직원들과 A가 합심하여 실제 활동이 없었던 심판 및 코치 수당 등을 만들어 63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정부가 지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6억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유명회사 3곳을 설립하여 가공거래, 납품액 허위 조작 등으로 총 13억 4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나. 특정인물의 영향력

2014년 1월, A는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을 당시 2013년 1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을 맡은 B가 중징계를 받도록 개인적인 관계망을 이용하였다. 이는 부회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대표 지도자를 징계한 것이다. 또한, A는 2014년 3월에는 연맹 부회장을 사임하였지만 연맹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의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 회원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정관에서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임이사회를 운영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특정인물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빙상계에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³⁾

12)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52면.

1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05.23.

다. 지위를 이용한 수당 착복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A를 포함한 4명의 러시아 국적 선수를 국가대표선수, B를 포함한 5명을 국가대표 외국인코치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연맹의 임원 C는 A명의 한국계좌를 만들어 국가대표 수당 등을 선수 및 코치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관리하였다. 2015년 6월 10일부터 2019년 4월까지 국가대표 수당 등으로 입금한 764,205,229원 중 311,185,306원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맹 임원 C 본인, C의 회사 직원, C의 여동생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¹⁴⁾

라. 실무담당자의 비리 행위

2016년, Korea Baseball Organization(KBO)의 중국 진출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 담당자 A는 관련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회사인 (주)B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였다. A는 사업의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평가위원 총 5인 중 본인과 내부직원 3명을 포함하였다. A는 (주)B와 (주)C가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C의 실적을 (주)B의 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B가 일부의 계약불이행이 있었음에도 잔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였다.¹⁵⁾

마. 징계 대상자와 징계권자의 동일인 사례

대한체육회는 대한○○경기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A가 심판장 자격요건인 1급 심판원이 없이 선수권대회에서 심판장 역할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한 체육회는 A가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경기연맹에 위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사건이첩을 하여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다. 연맹 조사에서는 A가 심판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1급 심판원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40경기 이상의 시간계측원으로 활동

14)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39면 이하.

15)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비리 관련 수사 의뢰”, 보도자료, 2017.07.17.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심판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판원 자격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연맹에 있어 A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⁶⁾

바. 조직사유화 사례 분석

2018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횡령 및 배임 등의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사건 총 810건¹⁷⁾ 중에 조직사유화가 251건(3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단체의 구조적 문제인 조직사유화가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다른 스포츠 비리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다.¹⁸⁾ 스포츠 조직사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단체 회장 및 임직원, 즉 단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에서의 영향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해, 그들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 영향력의 유지를 위해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되면서 (성)폭력,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개인적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가. 본인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문체부는 고양 자이크로FC를 조사하여 프로축구 및 유소년, 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사업비 중 상당액(3억 8천 2백만 원)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고양 자이크로FC의 운영비로 유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이크로FC 재무이사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B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자이크로FC 이사장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 임직원의 개인계좌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세탁하고 횡령하였다.¹⁹⁾

16)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69면 이하.

17) 스포츠 비리 사건 중 높은 비위 사례별로 나열하면, 횡령 및 배임(414건, 51.1%), 조직사유화(251건, 31%), 승부조작(89건, 11%), (성)폭력(33건, 4.1%), 입시비리(23건, 2.8%) 순이다.

18)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백서”, 2020.02., 556면.

1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 적발”, 보도자료, 2016.10.13.

나.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운영비 유용

서울특별시 게이트볼협회 임원 A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매월 600,000원에서 1,000,000원씩 계 49,600,000원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수령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과 3심에서는 A가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금전의 사적사용은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한다.²⁰⁾

다. 대회 진행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대한당구연맹의 전 전무 등 임원과 사무국 직원, 경기 및 강원도 지부, 시군구생활체육연합회 임원이 연맹 주최 대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당구연맹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업체로 하여금 집행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로 업체의 지급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과다비용을 지출한 후 임직원들의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원의 미술품을 연맹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구용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를 처리하거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근임원 등에게 급여성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비리를 자행하였다.²¹⁾

라. 이면계약으로 지원금 유용

대한카바디²²⁾협회는 부산에 있는 시설을 국가대표의 훈련을 위한 숙박과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업자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9개월간 임대료 월 17,850,000원으로 책정하였지만, 협회는 A와의 이면약정으로 실제 임대료

20)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72면.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당구연맹 비리 적발”, 보도자료, 2016.02.25.

22)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다. 슌래잡기, 피구, 격투기 등이 종합된 형태의 경기방식으로 시합이 진행된다.

를 월 7,8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계약과 이면약정의 차액은 A가 기부금 형식으로 협회에 반환하였고, 협회는 이를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였다.²³⁾

마. 카드깡으로 지원금 횡령

□□종목 감독 A는 운동장비 및 시설에 관한 비용 영수증을 위조하여 차액을 남기고, 식당 등 카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실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등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급되는 장비구매대금 약 2억 원, 지도자 수당 약 5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²⁴⁾

바. 유령 직원과 인건비 회계 조작

강원도골프협회 임원 A는 이사회나 총회의 심의 및 승인 없이 B에게 협회 임원 역임을 부탁한다. A는 B에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간사로 등록하고 간사급여를 받아 활동비로 사용하라 조언하고, B는 자신의 아내 C를 협회 간사로 등록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C가 간사급여를 받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여 2010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92,300,000원을 횡령하였다.²⁵⁾

사.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사례 분석

스포츠 비리 행위는 비위 행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비위행위의 목적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수뢰하고,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등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도 한다.²⁶⁾ 또한,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자금세탁, 유용, 회계조작 등 스포츠단체의 임직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입시비리와 같은 스포츠 비리도 결국은 금전적

23)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33면 이하.

2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72면.

25)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133면 이하.

26) 앞서 살펴 본 2018 체육백서에 의하면,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사건 중 횡령 및 배임 사건이 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스포츠 비리의 끝에는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입시비리

가. 감독·학부모·심판이 협력한 입시비리

고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특기생 입학에 대해 고교운동부 감독 ○○○는 A 학부모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B 대학 운동부 감독에게, C 학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D 대학 운동부 감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각 대학 운동부의 감독, 입시 브로커 등과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는 소속 협회 심판을 매개자로 하여 고교운동부 선수의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 수천만 원의 금전을 전달하였다. 2012년 대학 9곳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체육특기생 72명을 선발하기 위해 29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대학은 고교운동부 선수 7명을 선발하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으로 5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비용은 대학 운동부에서 실시하지 않은 해외전지훈련을 방자, 서류 조작을 통한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⁷⁾

나. 허위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한 체육 특기생 입학

고교운동부 선수 A의 부모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기협회 사무국장 C가 아들인 A가 소속된 운동종목의 경기실적 등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고교운동 선수인 A가 대회 실적, 경기 능력 등이 뛰어나지 않아 고교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위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토로한다. 이에 사무국장 C는 허위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한다. 사무국장 C는 대회 출전횟수, 팀 기여도 등에 따라 발급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A의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경기실적 등을 꾸며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A는 △△대학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²⁸⁾

2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108면.

28)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42면.

다. 입시비리 사례분석

스포츠가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시작된 체육특기생 제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승리지상주의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점을 만들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시스템의 불공정 및 불투명은 스포츠 공정성 붕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²⁹⁾ 사례를 통해 입시비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입시비리는 다른 스포츠 비리와 달리 당사자에 학생선수의 부모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스포츠 비리는 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 외에는 다른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시비리에는 학부모가 등장하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입시비리 당사자에 학부모가 포함되는 경우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입시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동 규정³⁰⁾에는 학부모를 징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³¹⁾ 이처럼 입시비리는 학생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도 비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승부조작

가. 국군체육부대의 인연으로 묶인 프로선수의 승부조작

과거 국군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 한 현역 프로리그 선수 20여 명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리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전 베팅을 한 후에 서로 자신의 경기에서 실수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걸어놓은 팀이 승리하도록 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배당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³²⁾

나. 감독 아버지의 엇나간 부정

○○대학교 유도부 감독 A는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아들의 경기실적을 조작하였다. A는 다른 학교에서 감독, 코치 등의 활동을

29) 한승백, “스포츠계의 공정 이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스포츠과학 제153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15면 이하.

3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에 따르면, 입시비리의 징계대상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운동부로 한정하고 있다.

31)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32)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20면.

하고 있는 지인 및 후배 지도자들에게 아들의 경기결과 조작을 부탁하여, 상대방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한판승으로 경기를 지거나 시합을 포기하도록 해 자신의 아들이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만들었다. 뒤늦게 시작된 경찰조사를 통해 대회 5경기 중 4경기에 관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³³⁾

다. 협회 임원진과 심판이 협력한 승부조작

전국체전 출전을 위한 △△시 고등부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관련 협회의 임원 A가 승부조작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단체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같은 대학 출신의 B에게 선발 청탁을 받은 임원 A는 기술심의회 의장, 심판위원장 등과 경기 시작 전 만나 해당 경기 심판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³⁴⁾

라. 전직 프로선수가 관련된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프로선수 A는 300만 원을 받고 2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역대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가 300만 원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에 의심을 품고 자세히 조사한 경찰수사에 따르면, 전직 프로선수 B가 브로커 역할로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는 5년 전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로 이번 사건 이외에도 다른 승부조작 사건에서도 전·현직 프로종목 선수들의 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⁵⁾

마. 승부조작 사례분석

스포츠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인기를 얻고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가 가지는 공정성, 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근간인 투명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승부조작은 프로리그에서 불법도박에 이용되면서 조명을 받아 왔지만, 지금은 그 분야가 아마추어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례에서와 같이 지자체

33)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26면.

3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5, 29면.

3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82면.

대표선발에서부터 입시비리에 이르기까지 승부조작의 목적과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학연, 지연 등의 개인적 관계와 선후배사이의 확실한 상하관계는 승부조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기타

가. 체육단체 문서를 조작해 부당이득

대한수영연맹은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관련 행사에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훈련에 사용하는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후, 연맹 임원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클럽의 강습장으로 올림픽수영장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는 2010년부터 대한수영연맹의 문서를 조작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만 약 6천5백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⁶⁾

나. 공개공고 절차 없이 선발된 지도자

대한탁구협회는 2015년도 국가대표 지도자로 코치 4명을 선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수한 실력 및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공모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근거로 지도자 선발 공개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협회의 지도자 선발 위원회에서는 임의로 남자 탁구대표팀 코치로 A와 B, 여자 탁구대표팀 코치로 C와 D를 선발하였다.³⁷⁾

다. 낙하산 인사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출범 초기 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前 국장 A는 신고센터의 운영이 단기간에

3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보조금 횡령 및 협회 권한 남용한 사의 추구에 철퇴”, 보도자료, 2016.02.11.

37)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49면.

종료될 것이고, 개인적 관계로 알고 있는 B의 성격이 꼼꼼하고 체육과 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체육행정 전문가로서 선발에 적격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B에게 센터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수락을 받았다. 하지만 A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규정상의 공개채용 원칙에 어긋나게 B를 채용하였다.³⁸⁾

6. 참고 : 스포츠계 부패 해외 사례

가. 국제스포츠단체 회장의 직권 남용

국제축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前 회장 Sepp Blatter는 2005년 카리브해 연안 축구연맹(CONCACAF) 회장 Jack Warner와 체결한 TV 중계권 협약에 따른 부실경영 내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5년 그를 포함한 총 11명의 고위 당국자들이 체포되었다. 또한, 2022 카타르월드컵 유치과정 중에는 카타르가 아프리카축구연맹 회장, 코트디부아르 FIFA 위원 등 투표권을 가진 몇몇 당국자들에게 투표를 얻는 조건으로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³⁹⁾

나. 국제스포츠단체 임원들의 조직사유화

국제육상연맹(Inter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 IAAF) 임원들의 조직사유화 사례⁴⁰⁾로는 Lamine Diack는 회장 재직 당시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IAAF의 마케팅 컨설턴트와 독립컨설턴트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핑방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력을 IAAF의 도핑방지 부서에 임명한 이후, 적법한 절차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러시아의 도핑연루 육상선수들의 대회 참여가 제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Diack 회장과 그의 아들들이 러시아와 터키의 선수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38)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128면 이하.

39) 국제스포츠재단, “클린스포츠 활성화 방안”, 집중조감 제5호, 2016.10, 7면.

40) 국제스포츠재단, “클린스포츠 활성화 방안”, 집중조감 제5호, 2016.10, 7면.

제3절 | 각종 수치로 살펴본 스포츠계 부패 실태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가. 대한체육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나라 스포츠계 관련 단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2-4]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대한체육회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1	5등급/8.43, -0.08	5등급/8.70, -0.09	4등급/7.80, 0.05
2012	4등급/7.86, -0.57	4등급/8.11, -0.59	4등급/7.39, -0.41
2013	5등급/7.46, -0.40	5등급/7.91, -0.20	4등급/7.26, -0.13
2014	5등급/7.46, 0	5등급/7.78, -0.13	5등급/6.78, -0.48
2015	5등급/7.83, 0.37	5등급/7.96, 0.18	4등급/7.58, 0.80
2016	4등급/7.69, -0.14	5등급/7.87, -0.09	4등급/7.33, -0.25
2017	5등급/7.63, -0.06	5등급/7.72, -0.15	3등급/7.34, +0.01
2018	5등급/7.54, 동일	5등급, 동일	4등급, ▼1등급
2019	5등급/7.12, 동일	5등급/6.98, 동일	3등급/7.55, ▲1등급
2020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동일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각 연도 보도자료.

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한체육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은 4등급을 받았던 2012년, 2016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5등급으로 이 기관의 상대적인 청렴도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청렴도 등급이 더욱 낮았는데, 2012년과 2020년의 4등급 외에는 모두 5등급이었다. 그나마 2020년도에 청렴도 지수가 예년에 비해 조금 나아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렴도 측정 결과

대한체육회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스포츠계의 주요 유관 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대한체육회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비록 청렴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위권 수준은 유지해 왔다.

먼저 지난 10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5]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1	2등급/8.95, 0.23	2등급/9.18, 0.35	2등급/8.54, 0.11
2012	3등급/8.50, -0.45	2등급/8.97, -0.21	3등급/8.12, -0.42
2013	3등급/8.30, -0.20	3등급/8.61, -0.36	2등급/8.37, 0.25
2014	4등급/7.94, -0.36	3등급/8.31, -0.30	3등급/7.78, -0.59
2015	4등급/7.80, -0.14	5등급/7.92, -0.39	2등급/8.52, 0.74
2016	3등급/8.27, 0.47	3등급/8.46, 0.54	2등급/8.34, -0.18
2017	3등급/8.45, +0.18	3등급/8.71, +0.25	3등급/7.98, -0.36
2018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동일
2019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020	3등급, 동일	3등급, 동일	5등급, ▼1등급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각 연도 보도자료.

다음으로, 지난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6]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1	4등급/8.23, -0.20	3등급/8.55, -0.24	4등급/7.59, 0.16
2012	2등급/8.15, -0.08	2등급/8.72, 0.17	3등급/7.9, 0.31
2013	3등급/7.67, -0.48	3등급/8.21, -0.51	5등급/7.20, -0.70
2014	3등급/7.55, -0.12	2등급/7.98, -0.23	4등급/7.27, 0.07
2015	2등급/7.59, 0.04	2등급/8.21, 0.23	4등급/7.18, -0.09
2016	4등급/7.20, -0.39	2등급/8.09, -0.12	5등급/6.48, -0.70
2017	4등급/7.25, +0.05	2등급/8.06, -0.03	5등급/6.32, -0.16
2018	4등급, 동일	2등급, 동일	5등급, 동일
2019	3등급, ▲1등급	2등급, 동일	4등급, ▲1등급
2020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각 연도 보도자료.

2. 기타 자료에 나타난 체육계의 청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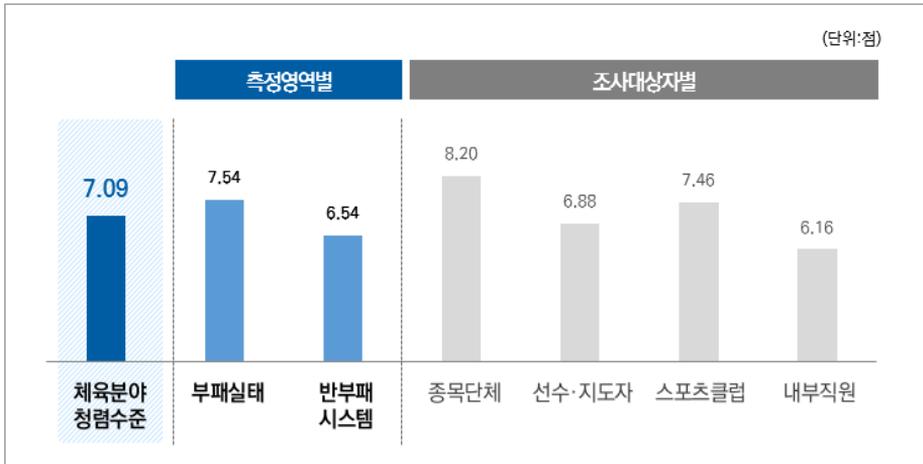
가. 2020년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도에 최초로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수준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청렴도를 측정한 바 있다.⁴¹⁾ 해당 보고서에 나타난 2020년도 체육분야의 청렴도 점수는 7.09점(부패실태 7.54점, 반부패시스템 6.54점)이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청렴도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일부 문항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한체육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와 비교를 해보자면, 대한체육회가 10년간 최저 점수인 2019년도 청렴도 점수 7.12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이와 같이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 『2020년도 지방체육회 등 체육분야 청렴수준 측정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측정의 목적은 “체육계 전반의 부패수준과 광역체육회 단위의 부패수준을 지방 체육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계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체육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국민권익위원회, 2020. 6)하는 것이었다. 그 측정대상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체육회(광역 17개, 기초 8개)와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지방체육회와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 지방체육회 내부직원”이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7).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된 것은 부패실태(7.54점)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반부패시스템의 취약성(6.54점)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2-1] 2020년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0, p31.

나. 2019년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문화·예술·스포츠업계

2019년에 출간된 보고서인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황지태 외, 2019)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산업부문을 10개 분야⁴²⁾로 나누어 각각의 청렴지수를 측정한다. 이 조사에서 스포츠업계는 비록 별도의 분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예술분야와 함께 ‘문화·예술·스포츠 업계’라는 범주로 묶여 조사대상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업계가 포함된 문화·예술·스포츠업계의 청렴지수 점수는 5.16점으로 10개 산업부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스포츠업계의 청렴지수는 9가지 주요 측정 항목 중 8가지 항목에서 모두 최하위를 차지하였다⁴³⁾. 앞서 소개했던

42)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방송통신정보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의료업, 문화예술스포츠업. 황지태 외, 2019,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p39.

43) 황지태 외, 2019,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5.

2020년도 지방체육회 조사와 유사하게, 여기서도 반부패시스템의 취약성(부패방지 지수) 문제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가 섞여 있는 탓에 스포츠업계의 순수한 청렴수준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겠지만, 민간 스포츠업계의 청렴 수준을 가늠할 만한 참고자료 중 하나다.

▶▶▶ [표 2-7]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산업부문별 종합 결과

구 분	사례수(명)	청렴지수	구 분	
			부패실태 지수	부패방지 지수
전 체	3,000	6.15	6.74	5.26
제조업	300	6.52	7.16	5.53
건설업	300	5.49	5.89	4.87
도매 및 소매업	300	5.88	6.48	4.96
운수업	300	6.18	6.88	5.10
방송/통신/미디어업	300	5.91	6.37	5.20
금융/보험업	300	6.75	7.39	5.76
전문서비스업	300	6.47	7.23	5.29
교육서비스업	300	6.95	7.63	5.90
보건/의료/사회복지업	300	6.16	6.72	5.29
문화/예술/스포츠업	300	5.16	5.55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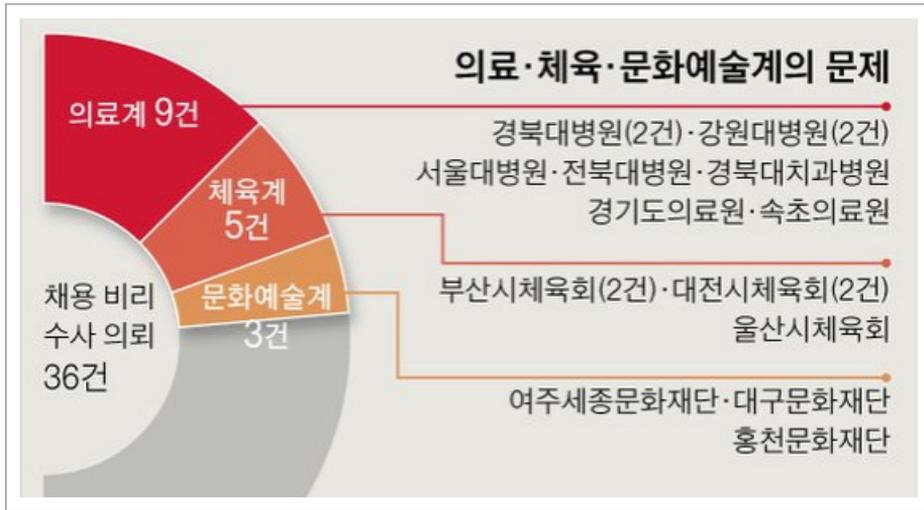
※ BASE : 전체, 단위=명/ 점(10점 만점)

※ 출처 : 황지태 외, 2019,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p67.

다.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한편, 2020년 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서 스포츠계는 가장 심각한 분야 중의 하나로 지목된 바 있기도 하다.

» [그림 2-2] 의료·체육·문화예술계의 문제



※ 출처: 중앙일보(2020년 2월 20일)

2020년 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계와 체육계,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특히 부정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36건 중 17건이 의료와 체육,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17건 중 체육계가 5건을 차지했던 것이다.⁴⁴⁾

44) 출처 : 중앙일보, 2020년 2월 20일,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병원·체육회가 ‘채용 비리’ 온상... 재조사해 끝장 보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4557> (2021.11.15. 최종방문)

제 3 장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부패인식조사 설문지 분석결과

황지태 · 이윤영

제3장

스포츠계 부패인식조사 설문지 분석결과

제1절 |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개요 및 조사 항목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우리나라 스포츠계 종사자 중 선수, 심판, 지도자, 스포츠행정가 등 네 가지 종류의 집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청렴 및 부패 수준에 대한 의견 수집을 한 것이다.

» [그림 3-1] 체육계의 부정부패에 관한 인식 조사

체육계의 부정부패에 관한 인식 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체육계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체육계 부패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스티벅스 아메리카노 1잔 모바일 교환권을 모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조사 필요요청 공문 확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의처 연구주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 지 현 연구원(02-3456-1764)
조사기관 : ㈜글로벌일앤씨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0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0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부패 관련 다양한 의견 수집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3-1)과 [부록1]의 조사설문지 참조).

▶▶▶ [표 3-1] 설문조사 항목

Part	문항 구성
SQ. 주 활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 영역, 소속, 종목 등
A. 체육계 전반의 청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계 전반 부패 심각성 • 체육단체 부패행위 중 심각한 부패 행위 유형 • 개인 이익에 따른 운영의 심각성 • 회계 비리의 심각성 • 인사 비리의 심각성 • 선거 비리의 심각성 • 입찰 비리의 심각성 • 현장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패 행위 유형 • 불공정 선발의 심각성 • 갑질의 심각성 • 승부조작의 심각성 • 편파판정 문제의 심각성
B. 소속단체의 청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단체 전반 부패 심각성 • 체육단체 부패행위 중 심각한 부패 행위 유형 • 개인 이익에 따른 운영의 심각성 • 회계 비리의 심각성 • 인사 비리의 심각성 • 선거 비리의 심각성 • 입찰 비리의 심각성 • 현장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패 행위 유형 • 불공정 선발의 심각성 • 갑질의 심각성 • 승부조작의 심각성 • 편파판정 문제의 심각성 • 입시 비리의 심각성
C. 부패행위 신고 및 적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인지 시 신고 의향 • 실제 부패행위 신고 경험 및 신고 기관 • 본인 신고행위의 효과성 • 누군가의 신고행위의 효과성 •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 • 부패행위(자) 적발의 적절성 • 부패행위(자) 처벌의 적절성 • 부패행위 처벌의 방해 요인
D. 부패방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신고 제도별 인지도 • 부패행위 신고 제도별 효과성 •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필요 정책
E. 부패행위 예시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예시별 심각성 • 부패행위 예시별 개인 착복 시 심각성 • 부패행위 예시별 소속 단체 경비 사용 시 심각성
DQ. 통계처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최종학력 • 직업, 한 달 평균 소득

2. 조사 진행 절차

본 조사의 조사항목은 응답자들에게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에 대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난점은 완전히 개방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주어진 조사기간 내에 전체 인구 대비 소수 집단인 스포츠계 종사자들의 일정 표본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포츠계 종사자들만을 따로 추적해서 조사를 진행해야만 했는데, 그럴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 조사 참여용 온라인 링크를 각 단체에서 직접 소속 개인에게 전달하고, 조사 링크를 전달받은 개인은 자율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집 방법은 확률표집이라 할 수는 없고, 일종의 임의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3-2] 조사 진행 절차

구분	수행 내용
1. 온라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온라인 조사 개발 툴을 활용하여 조사 시스템 개발 • 불성실 응답 체크, 문항별 로직 등 설계
2. 실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체육단체의 관련자에게 조사 참여 협조 요청 •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링크 전달(이메일, SMS 등) • 조사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자유롭게 링크 접속, 조사 실시 • 조사 링크 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협조공문을 첨부하여 조사 신뢰성 제고 • 조사 참여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해 조사 참여 답례품 제공
3. 데이터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링크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접속자의 IP 주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정보를 통해 최소한의 중복 참여 데이터를 제거함
4. 데이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응답 항목에 대한 코드 부여 • 주관식 의견 코딩 •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온라인개발 등 조사준비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는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개월간 실시하였다. 특수 집단에 대한 조사인지라 그에 따른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 원래 목표로 했던 표본보다 적은 수의 표본인 203사례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수집하였다.

3.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부록1]에 첨부한 조사 설문지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 [그림 3-2] 온라인 조사 설계 예시1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n online survey interface. It contains two question blocks, A and B, each with a progress bar at the top, a question text, a 7-point Likert scale response options, and navigation buttons.

Question A: Progress bar shows 8%. Question text: "A. 다음은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청렴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Sub-question: "A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Buttons: "이 전" (Previous), "다음" (Next)

Question B: Progress bar shows 28%. Question text: "B. 다음은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청렴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Sub-question: "B1.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Buttons: "이 전" (Previous), "다음" (Next)

다만, 앞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다음에 응답할 문항이 달라지는 경우,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와는 미리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 [그림 3-3] 온라인 조사 설계 예시2

63%

D. 다음은 체육계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D1. 아래는 체육계내의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알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 전

다음

69%

문E1. 관련 예시
어떤 체육단체에서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상위단체에 청구하는데, 100만원짜리 용품이라고 서류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8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이었다. 즉 20만원의 차액이 남았다

E1-1. 귀하께서는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 전

다음

제2절 | 기초변인 응답결과

스포츠계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포츠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스포츠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먼저 기초적인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스포츠계의 주 활동 영역, 선수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네 집단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9.1%(120명), 여성이 36.5%(7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40대가 30.5%(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9.6%(60명), 50대 16.7%(34명), 20대 13.8%(28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40.9%(83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6.0%(73명), 경상권 6.4%(73명), 인천 4.9%(10명), 충청권 3.9%(8명), 전라권 2.5%(5명)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이 현재 스포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우 현재 소속 팀, 근무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나 지도자의 경우 시, 군 등의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속팀이 변경될 경우 지역이 바뀌게 될 것이다. 반면 스포츠 행정가의 경우 대한체육회 및 종목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등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인력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가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학력의 경우(중퇴 및 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107명)을 차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학 졸업도 39.4%(80명)가 응답하여 전체 대상자의 92.1%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응답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우리나라의 엘리트 운동 선수의 체육특기생 정책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정원은 대학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1972년에 신설되어 학교현장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어오고 있으며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우수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김대회, 2013)되었다. 따라서 현재 주요 활동 영역이 선수가 아닌 심판, 지도자, 행정가라고 하더라도 응답 대상자의 60.9%가 종목 단체에 소속된 전문 체육, 즉 엘리트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엘리트 선수의 경력은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의 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이 46.2%(72명), 비정규직이 53.8%(84명)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6.6% 더 많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소득(세전 소득 기준)의 경우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34.7%(5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26.5%(45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8.2%(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9.4%(16명)가 응답하였다.

» [표 3-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0	59.1
	여성	74	36.5
	모름/무응답	9	4.4
연령	20세 이하	4	2.0
	20대	28	13.8
	30대	60	29.6
	40대	62	30.5
	50대	34	16.7
	60대 이상	6	3.0
	모름/무응답	9	4.4

▶▶▶ [표 3-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분포	서울	83	40.9
	경기	73	36.0
	인천	10	4.9
	경상권	13	6.4
	광주전라	5	2.5
	대전세종충청	8	3.9
	강원제주	11	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7	3.4
	대졸 이하	80	39.4
	대학원 이상	107	52.7
	모름/무응답	9	4.4
고용 상태	정규직	72	46.2
	비정규직	84	53.8
한 달 평균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1	0.6
	100-200만 원 미만	14	8.2
	200-400만 원 미만	59	34.7
	400-600만 원 미만	45	26.5
	600-800만 원 미만	10	5.9
	800-1000만 원 미만	6	3.5

2.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

응답자들이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3명 중 40.4%(82명)가 지도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행정가 38.4%(78명), 선수 16.7%(34명), 심판 4.4%(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계 종사자들을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로 구분하였는데 엘리트 스포츠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특성상, 엘리트 선수생활을 은퇴한 후에 코치나 강사, 또는 스포츠행정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⁴⁵⁾, 인기 스포츠 종목이 아닌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지도자와 심판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⁴⁶⁾ 현재 주로 활동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선수' 응답자에 관해서는 현재 소속 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외 그룹인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경우 종목 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활동했던 경험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였다.

» [표 3-4] 응답자의 현재 주 활동 분야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선수	34	16.7
지도자	82	40.4
심판	9	4.4
스포츠행정가	78	38.4
계	203	100.0

나. 응답자들의 소속 기관 및 전문 체육 경험 유무

먼저 선수의 소속 기관 현황에 관한 추가 질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프로팀 또는 시, 도, 지자체 등의 실업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가 65.78%(2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의 소속 종목은 농구(23.5%), 검도(2.9%), 골프(2.9%), 아이스하키(5.9%), 탁구(23.5%), 스키(2.0%), 태권도(2.9%), 양궁(5.9%), 사격(2.9%), 유도(2.9%), 철인3종(2.9%), 크로스컨트리(2.9%), 바이애슬론(5.9%) 등으로 동계와 하계 분야에 걸쳐 개인종목, 대인종목 및 단체종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45) 202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19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수 경력 3년 이상, 20세 이상 39세 이하 은퇴선수의 경우 응답자의 29.8%가 스포츠계 강사, 코치 등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한국의 아이스하키 종목 경우 심판들은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엘리트 팀의 현직 감독이나 코치를 맡고 있다(이창영, 2006).

▶▶▶ [표 3-5] 선수 응답자의 현재 소속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대학운동부 선수	9	26.5
프로팀/ 실업팀선수	22	64.79
기타	3	8.8
계	34	100.0

추가적으로 지도자, 심판의 소속 종목을 살펴보면, 먼저 지도자의 경우 농구(11.0%), 핸드볼(7.3%), 검도(7.3%), 골프(9.8%), 아이스하키(2.4%), 탁구(2.4%), 스키(6.1%), 수영(4.9%), 합기도(3.7%), 조정(3.7%), 기계체조(1.2%), 배드민턴(1.2%), 보디빌딩(3.7%), 스쿼시(1.2%), 태권도(2.4%), 양궁(1.2%), 복싱(2.4%), 볼링(2.4%), 육상(1.2%), 축구(1.2%), 유도(1.2%), 축구(1.2%), 철인3종(1.2%), 크로스컨트리(1.2%), 배구(1.2%), 레슬링(1.2%), 빙상(1.2%), 사이클(1.2%), 수상스키(1.2%), 승마(1.2%), 에어로빅체조(1.2%), 역도(1.2%), 체조(1.2%), 펜싱(1.2%)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판의 경우 핸드볼, 기계체조 등에 소속되어 있어 동계 및 하계분야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에 걸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수응답자를 제외한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경우 과거에 종목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되어 활동한 경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0.9%(103명)가 '있음'이라고 하였으며 39.1%(66명)가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특정 종목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소위 엘리트 운동선수(전문 체육)로서 경험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엘리트 운동선수 대부분이 운동만을 경험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모든 활동이 운동선수라는 특정 역할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정운영, 김병준, 천성민, 2021) 은퇴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지도자, 강사 등 스포츠 관련 영역으로 활동 분야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2004년에 은퇴한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를 대상으로 은퇴 후 10년 후인 2014년에 종사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조정훈, 이종영, 2015)에서도 응답대상자 66명 중 34.9%인 23명이 경기 지도자, 스포츠센터 강사, 교사 등 스포츠 관련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 체육 경험이 있는 심판, 지도자, 스포츠행정가의 응답이 높은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 [표 3-6] 응답자의 종목단체 선수 등록 경험 유무(선수 제외)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있음	103	60.9
없음	66	39.1
계	169	100.0

제3절 | 체육계 전반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가.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렇다'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 '매우 그렇다' 13.3%, '약간 그렇다' 29.1%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45.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여, '별로 그렇지 않다' 7.9%, '거의 그렇지 않다' 3.0%, '전혀 그렇지 않다' 1.5%를 포함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12.4%보다 3.6배가량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체육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27	65	59	27	16	6	3	203
비율(%)	13.3	32.0	29.1	13.3	7.9	3.0	1.5	100.0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관한 심각성을 평균점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체 7점 만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점=별로 그렇지 않다, 4점=보통, 5점=약간 그렇다, 6점=상당히 그렇다, 7점=매우 그렇다)에서 평균 점수가 5.1점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활동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포츠행정가가 5.4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도자가 5.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판이 4.44로 가장 낮은 평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선수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5.39로 선수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 5.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10대는 현저하게 낮은 점수인 2.25로 나타났으나 30대의 경우는 2배 이상인 5.43으로 나타나 10대와 30세 이상 그룹 사이에서 부패 심각성의 인식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19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였고,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도 10대의 응답자는 100% 모두 ‘선수’가 활동 영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직 선수의 경우 타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심판 등에 비해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응답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439^*$).

▶▶▶ [표 3-8] 체육계 전반_부패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74.4	13.3	12.3	100.0	5.15	
활동 분야	선수	52.9	29.4	17.6	100.0	4.59	$\chi^2=15.439$ (df=6) p(<.05)
	지도자	74.4	11.0	14.6	100.0	5.16	
	심판	66.7	11.1	22.2	100.0	4.44	
	행정가	84.6	9.0	6.4	100.0	5.46	
선수 경험	있다	74.8	10.7	14.6	100.0	5.17	$\chi^2=3.208$ (df=2) N.S.
	없다	84.8	9.1	6.1	100.0	5.39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25	$\chi^2=29.709$ (df=12) p<.01
	20대	64.3	25.0	10.7	100.0	4.93	
	30대	81.7	11.7	6.7	100.0	5.43	
	40대	82.3	8.1	9.7	100.0	5.35	
	50대	61.8	17.6	20.6	100.0	4.88	
	60세	100.0	0.0	0.0	100.0	5.17	
	모름	66.7	11.1	22.2	100.0	4.78	

전반의 부패에 관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음으로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비리(18.7%)',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의 회계비리'(10.3%), '체육단체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10.3%)'로 나타났다.

▶▶▶ **【표 3-9】**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105	51.7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21	10.3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38	18.7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21	10.3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7	3.4
기타	11	5.4
계	203	100.0

활동분야별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가장 심각한 체육단체 부패행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모든 집단에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행정가 집단의 경우 59.0%로 집단별 응답 수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인 이유는 '결정권자 개인의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이 조직사유화의 대표적 유형이고 체육회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시, 도 체육회에서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거나, 장기간 특정 체육회를 장악하면서 연맹과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협회를 개인회사로 취급하며 기업후원금, 협회 운영자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회장의 사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문화체육관광부, 2016) 협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수 경험 유무, 연령(20대 미만, 30대,

48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 시)에 관계없이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행정가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도 이 사안을 가장 심각한 부패의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표 3-10] 체육계 전반_가장 심각한 체육단체 부패행위 (1순위)

단위: %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기 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계	χ^2/df
전체		51.7	18.7	10.3	10.3	5.4	3.4	100.0	
활동 영역	선수	41.2	29.4	11.8	11.8	5.9	0.0	100.0	$\chi^2=17.789$ (df=15) N.S.
	지도자	50.0	17.1	13.4	11.0	4.9	3.7	100.0	
	심판	44.4	11.1	11.1	11.1	0.0	22.2	100.0	
	행정가	59.0	16.7	6.4	9.0	6.4	2.6	100.0	
선수 경험	있다	52.4	12.6	13.6	8.7	7.8	4.9	100.0	$\chi^2=9.584$ (df=5) N.S.
	없다	56.1	22.7	4.5	12.1	1.5	3.0	100.0	
나이	10대	0.0	50.0	25.0	0.0	25.0	0.0	100.0	$\chi^2=28.932$ (df=30) N.S.
	20대	42.9	35.7	14.3	7.1	0.0	0.0	100.0	
	30대	51.7	16.7	10.0	8.3	8.3	5.0	100.0	
	40대	50.0	14.5	11.3	12.9	4.8	6.5	100.0	
	50대	58.8	17.6	8.8	11.8	2.9	0.0	100.0	
	60세	83.3	0.0	0.0	16.7	0.0	0.0	100.0	
	모름	66.7	11.1	0.0	11.1	11.1	0.0	100.0	

다음으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가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 역시 조직사유화의 일환이라고 특정 인맥 관계에 의한 낙하산 인사, 관피아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 [표 3-1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20	9.9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17	8.4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27	13.3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15	7.4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7	3.4
기타	2	1.0
계	88	43.3

종합적으로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 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와 2순위 유형을 모두 합쳐 활동분야, 선수 경험 여부,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응답 집단 모두에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이 가장 심각한 부패 행위라고 응답하였으며 선수 경험 여부 및 연령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형별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으로 구체적인 유형별 부패의 심각성에 관한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결정권자가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등 총 5가지 유형의 부패 사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때 응답범주는 7점='매우 그렇다' ~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유형별 부패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문항별 평균 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가 평균 5.3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가 평균 5.11점으로 나타나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 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2순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4.5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응답자들은 대부분 시, 군, 구 등의 지자체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소속 종사자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3-12]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체육단체와 관련된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인식 수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	37	73	51	28	6	5	3	5.39
	18.2	36.0	25.1	13.8	3.0	2.5	1.5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19	45	73	38	16	8	4	4.87
	9.4	22.2	36.0	18.7	7.9	3.9	2.0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30	51	66	36	11	6	3	5.11
	14.8	25.1	32.5	17.7	5.4	3.0	1.5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21	54	48	48	19	10	3	4.84
	10.3	26.6	23.6	23.6	9.4	4.9	1.5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13	37	58	54	21	15	5	4.52
	6.4	18.2	28.6	26.6	10.3	7.4	2.5	

지금까지 체육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 유형에 대한 심각성의 상대적 인식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각 부패유형에 대한 응답 범주별 인식 수준, 그리고 집단별 인식의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활동분야, 선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우세였으며 특히 심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8.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집단 간 응답범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chi^2=23.566^{**}$). 반면 연령의 경우 20대 미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75.0%
로 우세했고 20세 이하에서도 68.9%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타 연령대에 비해
심각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였다($\chi^2=43.182^{***}$).

▶▶▶ [표 3-13] 체육계 전반_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79.3	13.8	6.9	100.0	5.39	
활동 영역	선수	55.9	26.5	17.6	100.0	4.62	$\chi^2=23.566$ (df=6) p<.01
	지도자	80.5	18.3	1.2	100.0	5.46	
	심판	88.9	0.0	11.1	100.0	5.11	
	행정가	87.2	5.1	7.7	100.0	5.69	
선수 경험	있다	81.6	12.6	5.8	100.0	5.40	$\chi^2=1.301$ (df=2) N.S.
	없다	87.9	9.1	3.0	100.0	5.79	
나이	20세 미만	0.0	25.0	75.0	100.0	2.25	$\chi^2=43.182$ (df=12) p<.001
	20대	67.9	17.9	14.3	100.0	5.04	
	30대	73.3	21.7	5.0	100.0	5.40	
	40대	88.7	6.5	4.8	100.0	5.58	
	50대	88.2	8.8	2.9	100.0	5.53	
	60세 이상	83.3	16.7	0.0	100.0	5.50	
	모름/무응답	88.9	11.1	0.0	100.0	6.00	

다음으로 체육계 부패행위의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한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
령 등 회계비리’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활동 영역에 관계
없이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의 경우 67.5%가 ‘그렇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정가 집단의 경우 79.5%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타 집
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면 선수 집단의 경우 58.8%가 ‘그렇다’라고 응
답하여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선
수경험이 있는 집단과 선수경험이 없는 집단의 응답률의 차이이다. 선수경험이

있는 경우는 61.2%가 ‘그렇다’라고 하였고 16.5%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나, 선수경험이 없는 경우는 81.8%가 ‘그렇다’, 9.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응답 범주 간 차이를 보였으며($\chi^2=8.212^*$), 전체 집단 간 비교에서 가장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4] 체육계 전반_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67.5	18.7	13.8	100.0	4.87	
활동 영역	선수	58.8	26.5	14.7	100.0	4.59	$\chi^2=11.229$ (df=6) N.S.
	지도자	59.8	25.6	14.6	100.0	4.80	
	심판	66.7	22.2	11.1	100.0	4.67	
	행정가	79.5	7.7	12.8	100.0	5.08	
선수 경험	있다	61.2	22.3	16.5	100.0	4.77	$\chi^2=8.212$ (df=2) $p<.05$
	없다	81.8	9.1	9.1	100.0	5.17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00	$\chi^2=22.668$ (df=12) $p<.05$
	20대	67.9	21.4	10.7	100.0	4.93	
	30대	70.0	11.7	18.3	100.0	5.00	
	40대	67.7	21.0	11.3	100.0	4.85	
	50대	64.7	23.5	11.8	100.0	4.85	
	60세	100.0	0.0	0.0	100.0	5.17	
	모름	66.7	33.3	0.0	100.0	5.00	

체육계 부패와 관련한 세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 사례는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보고 집단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활동영역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chi^2=15.240^*$)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행정가의 경우 ‘그렇다’라고 평가하여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심판의 경우 33.3%만이 ‘그렇다’라고 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행정가의 경우 각각 8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선발 기준을 두고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채용 절차를 통해 선수, 지도자, 심판

이 선발되는 반면에 종목 협회 및 체육회의 이사, 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⁴⁷⁾ 결격사유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로 인해 대부분 회장이나 이사진의 인맥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행위, 또한 회장이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들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행위, 임원 및 전문위원 등 절반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는 행위 등을 가장 문제가 되는 조직사유화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3-15] 체육계 전반_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72.4	17.7	9.9	100.0	5.11	
활동 영역	선수	55.9	26.5	17.6	100.0	4.56	$\chi^2=15.240$ (df=6) p<.05
	지도자	75.6	17.1	7.3	100.0	5.32	
	심판	33.3	44.4	22.2	100.0	4.11	
	행정가	80.8	11.5	7.7	100.0	5.26	
선수 경험	있다	69.9	18.4	11.7	100.0	5.10	$\chi^2=5.802$ (df=2) N.S.
	없다	84.8	12.1	3.0	100.0	5.42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25	$\chi^2=24.999$ (df=12) p<.05
	20대	75.0	14.3	10.7	100.0	4.93	
	30대	71.7	21.7	6.7	100.0	5.17	
	40대	77.4	12.9	9.7	100.0	5.24	
	50대	73.5	17.6	8.8	100.0	5.26	
	60세	83.3	16.7	0.0	100.0	5.17	
	모름	55.6	33.3	11.1	100.0	5.11	

체육계 전반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네 번째 사례는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의 심각성이며 이에 대하여 집단별 특성에 따른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범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활동 영역의 경우

47) 대한체육회 산하 00종목단체의 선수위원회규정을 보면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과 정관에 따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 등록선수인 경우만 제한이 된다고만 명시되며 그 외 별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수 집단과 심판 집단의 경우 각각 35.3%, 33.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의견도 선수의 경우 35.3%, 심판의 경우 44.4%로 나타났으나 지도자의 경우 '그렇다'가 65.9%, 행정가의 경우 69.2%가 '그렇다'라고 하여 선수, 심판과 다른 수준으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선수와 심판의 의견이 유사하고 지도자와 행정가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지도자, 행정가의 경우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관련 선거 비리에 대해 선수, 심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367^*$). 반면 선수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chi^2=8.836^*$)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10대의 선수 집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chi^2=31.807^{**}$).

▶▶▶ [표 3-16] 체육계 전반_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60.6	23.6	15.8	100.0	4.84	
활동 영역	선수	35.3	35.3	29.4	100.0	4.15	$\chi^2=16.367$ (df=6) p<.05
	지도자	65.9	19.5	14.6	100.0	4.99	
	심판	33.3	44.4	22.2	100.0	4.33	
	행정가	69.2	20.5	10.3	100.0	5.05	
선수 경험	있다	65.0	16.5	18.4	100.0	4.88	$\chi^2=8.836$ (df=2) p<.05
	없다	66.7	28.8	4.5	100.0	5.14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25	$\chi^2=31.807$ (df=12) p<.01
	20대	46.4	42.9	10.7	100.0	4.61	
	30대	63.3	28.3	8.3	100.0	5.05	
	40대	75.8	8.1	16.1	100.0	5.06	
	50대	47.1	29.4	23.5	100.0	4.65	
	60세	66.7	16.7	16.7	100.0	4.50	
	모름	55.6	22.2	22.2	100.0	4.78	

체육계 전반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마지막 유형은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 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이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입찰비리는 다른 문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수준이 집단별로 상이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활동 영역별, 선수 경험 유무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활동영역의 경우 지도자, 심판, 행정가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58.5%, 44.4%, 59.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나 선수의 경우 29.4%만이 '그렇다'라고 하여 응답범주 간 차이($\chi^2=12.899^*$)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대의 경우 20대 미만에서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30대-50대의 경우 '그렇다'라고 다수가 응답하여 20대 이하와 30~50대 사이에 입찰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i^2=30.753^{**}$)

▶▶▶ 【표 3-17】 체육계 전반_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심각성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53.2	26.6	20.2	100.0	4.52	
활동 영역	선수	29.4	35.3	35.3	100.0	3.82	$\chi^2=12.899$ (df=6) p<.05
	지도자	58.5	20.7	20.7	100.0	4.62	
	심판	44.4	33.3	22.2	100.0	4.33	
	행정가	59.0	28.2	12.8	100.0	4.73	
선수 경험	있다	59.2	16.5	24.3	100.0	4.54	$\chi^2=15.238$ (df=2) p<.001
	없다	56.1	37.9	6.1	100.0	4.83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00	$\chi^2=30.753$ (df=12) p<.01
	20대	32.1	46.4	21.4	100.0	4.25	
	30대	60.0	23.3	16.7	100.0	4.63	
	40대	69.4	17.7	12.9	100.0	4.92	
	50대	47.1	23.5	29.4	100.0	4.38	
	60세	16.7	66.7	16.7	100.0	3.83	
	모름	33.3	33.3	33.3	100.0	3.89	

2.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가.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스포츠 경기는 규칙에 의해 진행되며 규칙에 따라 승패가 정해진다. 즉 스포츠는 특정하게 정의된 환경(field)의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독특한 영역이며 스포츠 현장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와는 다른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들에게만 해당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도핑 등이다. 이에 따라 김영호(2016)는 스포츠 부정부패가 크게 경영 스포츠의 부정부패와 경쟁 스포츠의 부정부패로 나뉜다고 보았으며 이때 경영 스포츠 부정부패란 스포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경영 업무와 관련된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유형이고, 경쟁 스포츠 부정부패란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을 둔 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김영호, 2016). 서희진(2019)은 공정성에 기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승부조작, 담합, 도핑 등을 제시하며(서희진, 2011) 스포츠 부정부패란 공정성을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와 차별화하여 체육계 현장과 관련된 부패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체육계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패와 이러한 부패의 유형별 심각성 인식 수준에 관한 조사를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평가와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응답자들에게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했다. 조사 결과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과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 외박 제한 등)'이 각각 35.5%(72명), 35.5%(72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공동 1순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과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은 전체 응답자 중 71%가 1순위라고 응답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8]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72	35.5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	72	35.5
승부조작	8	3.9
편파판정	20	9.9
입시와 연관된 비리	22	10.8
기타	9	4.4
계	203	100.0

소속 집단별로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부패 행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선수와 지도자 집단의 경우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을 각각 38.2%, 41.5%가 답하여 선수와 지도자 집단의 1순위 유형이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판과 행정가 집단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항목에 대해 각각 44.4%, 42.3%가 응답하여 심판과 지도자 집단의 1순위 유형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로 나타났다. 즉 선수와 지도자 집단의 의견이 유사하고 심판과 행정가 집단의 의견이 유사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의견은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두 가지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수 및 지도자보다 심판, 행정가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에 대해 더 많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고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에 대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chi^2=14.875^*$). 이러한 결과는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항에 대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의 당사자 보다 심판, 행정가 등의 관계자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3-19] 가장 심각한 체육계 현장 부패행위 (1순위)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입시와 연관된 비리	편파 판정	기타	승부 조작	계	x ² /df
전체		35.5	35.5	10.8	9.9	4.4	3.9	100.0	
활동 영역	선수	32.4	38.2	2.9	14.7	2.9	8.8	100.0	x ² =15.089 (df=15) N.S.
	지도자	29.3	41.5	8.5	11.0	6.1	3.7	100.0	
	심판	44.4	22.2	22.2	11.1	0.0	0.0	100.0	
	행정가	42.3	29.5	15.4	6.4	3.8	2.6	100.0	
선수 경험	있다	30.1	36.9	9.7	14.6	4.9	3.9	100.0	x ² =14.875 (df=5) p<.05
	없다	45.5	31.8	16.7	0.0	4.5	1.5	100.0	
나이	10대	25.0	25.0	0.0	25.0	0.0	25.0	100.0	x ² =36.316 (df=30) N.S.
	20대	28.6	46.4	10.7	10.7	0.0	3.6	100.0	
	30대	51.7	28.3	6.7	5.0	6.7	1.7	100.0	
	40대	29.0	40.3	11.3	8.1	6.5	4.8	100.0	
	50대	20.6	32.4	14.7	23.5	2.9	5.9	100.0	
	60세	33.3	33.3	33.3	0.0	0.0	0.0	100.0	
	모름	55.6	33.3	11.1	0.0	0.0	0.0	100.0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이 2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1순위의 결과와 동일하게 선수와 지도자 집단과 심판, 행정가 집단 간 응답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0]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25	28.7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	20	23.0
승부조작	7	8.0
편파판정	13	14.9
입시와 연관된 비리	22	25.3
기타	0	0.0
계	87	100.0

나. 유형별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의 부패의 심각성 인식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5개의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유형별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이때 응답은 총 7점 척도로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7번이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평균 응답점수의 비교 분석 결과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 정도'가 5.0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이 4.89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파 판정 문제' 4.60점, '입시와 연관된 비리' 4.57점, '승부조작 문제' 4.25점 등 모든 문항이 평균점수 4점(=약간 그렇다) 이상으로 나와 체육계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	19	58	66	38	14	5	3	203	5.01
	9.4	28.6	32.5	18.7	6.9	2.5	1.5	100.0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28	43	56	42	25	6	3	203	4.89
	13.8	21.2	27.6	20.7	12.3	3.0	1.5	100.0	
승부조작 문제	10	21	63	54	32	17	6	203	4.25
	4.9	10.3	31.0	26.6	15.8	8.4	3.0	100.0	
편파판정 문제	15	33	69	47	24	11	4	203	4.60
	7.4	16.3	34.0	23.2	11.8	5.4	2.0	100.0	
입시와 연관된 비리	18	35	60	45	26	15	4	203	4.57
	8.9	17.2	29.6	22.2	12.8	7.4	2.0	100.0	

그러나 체육계 현장에서의 부패행위에 관한 분석의 경우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육계 현장의 부패 행위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체육계·전

반에 걸친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의 정도’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활동 분야, 선수 경험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50%이상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활동 분야의 경우 응답범주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chi^2=14.800^*$)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 당사자 즉, 선수, 지도자가 아닌 스포츠행정가의 경우 82.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오히려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선수 집단에서 50%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3-22] 체육계 전반_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70.4	18.7	10.8	100.0	5.01	
활동 영역	선수	50.0	32.4	17.6	100.0	4.44	$\chi^2=14.800$ (df=6) p<.05
	지도자	68.3	20.7	11.0	100.0	5.09	
	심판	66.7	33.3	0.0	100.0	4.89	
	행정가	82.1	9.0	9.0	100.0	5.21	
선수 경험	있다	68.0	19.4	12.6	100.0	5.03	$\chi^2=6.264$ (df=2) p<.05
	없다	84.8	10.6	4.5	100.0	5.29	
나이	10대	25.0	50.0	25.0	100.0	3.50	$\chi^2=14.842$ (df=12) N.S.
	20대	57.1	32.1	10.7	100.0	4.71	
	30대	66.7	23.3	10.0	100.0	5.02	
	40대	77.4	12.9	9.7	100.0	5.21	
	50대	76.5	11.8	11.8	100.0	5.09	
	60세	100.0	0.0	0.0	100.0	5.67	
	모름	66.7	11.1	22.2	100.0	4.56	

다음으로 체육계 현장의 부패행위 중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 외박 제한 등)’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62.6%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률 16.7%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의

정도'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48.8%로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선수집단이 55.9%로 낮았고, 행정가 집단의 경우 7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chi^2=17.307^{***}$). 또한 선수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77.3%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55.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62.6% 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chi^2=12.576^{***}$).

▶▶▶ [표 3-23] 체육계 전반_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62.6	20.7	16.7	100.0	4.89	
활동 영역	선수	55.9	26.5	17.6	100.0	4.74	$\chi^2=17.307$ (df=6) p<.01
	지도자	48.8	28.0	23.2	100.0	4.51	
	심판	66.7	22.2	11.1	100.0	4.67	
	행정가	79.5	10.3	10.3	100.0	5.37	
선수 경험	있다	55.3	20.4	24.3	100.0	4.64	$\chi^2=12.576$ (df=2) p<.01
	없다	77.3	18.2	4.5	100.0	5.35	
나이	10대	50.0	25.0	25.0	100.0	3.75	$\chi^2=18.958$ (df=12) N.S.
	20대	53.6	35.7	10.7	100.0	4.75	
	30대	78.3	13.3	8.3	100.0	5.45	
	40대	59.7	21.0	19.4	100.0	4.73	
	50대	52.9	17.6	29.4	100.0	4.59	
	60세	33.3	50.0	16.7	100.0	4.33	
	모름	66.7	11.1	22.2	100.0	4.67	

다음으로 체육계 현장의 '승부조작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3%가 '그렇다'로, 27.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선수 경험 여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는데 오로지 활동분야 중 ‘심판’ 집단에서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5.6%, ‘그렇다’라는 응답 11.1%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chi^2=13.749^*$). 즉 응답 대상자 중 심판 집단만 유일하게 체육계 현장의 승부조작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포츠 현장에는 경기 규칙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경기 규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심판은 종목과 무관하게 경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이창영, 2006). 심판은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승부조작과 관련된 논란에 여러 차례 중심에 서 왔던 사례로 인하여⁴⁸⁾ 선수, 지도자 등의 응답 집단은 승부조작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3-24] 체육계 전반_승부조작 문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46.3	26.6	27.1	100.0	4.25	
활동 영역	선수	47.1	17.6	35.3	100.0	4.24	$\chi^2=13.749$ (df=6) p<.05
	지도자	39.0	31.7	29.3	100.0	4.13	
	심판	11.1	33.3	55.6	100.0	3.44	
	행정가	57.7	24.4	17.9	100.0	4.47	
선수 경험	있다	37.9	28.2	34.0	100.0	4.00	$\chi^2=11.487$ (df=2) p<.05
	없다	59.1	28.8	12.1	100.0	4.65	
나이	10대	50.0	0.0	50.0	100.0	4.50	$\chi^2=10.325$ (df=12) N.S.
	20대	35.7	42.9	21.4	100.0	4.25	
	30대	51.7	25.0	23.3	100.0	4.45	
	40대	51.6	22.6	25.8	100.0	4.29	
	50대	41.2	26.5	32.4	100.0	4.06	
	60세	50.0	16.7	33.3	100.0	4.33	
	모름	22.2	33.3	44.4	100.0	3.22	

48) 2009년 연고전을 앞두고 고려대 축구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하면서 승부에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였고 이들의 편파판정으로 승리를 얻어낸 사건이 있었으며(남기연, 2011), 2013년에는 프로종목 전, 현직 심판 4명이 수백만~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프로종목 구단 스카우트가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며 5차례에 걸쳐 500만 원의 뒷돈을 건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우도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다음의 대표적인 승부조작 사례로 알려진 사건 역시 심판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에서 당시 5대 1로 이기고 있던 이 모 선수가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내리 7번이나 받자 크게 흔들려 결국 역전 패 당했고 이로 인해 패배한 선수의 아버지는 당시 심판이 유독 편파판정을 심하게 한다고 여겨 아들을 다른 지역으로 유학 보낸 것인데 다시 같은 심판이 아들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여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체육계 현장의 편파판정 문제 역시의 경우 승부조작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인 만큼 편파판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승부조작과 매우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였으나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편파판정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률이 57.6%로 승부조작 문제의 심각성 평균 46.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부조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선수, 지도자 및 행정가 그룹은 각각 52.9%, 59.8%, 62.8%가 '그렇다'에 다수가 응답하였으나 심판 그룹은 11.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심판 외 집단의 응답과 상대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410^*$). 또한 편파판정의 경우 '지도자' 집단이 평균점수가 4.78로 전체 평균 4.6보다 0.18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판 집단의 3.33점보다 1.45점 높게 나타나 지도자의 경우 편파판정 문제의 심각성을 타 집단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5] 체육계 전반_편파판정 문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57.6	23.2	19.2	100.0	4.60	
활동 영역	선수	52.9	17.6	29.4	100.0	4.32	$\chi^2=14.410$ (df=6) p<.05
	지도자	59.8	24.4	15.9	100.0	4.78	
	심판	11.1	33.3	55.6	100.0	3.33	
	행정가	62.8	23.1	14.1	100.0	4.68	
선수 경험	있다	57.3	21.4	21.4	100.0	4.65	$\chi^2=3.701$ (df=2) N.S.
	없다	60.6	28.8	10.6	100.0	4.67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3.75	$\chi^2=16.601$ (df=12) N.S.
	20대	46.4	32.1	21.4	100.0	4.43	
	30대	58.3	21.7	20.0	100.0	4.57	
	40대	64.5	21.0	14.5	100.0	4.77	
	50대	61.8	26.5	11.8	100.0	4.85	
	60세	66.7	16.7	16.7	100.0	5.00	
	모름	33.3	22.2	44.4	100.0	3.33	

마지막으로 체육계 현장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입시관련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선수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72.7%가, 행정가 집단의 경우 7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선수 집단의 경우 4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시비리의 심각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연령별 차이를 눈여겨볼 만한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chi^2=18.682$)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시비리가 심각하다(20대 46.4%, 30대 56.7%, 40대 61.3%, 50대 61.8%)라고 생각하고 있어 입시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과 정적으로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입시비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정입학 사례로 입시 비리의 유형은 주로 입학관련 기록 내지는 기재 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 학부모, 소속 학교, 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 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문화체육관광부, 2016)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육특기자제도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특정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도 국내 유명대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여 특정 선수를 입학시켜 관련 교수 4명이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1년 5개월, 1년 6개월 등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⁴⁹⁾

49) 2019년 연세대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 7명을 합격 내정자로 정해놓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21년 1월 1심 법원은 미리 합격 내정자를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한국대학신문, 2021.1.28.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교수 4명 1심 실형”).

▶▶ [표 3-26] 체육계 전반_입시 관련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55.7	22.2	22.2	100.0	4.57	
활동 영역	선수	41.2	20.6	38.2	100.0	3.97	$\chi^2=17.105$ (df=6) p<.01
	지도자	47.6	28.0	24.4	100.0	4.39	
	심판	44.4	22.2	33.3	100.0	4.33	
	행정가	71.8	16.7	11.5	100.0	5.05	
선수 경험	있다	49.5	25.2	25.2	100.0	4.43	$\chi^2=10.134$ (df=2) p<.01
	없다	72.7	18.2	9.1	100.0	5.11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50	$\chi^2=18.682$ (df=12) N.S.
	20대	46.4	32.1	21.4	100.0	4.46	
	30대	56.7	25.0	18.3	100.0	4.82	
	40대	61.3	22.6	16.1	100.0	4.65	
	50대	61.8	8.8	29.4	100.0	4.50	
	60세	66.7	16.7	16.7	100.0	5.00	
	모름	22.2	33.3	44.4	100.0	3.67	

제4절 |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분석

가. 소속 단체 또는 팀의 부패에 관한 일반적 인식

소속 단체 또는 팀의 부패행위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에 관한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6.3%, '거의 그렇지 않다'가 14.8%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그렇다'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의 심각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다른 응답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절에서 분석한 체육계 전반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심각하다’라는 응답 수준인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합쳐서 43.4%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합쳐서 단 4.5%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응답 대상자 본인이 소속된 체육단체나 팀의 부패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 [표 3-27]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16	25	28	48	23	30	33	203
비율(%)	7.9	12.3	13.8	23.6	11.3	14.8	16.3	100.0

그러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체육단체나 팀의 부패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전체적인 응답 분포와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수 집단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61.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범주를 나타냈지만, 지도자 집단의 경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응답 36.6%보다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39.0%로 43.4%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심판 집단의 경우 단 11.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심판의 응답수준에 비해 지도자의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3.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 심각성에 대하여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40.9%, $\chi^2=6.166^*$), 20대 집단보다는 30대 집단이(40.0%)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8]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부패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4.0	23.6	42.4	100.0	3.72	
활동 영역	선수	20.6	17.6	61.8	100.0	3.09	$\chi^2=10.120$ (df=6) N.S.
	지도자	39.0	24.4	36.6	100.0	3.96	
	심판	11.1	22.2	66.7	100.0	3.00	
	행정가	37.2	25.6	37.2	100.0	3.83	
선수 경험	있다	34.0	20.4	45.6	100.0	3.66	$\chi^2=6.166$ (df=2) p<.05
	없다	40.9	31.8	27.3	100.0	4.15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1.75	$\chi^2=10.859$ (df=12) N.S.
	20대	21.4	17.9	60.7	100.0	3.07	
	30대	40.0	21.7	38.3	100.0	3.93	
	40대	37.1	27.4	35.5	100.0	3.85	
	50대	29.4	29.4	41.2	100.0	3.88	
	60세	50.0	16.7	33.3	100.0	4.17	
	모름	33.3	11.1	55.6	100.0	3.44	

구체적으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1, 2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1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응답이 4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20.2%,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및 인사 비리(17.7%)',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7.9%)', '체육단체 장, 임원 관련 선거 비리(7.4%)' 순이었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가 4.4%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기타' 응답을 제외한 범주형으로 제시된 유형끼리 비교해 볼 때 체육계 전반의 부패행위에 관한 응답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체육계 전반의 부패 행위의 유형과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부패 행위의 유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소속 단체 또는 팀의 유형별 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순위

▶▶▶ [표 3-29]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86	42.4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16	7.9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36	17.7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15	7.4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9	4.4
기타	41	20.2
계	203	100.0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분야, 선수 경험 유무, 연령에 따라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별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활동분야에 따라, 선수 경험 유무에 따라, 연령에 따라 부패행위 유형 응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체육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에 관한 1순위 응답 결과와 동일하다. 즉 응답자의 사회적, 인구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결정권자의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을 가장 심각한 부패 유형 1순위로 응답하였다. 다만 20대 연령 집단의 경우 '기타'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과 달리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를 제외한 응답 순위는 다른 집단과 동일하다.

▶▶▶ [표 3-30]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가장 심각한 부패행위 (1순위)

단위: %

		결정권 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 육단체 운영	기 타	특정인 물에 대 한 채용 특혜 제 공 등 인 사 비리	체육단 체의 장, 임원 선 임 관련 선거 비리	공금횡 령, 수당 부정수 령 등 회 계 비리	특정업 체 일감 몰아주 기 등 입 찰 비리	계	χ^2/df
전체		42.4	20.2	17.7	7.4	7.9	4.4	100.0	
활동 영역	선수	32.4	26.5	23.5	2.9	14.7	0.0	100.0	$\chi^2=14.808$ (df=15) N.S.
	지도자	42.7	17.1	17.1	12.2	6.1	4.9	100.0	
	심판	33.3	33.3	11.1	11.1	0.0	11.1	100.0	
	행정가	47.4	19.2	16.7	3.8	7.7	5.1	100.0	
선수 경험	있다	36.9	22.3	16.5	11.7	7.8	4.9	100.0	$\chi^2=9.296$ (df=5) N.S.
	없다	56.1	13.6	16.7	3.0	4.5	6.1	100.0	
나이	10대	25.0	25.0	25.0	0.0	25.0	0.0	100.0	$\chi^2=25.308$ (df=30) N.S.
	20대	25.0	35.7	17.9	3.6	14.3	3.6	100.0	
	30대	41.7	20.0	18.3	8.3	8.3	3.3	100.0	
	40대	40.3	19.4	17.7	6.5	8.1	8.1	100.0	
	50대	58.8	14.7	17.6	5.9	0.0	2.9	100.0	
	60세	50.0	0.0	16.7	16.7	16.7	0.0	100.0	
	모름	55.6	11.1	11.1	22.2	0.0	0.0	100.0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2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가 39.0%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체육 전반에 걸친 부패 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와 일치하는 응답이다.

▶▶ [표 3-31]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21	27.3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7	9.1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30	39.0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15	19.5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비리	3	3.9
기타	1	1.3
계	77	100.0

2. 소속 단체 및 팀의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체육계 전반에 걸친 유형별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에 이어서 소속단체 또는 팀의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체육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명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심각성에 관한 척도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와 동일하게 모두 1번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심각성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부패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문항은 체육계 전반에 걸친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인식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1위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에서도, 혹은 소속된 체육단체나 팀에서도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를 가장 심각한 부패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1순위에 대한 응답은 평균 4.03점의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및 인사 비리'로 이러한 결과 역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인식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소속 체육단체나 팀과 관련한 부패행위 유형보다 다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에 관한 응답 분포와,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의 응답 분포는 부패행위 유형에 따라 동일한 순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점수를 살펴보면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에 관한 체육단체 전반에 걸친 심각성의 평균 점수는 5.39점이지만,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심각성의 평균 점수는 4.23점으로 1.16정도 낮게 측정되고 있으며,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유형 역시 전반적인 체육단체의 부패행위로 심각성을 측정했을 때는 5.11점으로 나타났고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으로 측정했을 때는 4.03점으로 나타나 1.07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 [표 3-32]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단체관련 부패행위의 정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20	34	45	43	18	21	22	203	4.23
	9.9	16.7	22.2	21.2	8.9	10.3	10.8	100.0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	11	18	37	50	31	19	37	203	3.64
	5.4	8.9	18.2	24.6	15.3	9.4	18.2	100.0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19	27	48	40	20	15	34	203	4.03
	9.4	13.3	23.6	19.7	9.9	7.4	16.7	100.0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13	30	40	41	27	19	33	203	3.88
	6.4	14.8	19.7	20.2	13.3	9.4	16.3	100.0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12	21	37	49	26	24	34	203	3.70
	5.9	10.3	18.2	24.1	12.8	11.8	16.7	100.0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활동분야별 상대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수 집단의 경우 41.2%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지도자 집단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4%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여 선수 집단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심판의 경우 뚜렷하게 어느 한 쪽으로 분명한

의견이 나타나기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한다’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이다’가 동일한 응답 수준을 보였고 행정가 집단의 경우 53.8% 수준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수준은 32.1%에 그쳤으나 이와는 달리 30대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3.3%,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5.0%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20대와 30대의 소속 팀과 단체와 관련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집단별 평균 점수에 따른 심각성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활동 분야의 경우 심판 집단이 3.8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도자 집단이 4.4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선수 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4.58) 선수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4.17)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 [표 3-33]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48.8	21.2	30.0	100.0	4.23	
활동 영역	선수	32.4	26.5	41.2	100.0	3.74	$\chi^2=9.106$ (df=6) N.S.
	지도자	52.4	24.4	23.2	100.0	4.46	
	심판	33.3	33.3	33.3	100.0	3.89	
	행정가	53.8	14.1	32.1	100.0	4.24	
선수 경험	있다	47.6	20.4	32.0	100.0	4.17	$\chi^2=2.730$ (df=2) N.S.
	없다	59.1	19.7	21.2	100.0	4.58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50	$\chi^2=11.201$ (df=12) N.S.
	20대	32.1	25.0	42.9	100.0	3.68	
	30대	53.3	21.7	25.0	100.0	4.38	
	40대	53.2	19.4	27.4	100.0	4.37	
	50대	50.0	20.6	29.4	100.0	4.32	
	60세	33.3	33.3	33.3	100.0	3.67	
	모름	66.7	11.1	22.2	100.0	4.78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의 회계비리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의 회계비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7점 척도의 응답 수준으로 살펴볼 경우도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척도가 4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64로 나타나 소속된 집단의 횡령,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266건 중 38%가 '횡령', 6%가 '회계부정'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 비리 중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3-3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공금횡령, 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2.5	24.6	42.9	100.0	3.64	
활동 영역	선수	20.6	23.5	55.9	100.0	3.26	$\chi^2=6.689$ (df=6) N.S.
	지도자	36.6	24.4	39.0	100.0	3.83	
	심판	11.1	22.2	66.7	100.0	3.22	
	행정가	35.9	25.6	38.5	100.0	3.64	
선수 경험	있다	34.0	20.4	45.6	100.0	3.59	$\chi^2=4.087$ (df=2) N.S.
	없다	36.4	31.8	31.8	100.0	3.89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50	$\chi^2=7.625$ (df=12) N.S.
	20대	21.4	21.4	57.1	100.0	3.14	
	30대	33.3	26.7	40.0	100.0	3.73	
	40대	37.1	25.8	37.1	100.0	3.87	
	50대	29.4	23.5	47.1	100.0	3.53	
	60세	50.0	16.7	33.3	100.0	3.83	
	모름	44.4	22.2	33.3	100.0	3.67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4.03점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분야별로는 지도자 집단이, 선수 경험 유무의 경우는 선수 경험이 없는 집단이, 연령별로는 50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응답 수준별로 살펴 보면 지도자와 행정가의 경우 유사하게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50%, 52.6%로 그렇지 않다’라는 29.3%, 32.1%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선수와 심판집단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각각 44.1%, 55.6%로 ‘그렇다’라는 응답수준인 32.4%, 11.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표 3-35]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46.3	19.7	34.0	100.0	4.03	
활동 영역	선수	32.4	23.5	44.1	100.0	3.47	$\chi^2=9.503$ (df=6) N.S.
	지도자	50.0	20.7	29.3	100.0	4.32	
	심판	11.1	33.3	55.6	100.0	3.22	
	행정가	52.6	15.4	32.1	100.0	4.08	
선수 경험	있다	47.6	16.5	35.9	100.0	4.06	$\chi^2=2.251$ (df=2) N.S.
	없다	51.5	22.7	25.8	100.0	4.29	
나이	10대	0.0	25.0	75.0	100.0	2.25	$\chi^2=12.399$ (df=12) N.S.
	20대	32.1	17.9	50.0	100.0	3.36	
	30대	48.3	23.3	28.3	100.0	4.25	
	40대	46.8	22.6	30.6	100.0	4.15	
	50대	58.8	11.8	29.4	100.0	4.29	
	60세	33.3	16.7	50.0	100.0	3.67	
	모름	55.6	11.1	33.3	100.0	4.00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보통’보다 낮은 3.8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선거 비리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도자 집단과 행정가 집단의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46.3%, 44.9%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30.5%와 38.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심판 집단의 경우 이와는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6.7%로 ‘그렇다’라는 응답 11.1%보다 약 6배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지도자 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가 4.22로 활동 분야에서 유일하게 4.0이 넘는 점수를 보여 지도자 집단이 느끼는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의 심각성 수준은 타 집단과 차별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 [표 3-36]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체육단체의 장, 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40.9	20.2	38.9	100.0	3.88	
활동 영역	선수	26.5	20.6	52.9	100.0	3.26	$\chi^2=10.441$ (df=6) N.S.
	지도자	46.3	23.2	30.5	100.0	4.22	
	심판	11.1	22.2	66.7	100.0	3.00	
	행정가	44.9	16.7	38.5	100.0	3.88	
선수 경험	있다	42.7	17.5	39.8	100.0	3.90	$\chi^2=1.991$ (df=2) N.S.
	없다	45.5	24.2	30.3	100.0	4.15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25	$\chi^2=12.474$ (df=12) N.S.
	20대	21.4	32.1	46.4	100.0	3.43	
	30대	45.0	15.0	40.0	100.0	4.03	
	40대	48.4	22.6	29.0	100.0	4.10	
	50대	41.2	20.6	38.2	100.0	3.91	
	60세	33.3	16.7	50.0	100.0	3.50	
	모름	33.3	11.1	55.6	100.0	3.56	

다음으로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3.70으로 4점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내 대체적으로 입찰비리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표 3-37]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4.5	24.1	41.4	100.0	3.70	
활동 영역	선수	23.5	23.5	52.9	100.0	3.21	$\chi^2=5.537$ (df=6) N.S.
	지도자	37.8	24.4	37.8	100.0	3.91	
	심판	11.1	33.3	55.6	100.0	3.33	
	행정가	38.5	23.1	38.5	100.0	3.73	
선수 경험	있다	35.0	23.3	41.7	100.0	3.68	$\chi^2=.807$ (df=2) N.S.
	없다	39.4	25.8	34.8	100.0	3.98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25	$\chi^2=15.224$ (df=12) N.S.
	20대	17.9	28.6	53.6	100.0	3.29	
	30대	38.3	21.7	40.0	100.0	3.73	
	40대	41.9	25.8	32.3	100.0	4.05	
	50대	32.4	26.5	41.2	100.0	3.68	
	60세	0.0	50.0	50.0	100.0	3.17	
	모름	44.4	0.0	55.6	100.0	3.44	

3. 소속 단체 및 팀의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에게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승부조작, 편파판정, 기타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이때 스포츠행정가의 경우 체육계 현장의 소속 단체나 팀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기 사항과 관계없음'의 문항을 추가하여 별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관계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을 1순위로 선정한 응답률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24.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 '승부조작'이 3.4%로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비롯한 경기운영 인력과 관련하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의 유형이라면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은 주로 합숙소와 같은 경기장 외에서 발생하는 부패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응답자들의 54.1%는 경기장 외에서 발생하는 부패유형이 가장 심각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3-38]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61	30.0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	49	24.1
승부조작	7	3.4
편파판정	20	9.9
기타	27	13.3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기 사항과 관련이 없음	39	19.2
계	203	100.0

추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소속단체 혹은 팀 현장의 부패행위에 관한 응답을 활동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선수 집단의 경우 35.3%가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을 1순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도자 집단의 경우 42.7%가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 없음'의 응답을 제외한 행정가 집단은 선수 집단과 동일하게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에 대해 가장 많이 1순위라고 응답(23.1%)하였으며 심판의 경우도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을 33.3%가 1순위라고 응답하여 지도자 집단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chi^2=93.475^{***}$). 연령대별로도 1순위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을 1순위라고 응답한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히 이번 분석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던 다른 질문과는 달리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였다.

▶▶▶ [표 3-39] 가장 심각한 소속단체 혹은 팀 현장 부패행위 (1순위)

단위: %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기 사항과 관련이 없음	기타	편파판정	승부조작	계	χ^2/df
전체		30.0	24.1	19.2	13.3	9.9	3.4	100.0	
활동 영역	선수	32.4	35.3	0.0	20.6	5.9	5.9	100.0	$\chi^2=93.475$ (df=15) p<.001
	지도자	42.7	20.7	0.0	17.1	15.9	3.7	100.0	
	심판	33.3	22.2	0.0	33.3	0.0	11.1	100.0	
	행정가	15.4	23.1	50.0	3.8	6.4	1.3	100.0	
선수 경험	있다	34.0	21.4	12.6	16.5	12.6	2.9	100.0	$\chi^2=20.075$ (df=5) p<.01
	없다	22.7	22.7	39.4	4.5	7.6	3.0	100.0	
나이	10대	25.0	25.0	0.0	0.0	25.0	25.0	100.0	$\chi^2=35.389$ (df=30) N.S.
	20대	17.9	32.1	25.0	21.4	3.6	0.0	100.0	
	30대	20.0	28.3	23.3	16.7	8.3	3.3	100.0	
	40대	40.3	12.9	21.0	12.9	9.7	3.2	100.0	
	50대	35.3	29.4	8.8	8.8	14.7	2.9	100.0	
	60세	16.7	33.3	16.7	0.0	16.7	16.7	100.0	
	모름	55.6	22.2	11.1	0.0	11.1	0.0	100.0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2순위 유형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이 3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1순위로 선정되었던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이 26.2%로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40]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16	26.2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	24	39.3
승부조작	5	8.2
편파판정	13	21.3
기타	2	3.3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기 사항과 관련이 없음	1	1.6
계	61	100.0

다음으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현장과 관련한 유형별 부패행위와 관련한 심각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응답은 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거의 그렇지 않다', 3번 '별로 그렇지 않다', 4번 '보통', 5번 '약간 그렇다', 6번 '상당히 그렇다', 7번 '매우 그렇다'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이 4.05점으로 2순위로 높았다. 이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유형별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결과와도 유사한 응답 분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 또는 현재 소속된 체육단체, 팀과 관련한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를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1]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개인관련 부패행위의 정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	14	31	44	30	13	13	18	163	4.34
	8.6	19.0	27.0	18.4	8.0	8.0	11.0	100.0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14	22	35	35	19	20	18	163	4.05
	8.6	13.5	21.5	21.5	11.7	12.3	11.0	100.0	
승부조작 문제	12	10	26	33	25	22	35	163	3.44
	7.4	6.1	16.0	20.2	15.3	13.5	21.5	100.0	
편파판정 문제	13	12	27	35	20	23	33	163	3.54
	8.0	7.4	16.6	21.5	12.3	14.1	20.2	100.0	

추가적으로 운동선수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서 '고교 시절 소속 팀에서 입시와 연관된 입시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위 문항과 동일한 척도로 질문하였다. 다만 이 문항의 경우 고교시절 소속팀이 없거나 운동선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관련 사항 없음’으로 별도의 응답 범주를 만들어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질문과 응답 척도는 동일하게 1점-7점으로 구성되었으나 응답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균 응답 점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관련 사항 없음’을 제외한 문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심각성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응답이 31.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36.4%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42] (고교 시절 소속 팀에서) 입시와 연관된 비리의 심각성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관련 사항 없음	계	평균
빈도 (명)	16	17	31	37	22	24	28	28	203	3.77
비율 (%)	7.9	8.4	15.3	18.2	10.8	11.8	13.8	13.8	100.0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도자, 심판, 행정가의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57.3%, 44.4%, 7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선수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chi^2=17.891^{**}$). 특히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 7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인 55.6%보다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대의 경우 20대 이하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30대-60대 집단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그렇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43]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4.5	24.1	41.4	100.0	3.70	
활동 영역	선수	23.5	23.5	52.9	100.0	3.21	$\chi^2=5.537$ (df=6) N.S.
	지도자	37.8	24.4	37.8	100.0	3.91	
	심판	11.1	33.3	55.6	100.0	3.33	
	행정가	38.5	23.1	38.5	100.0	3.73	
선수 경험	있다	35.0	23.3	41.7	100.0	3.68	$\chi^2=.807$ (df=2) N.S.
	없다	39.4	25.8	34.8	100.0	3.98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25	$\chi^2=15.224$ (df=12) N.S.
	20대	17.9	28.6	53.6	100.0	3.29	
	30대	38.3	21.7	40.0	100.0	3.73	
	40대	41.9	25.8	32.3	100.0	4.05	
	50대	32.4	26.5	41.2	100.0	3.68	
	60세	0.0	50.0	50.0	100.0	3.17	
	모름	44.4	0.0	55.6	100.0	3.4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의 선수, 지도자와 관련하여 시간 외 운동, 식사 선택권, 외출, 외박 제한 등과 관련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선수의 경우 41.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그렇다'라는 응답 29.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지도자 집단의 경우 4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7.8%보다 높게 나타나 선수와 상반되게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62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도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의 심각성에 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 이하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그 외 3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모두 '그렇다'에 대한 응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이하 집단과 30대 이상 집단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 [표 3-4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4.5	24.1	41.4	100.0	3.70	
활동 영역	선수	23.5	23.5	52.9	100.0	3.21	$\chi^2=5.537$ (df=6) N.S.
	지도자	37.8	24.4	37.8	100.0	3.91	
	심판	11.1	33.3	55.6	100.0	3.33	
	행정가	38.5	23.1	38.5	100.0	3.73	
선수 경험	있다	35.0	23.3	41.7	100.0	3.68	$\chi^2=.807$ (df=2) N.S.
	없다	39.4	25.8	34.8	100.0	3.98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25	$\chi^2=15.224$ (df=12) N.S.
	20대	17.9	28.6	53.6	100.0	3.29	
	30대	38.3	21.7	40.0	100.0	3.73	
	40대	41.9	25.8	32.3	100.0	4.05	
	50대	32.4	26.5	41.2	100.0	3.68	
	60세	0.0	50.0	50.0	100.0	3.17	
	모름	44.4	0.0	55.6	100.0	3.44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승부조작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집단의 경우 각각 67.6%, 50.0%, 55.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소속 단체, 팀과 관련한 승부조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정가 집단의 경우만 유일하게 '그렇다'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그 외 집단과 상이한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 [표 3-45]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승부조작 문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29.4	20.2	50.3	100.0	3.44	
활동 영역	선수	17.6	14.7	67.6	100.0	2.85	$\chi^2=10.991$ (df=6) N.S.
	지도자	29.3	20.7	50.0	100.0	3.43	
	심판	11.1	33.3	55.6	100.0	3.11	
	행정가	44.7	21.1	34.2	100.0	4.05	
선수 경험	있다	27.8	20.0	52.2	100.0	3.31	$\chi^2=5.226$ (df=2) N.S.
	없다	43.6	25.6	30.8	100.0	4.23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3.00	$\chi^2=10.313$ (df=12) N.S.
	20대	19.0	14.3	66.7	100.0	2.90	
	30대	28.3	17.4	54.3	100.0	3.33	
	40대	33.3	27.1	39.6	100.0	3.67	
	50대	32.3	25.8	41.9	100.0	3.74	
	60세	40.0	20.0	40.0	100.0	3.80	
	모름	25.0	0.0	75.0	100.0	2.88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편파판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경우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승부조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 분야의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집단 경우 승부조작 문제의 심각성과 동일하게 '그렇지 않다'에 대하여 각각 61.8%, 43.9%, 77.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행정가 집단의 경우만 47.4%가 '그렇다'라고 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chi^2=13.399^*$)

▶▶▶ [표 3-46] 소속 체육단체 또는 팀_편파판정 문제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31.9	21.5	46.6	100.0	3.54	
활동 영역	선수	14.7	23.5	61.8	100.0	2.82	$\chi^2=13.399$ (df=6) p<.05
	지도자	34.1	22.0	43.9	100.0	3.66	
	심판	11.1	11.1	77.8	100.0	2.67	
	행정가	47.4	21.1	31.6	100.0	4.13	
선수 경험	있다	34.4	17.8	47.8	100.0	3.56	$\chi^2=3.583$ (df=2) N.S.
	없다	41.0	28.2	30.8	100.0	4.13	
나이	10대	25.0	0.0	75.0	100.0	2.50	$\chi^2=20.022$ (df=12) N.S.
	20대	14.3	19.0	66.7	100.0	2.90	
	30대	28.3	15.2	56.5	100.0	3.28	
	40대	35.4	27.1	37.5	100.0	3.85	
	50대	41.9	32.3	25.8	100.0	4.06	
	60세	60.0	20.0	20.0	100.0	4.40	
	모름	25.0	0.0	75.0	100.0	2.75	

다음으로 선수 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소속 팀에서 입시와 연관된 비리가 심각했었다고 기억하는지에 관해 추가 질문하였고 분석 결과 선수 집단의 경우 선수 61.8%, 지도자 37.8%, 심판 44.4%가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행정가 집단의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32.1%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7.168^{***}$). 또한 연령별로도 살펴본 결과에서도 20대와 30대 이상 모두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 질문은 선수 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 간 응답범주 분석에서 선수 경험 유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표 3-47] 고교 시절 소속 팀_입시 관련 비리 심각성

단위: %

		그렇다	보통	아니다	비선수 출신	계	평균	χ^2/df
전체		31.5	18.2	36.5	13.8	100.0	3.77	
활동 영역	선수	23.5	14.7	61.8	0.0	100.0	2.97	$\chi^2=67.168$ (df=0) p<.001
	지도자	36.6	25.6	37.8	0.0	100.0	3.82	
	심판	11.1	44.4	44.4	0.0	100.0	3.56	
	행정가	32.1	9.0	23.1	35.9	100.0	4.26	
선수 경험	10대	25.0	0.0	75.0	0.0	100.0	2.00	$\chi^2=20.264$ (df=18) N.S.
	20대	25.0	10.7	42.9	21.4	100.0	3.18	
	30대	31.7	15.0	33.3	20.0	100.0	4.06	
	40대	29.0	27.4	32.3	11.3	100.0	3.84	
	50대	32.4	23.5	41.2	2.9	100.0	3.55	
	60대	50.0	0.0	33.3	16.7	100.0	4.40	
	모름	55.6	0.0	33.3	11.1	100.0	4.50	

제5절 | 체육계 반부패 시스템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1.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에 관한 일반적 분석

가.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의향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에서는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20.12.8. 개정). 이에 따라 체육계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21.2%, ‘상당히 그렇다’ 24.6%, ‘약간 그렇다’ 19.7%로 신고할 의향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5.5%로 나타났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3%를 보여 대체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해서 인지할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8] 체육계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43	50	40	35	23	6	6	203
비율(%)	21.2	24.6	19.7	17.2	11.3	3.0	3.0	100.0

활동분야별로 선수 경험 유무, 연령에 따른 신고 의향에 대해서 2차 분석을 하였으나 집단 간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라는 의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선수나 지도자 집단의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각각 61.8%, 63.4%로 심판이나 행정가 집단의 66.7%, 69.2%보다 미세한 차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 3-49] 부패행위 신고 의향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65.5	17.2	17.2	100.0	5.06	
활동 영역	선수	61.8	17.6	20.6	100.0	4.88	$\chi^2=3.981$ (df=6) N.S.
	지도자	63.4	17.1	19.5	100.0	5.02	
	심판	66.7	33.3	0.0	100.0	5.33	
	행정가	69.2	15.4	15.4	100.0	5.15	
선수 경험	있다	64.1	20.4	15.5	100.0	5.08	$\chi^2=1.964$ (df=2) N.S.
	없다	69.7	12.1	18.2	100.0	5.14	
나이	10대	75.0	0.0	25.0	100.0	5.25	$\chi^2=7.742$ (df=12) N.S.
	20대	67.9	17.9	14.3	100.0	5.18	
	30대	68.3	21.7	10.0	100.0	5.32	
	40대	64.5	12.9	22.6	100.0	4.89	
	50대	58.8	20.6	20.6	100.0	4.79	
	60세	50.0	16.7	33.3	100.0	4.67	
	모름	77.8	11.1	11.1	100.0	5.44	

나.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경험에 관한 분석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 의향에 관한 분석에 이어서 체육계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험 유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가 신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1.6%는 신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0] 체육계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있음	17	8.4
없음	186	91.6
계	203	100.0

집단별 신고 경험은 행정가가 11.5%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률이 나타났고 지도자는 4.9%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선수 집단이 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이다.

▶▶▶ [표 3-51] 부패행위 신고 경험

단위: %

		그렇다	아니다	계	χ^2/df
전체		8.4	91.6	100.0	
활동 영역	선수	8.8	91.2	100.0	$\chi^2=2.241$ (df=3) N.S.
	지도자	4.9	95.1	100.0	
	심판	11.1	88.9	100.0	
	행정가	11.5	88.5	100.0	
선수 경험	있다	8.7	91.3	100.0	$\chi^2=.071$ (df=1) N.S.
	없다	7.6	92.4	100.0	
나이	10대	0.0	100.0	100.0	$\chi^2=8.678$ (df=6) N.S.
	20대	14.3	85.7	100.0	
	30대	10.0	90.0	100.0	
	40대	1.6	98.4	100.0	
	50대	14.7	85.3	100.0	
	60세	16.7	83.3	100.0	
	모름	0.0	100.0	100.0	

다음으로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했던 기관에 대해 질문하였고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복수로 신고한 경우도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82개의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신고했다는 응답률이 25.9%를 보여 이들 단체에 가장 많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속기관 16.1%, 스포츠윤리센터 13.0% 등이었다. 국민신문고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각각 9.6%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 상담, 조사 전담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를 개설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하여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 채널을 일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는 대한체육회나 소속단체보다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엘리트 선수 갑질 등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당해 이를 신고했다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역시 이번 조사와 유사하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는 응답률은 13% 수준이었고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 [표 3-52]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기관 (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구분	빈도(명)	%
소속 기관	5	16.1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8	25.9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3	9.6
스포츠윤리센터	4	13.0
국가인권위원회	2	6.4
국민신문고	3	9.6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	2	6.4
기타	4	13.0
계	31	100

5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신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는 이들은 13.1%였고,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221.1%로 더 높게 나타났다(조선일보.2021.10.12. '외면받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다.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행위의 효과에 관한 분석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행위의 효과에 대한 조사는 먼저 신고를 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음으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행위의 일반적 효과에 대해 질문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체육계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 경험이 있는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행위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거의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도 각각 11.8%, 5.9%로 나타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적은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에 관한 많은 고려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최근까지도 스포츠계의 피해자가 소속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구제 및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남기연, 유소미, 2020) 2020년 4월 사망한 최숙현 선수의 경우 소속 단체, 소속 체육회, 관련 협회 등 7개 공공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주한, 2020). 결국 지지부진한 후속조치와 2차 피해로 인해 신고자들은 신고의 효과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표 3-53] 신고행위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1	1	4	2	1	2	6	17
비율(%)	5.9	5.9	23.5	11.8	5.9	11.8	35.3	100.0

라.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 효과에 관한 일반적 인식 분석

이번에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약간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27.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당히 그렇다’가 16.7%로 나타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8.4%, '거의 그렇지 않다' 10.3%, '별로 그렇지 않다' 14.8% 등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률은 33.5%로 나타나 신고의 효과성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54]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20	34	55	26	30	21	17	203
비율(%)	9.9	16.7	27.1	12.8	14.8	10.3	8.4	100.0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집단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며 응답범주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판의 경우 88.9%가 '그렇다'라고 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도자' 집단의 경우 5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동의의 수준에 있어서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 [표 3-55] 신고행위의 일반적 효과성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53.7	12.8	33.5	100.0	4.30	
활동 영역	선수	52.9	14.7	32.4	100.0	4.29	$\chi^2=7.406$ (df=6) N.S.
	지도자	51.2	15.9	32.9	100.0	4.21	
	심판	88.9	11.1	0.0	100.0	5.44	
	행정가	52.6	9.0	38.5	100.0	4.26	
선수 경험	있다	56.3	13.6	30.1	100.0	4.34	$\chi^2=1.617$ (df=2) N.S.
	없다	50.0	10.6	39.4	100.0	4.23	
나이	10대	75.0	0.0	25.0	100.0	4.50	$\chi^2=7.942$ (df=12) N.S.
	20대	53.6	14.3	32.1	100.0	4.25	
	30대	45.0	13.3	41.7	100.0	3.97	
	40대	54.8	12.9	32.3	100.0	4.47	
	50대	55.9	17.6	26.5	100.0	4.38	
	60세	83.3	0.0	16.7	100.0	5.17	
	모름	66.7	0.0	33.3	100.0	4.44	

이처럼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를 했던 응답자들은 신고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제시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1번=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 2번=신고 및 해결 절차의 복잡성, 3번=신고 처리 기관의 직무유기(관료주의적 태만에 의한 지연 처리), 4번=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처리 방해, 5번=신고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 6번=신고자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 체육계 내의 문화, 7번=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 아무 소용없다는 무력감, 8번=기타 등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각 사례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22.2%가 1순위라고 응답하였고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를 17.2%가 응답하여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행위'도 13.8%의 응답률을 보여 2차 피해에 관한 우려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56]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	45	22.2
신고 및 해결 절차의 복잡성	22	10.8
신고 처리 기관의 직무유기 (관료주의적 태만에 의한 처리 지연)	24	11.8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	35	17.2
신고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	28	13.8
신고자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 체육계 내의 문화	22	10.8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 아무 소용없다는 무력감	26	12.8
기타	1	0.5
계	203	100.0

그런데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활동영역, 선수경험 유무,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활동영역별로는 선수, 지도자, 심판 모두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1순위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유일하게 행정가 집단의 경우만 ‘신고 처리 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19.2%의 응답률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선수 경험 유무로 살펴본 결과로는 선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아닌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대 미만의 경우 ‘아무 소용 없다는 무력감’이 1순위로 나타났고 40대는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20-30대 집단과 차이가 나타났다.

▶▶▶ [표 3-57]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1순위)

단위: %

		증거 확보의 어려움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	아무 소용 없다는 무력감	신고 처리 기관의 직무유기	신고자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 문화	신고 및 해결 절차의 복잡성	기타	계	χ^2/df
전체		22.2	17.2	13.8	12.8	11.8	10.8	10.8	0.5	100.0	
활동 영역	선수	29.4	8.8	14.7	17.6	2.9	8.8	17.6	0.0	100.0	$\chi^2=29.030$ (df=21) N.S.
	지도자	26.8	22.0	12.2	13.4	9.8	6.1	8.5	1.2	100.0	
	심판	44.4	0.0	11.1	22.2	0.0	11.1	11.1	0.0	100.0	
	행정가	11.5	17.9	15.4	9.0	19.2	16.7	10.3	0.0	100.0	
선수 경험	있다	24.3	17.5	12.6	12.6	12.6	9.7	9.7	1.0	100.0	$\chi^2=3.638$ (df=7) N.S.
	없다	15.2	21.2	15.2	10.6	15.2	13.6	9.1	0.0	100.0	
나이	10대	25.0	0.0	0.0	75.0	0.0	0.0	0.0	0.0	100.0	$\chi^2=52.403$ (df=42) N.S.
	20대	25.0	10.7	25.0	7.1	3.6	17.9	10.7	0.0	100.0	
	30대	23.3	10.0	13.3	8.3	20.0	15.0	10.0	0.0	100.0	
	40대	21.0	27.4	11.3	11.3	8.1	8.1	11.3	1.6	100.0	
	50대	17.6	11.8	17.6	20.6	11.8	5.9	14.7	0.0	100.0	
	60세	50.0	16.7	0.0	0.0	16.7	0.0	16.7	0.0	100.0	
	모름	11.1	44.4	0.0	22.2	11.1	11.1	0.0	0.0	100.0	

반면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2순위로 선정된 것은 26.6%가 응답한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결국 지금까지 스포츠 구성원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기관이나 단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남기연, 김대희, 2020) 이로 인해 신고를 통해 제도적 개선이나 피해자 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58]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	12	5.9
신고 및 해결 절차의 복잡성	10	4.9
신고 처리 기관의 직무유기 (관료주의적 태만에 의한 처리 지연)	13	6.4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	40	19.7
신고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	31	15.3
신고자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 체육계 내의 문화	40	19.7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 아무 소용없다는 무력감	54	26.6
기타	3	1.5
계	203	100.0

2.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적발 및 처벌에 관한 분석

가.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적발에 관한 인식

체육계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가 3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는 14.3%, '전혀 그렇지 않다'는 17.2%가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4.0%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그렇다' 0.5%, '상당히 그렇다' 3.0%, '약간 그렇다' 9.9% 등 약 13.3%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적발에 대해 회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태린, 권관배, 김창우(2016)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조직사유화에서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조직 구조상 조직사유화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포츠계 부패행위인 대학 입시비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관련 사안이 학부모, 대학 및 고등학교 코치 간에 담합 하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공범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덮여지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태룡, 2011).

▶▶▶ [표 3-59]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1	6	20	46	66	29	35	203
비율(%)	0.5	3.0	9.9	22.7	32.5	14.3	17.2	100.0

특히 스포츠행정가의 경우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 적발에 대하여 71.8%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반면 선수 집단이 4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집단 간 응답범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60]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 적발에 대한 평가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13.3	22.7	64.0	100.0	3.04	
활동 영역	선수	26.5	29.4	44.1	100.0	3.41	$\chi^2=12.584$ (df=6) N.S.
	지도자	12.2	22.0	65.9	100.0	2.99	
	심판	0.0	44.4	55.6	100.0	2.89	
	행정가	10.3	17.9	71.8	100.0	2.96	
선수 경험	있다	10.7	22.3	67.0	100.0	2.92	$\chi^2=.174$ (df=2) N.S.
	없다	10.6	19.7	69.7	100.0	3.05	
나이	10대	75.0	0.0	25.0	100.0	4.75	$\chi^2=32.471$ (df=12) N.S.
	20대	21.4	25.0	53.6	100.0	3.36	
	30대	3.3	18.3	78.3	100.0	2.72	
	40대	12.9	21.0	66.1	100.0	2.89	
	50대	11.8	35.3	52.9	100.0	3.29	
	60세	50.0	16.7	33.3	100.0	4.17	
	모름	11.1	22.2	66.7	100.0	2.89	

나.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인식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처벌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0%로 전혀 없었으며, '상당히 그렇다' 3.4%, '약간 그렇다' 10.3%등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13.8%만이 '처벌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30.0%, '거의 그렇지 않다' 14.3%, '전혀 그렇지 않다' 16.7%로 '처벌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1.1%로 '잘 이뤄지고 있다'의 응답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현장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체육계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시스템과 관련한 엄격한 처벌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남기연, 김대희(2016)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선수, 경기지도자, 심판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의 개인책임을 묻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속 구단이나 연맹 또는 협회와 같은 스포츠 단체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표 3-61]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빈도(명)	0	7	21	51	61	29	34	203
비율(%)	0.0	3.4	10.3	25.1	30.0	14.3	16.7	100.0

집단별로 부패행위자 처벌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와 관련하여 행정가 집단이 7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심판이 44.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2] 부패행위자 처벌에 대한 평가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χ^2/df
전체		13.8	25.1	61.1	100.0	3.08	
활동 영역	선수	23.5	29.4	47.1	100.0	3.47	$\chi^2=9.247$ (df=6) N.S.
	지도자	14.6	26.8	58.5	100.0	3.07	
	심판	22.2	33.3	44.4	100.0	3.22	
	행정가	7.7	20.5	71.8	100.0	2.91	
선수 경험	있다	13.6	27.2	59.2	100.0	3.04	$\chi^2=2.523$ (df=2) N.S.
	없다	9.1	19.7	71.2	100.0	2.95	
나이	10대	50.0	0.0	50.0	100.0	4.25	$\chi^2=15.108$ (df=12) N.S.
	20대	21.4	21.4	57.1	100.0	3.18	
	30대	6.7	25.0	68.3	100.0	2.85	
	40대	12.9	22.6	64.5	100.0	2.95	
	50대	17.6	38.2	44.1	100.0	3.53	
	60세	16.7	33.3	50.0	100.0	3.67	
	모름	11.1	11.1	77.8	100.0	2.67	

이에 따라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가장 큰 요인 2가지를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해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먼저 제시된 항목을 보면 1번=부패행위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 2번=체육회, 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시스템의 부실, 3번=엄격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 4번=성적 지상주의(기량이 탁월한 운동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 혹은 감경), 5번=인맥, 연고로 인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 6번=기타 등이다. 이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 1순위의 경우 '인맥, 연고로 인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가 3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패행위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 26.6%, '체육회, 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시스템의 부실' 15.8%,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과 '성적 지상주의'가 각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63]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부패행위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	54	26.6
체육회·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시스템의 부실	32	15.8
엄격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	24	11.8
성적 지상주의 (기량이 탁월한 운동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 혹은 감경)	24	11.8
인맥·연고로 인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	68	33.5
기타	1	0.5
계	203	100.0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 2순위 답변은 27.6%의 응답률을 보인 ‘인맥, 연고로 인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육회, 체육단체의 사건 처리 시스템의 부실’이 26.5%, ‘엄격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이 17.2%, ‘부패행위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이 16.3% 순서로 나타났고 ‘성적 지상주의’가 11.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64]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부패행위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	33	16.3
체육회·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시스템의 부실	54	26.6
엄격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	35	17.2
성적 지상주의 (기량이 탁월한 운동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 혹은 감경)	24	11.8
인맥·연고로 인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	56	27.6
기타	1	0.5
계	203	100.0

종합적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 1, 2순위에 대한 답변 결과는 결국 그간 체육계의 반복되어 왔던 소위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의 현실과 연관될 것이다. 즉 체육계는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인맥, 학연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패 등의 비위를 알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다. 비록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결과나 책임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되어 개인이 감당해 내거나 심한 경우 과실죄로 인한 내부고발자로 몰리게 되어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도 구조적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재찬, 김지혁(2020)은 현 상황을 스포츠계의 자정능력 상실이라는 꼬리표와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스포츠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과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절 | 체육계 반부패제도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의 인지, 효과에 관한 일반적 분석

가.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별 인지 수준

2020년 8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각종 단체의 신고 기능이 통합, 일원화되었다(남기연, 유소미, 2020). 따라서 새로운 신고, 조사, 상담 및 피해자지원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하여 체육계 내의 부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인지 여부와 효과성에 관한 인지 수준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

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 과거와 현재에 걸쳐 체육계 부패의 신고, 조사, 상담과 관련된 기관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각각의 기관에 대한 인지수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스포츠윤리센터와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36.5%, 34.0%가 '조금 안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에 대해 각각 40.4%, 34.5%, 44.8%, 35.0%가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5] 체육계 내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항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알고 있다	계
스포츠 윤리센터	16(7.9)	58(28.6)	74(36.5)	55(27.1)	203(100.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22(10.8)	82(40.4)	68(33.5)	31(15.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25(12.3)	66(32.5)	69(34.0)	43(21.2)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35(17.2)	70(34.5)	58(28.6)	40(19.7)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43(21.2)	91(44.8)	38(18.7)	31(15.3)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43(21.2)	71(35.0)	67(33.0)	22(10.8)	

다음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각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집단의 특성별로 인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의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목적으로 2020년 8월 5일 신설되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하여 선수 집단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52.9%로 안다고 응답한 47.1%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선수를 제외한 지도자, 심판, 행정가 집단은 각각 64.6%,

55.6%, 70.5%가 ‘안다’라고 응답하며 ‘모른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담, 신고, 조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전담기구에 대해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그 외 심판, 지도자, 행정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곧 선수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이다.

▶▶▶ [표 3-66]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1) 스포츠윤리센터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36.5	63.5	100.0	2.83	
활동 영역	선수	52.9	47.1	100.0	2.44	$\chi^2=5.914$ (df=3) N.S.
	지도자	35.4	64.6	100.0	2.80	
	심판	44.4	55.6	100.0	2.78	
	행정가	29.5	70.5	100.0	3.03	
선수 경험	있다	28.2	71.8	100.0	2.99	$\chi^2=2.953$ (df=1) N.S.
	없다	40.9	59.1	100.0	2.77	
나이	10대	100.0	0.0	100.0	2.00	$\chi^2=11.135$ (df=6) N.S.
	20대	46.4	53.6	100.0	2.64	
	30대	31.7	68.3	100.0	2.88	
	40대	30.6	69.4	100.0	3.02	
	50대	35.3	64.7	100.0	2.74	
	60세	33.3	66.7	100.0	3.00	
	모름	55.6	44.4	100.0	2.33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계 부정 및 비위의 신속한 척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특히 신고 대상을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 조직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로 하여 스포츠의 4대악을 척결하겠다는 목표로 출범(문화체육관광부, 2016)하여 체육계의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48.8%가 ‘안다’라고 답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대한 인지 응답 수준이 각각 35.3%, 45.1%로, 심판 66.7%, 행정가 56.4%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30대 이하의 집단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우세하였고, 40대 이상 집단에서는 ‘안다’라는 응답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3-67]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51.2	48.8	100.0	2.53	
활동 영역	선수	64.7	35.3	100.0	2.26	$\chi^2=5.884$ (df=3) N.S.
	지도자	54.9	45.1	100.0	2.45	
	심판	33.3	66.7	100.0	2.89	
	행정가	43.6	56.4	100.0	2.69	
선수 경험	있다	46.6	53.4	100.0	2.62	$\chi^2=.389$ (df=1) N.S.
	없다	51.5	48.5	100.0	2.53	
나이	10대	75.0	25.0	100.0	2.00	$\chi^2=12.443$ (df=6) N.S.
	20대	71.4	28.6	100.0	2.14	
	30대	55.0	45.0	100.0	2.48	
	40대	45.2	54.8	100.0	2.68	
	50대	32.4	67.6	100.0	2.76	
	60세	50.0	50.0	100.0	2.50	
	모름	66.7	33.3	100.0	2.44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 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 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는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으로 두고 있다(대한체육회, 2021). 이에 따라 각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선수 집단의 경우 52.9%가 ‘모른다’라고 응답한 반면 지도자, 심판, 행정가의 경우 ‘안다’라는 응답이 각각 56.1%, 77.8%, 55.1%로 ‘모른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안다’라는 응답 비율이,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3.1%, 53.0%로 높게 나타나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chi^2=4.269^*$).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 집단과 40-50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 이하 집단의 경우 ‘모른다’라는 응답비율이, 40-50대 집단의 경우 ‘안다’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3-68]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44.8	55.2	100.0	2.64	
활동 영역	선수	52.9	47.1	100.0	2.38	$\chi^2=2.793$ (df=3) N.S.
	지도자	43.9	56.1	100.0	2.68	
	심판	22.2	77.8	100.0	3.11	
	행정가	44.9	55.1	100.0	2.65	
선수 경험	있다	36.9	63.1	100.0	2.83	$\chi^2=4.269$ (df=1) p<.05
	없다	53.0	47.0	100.0	2.47	
나이	10대	100.0	0.0	100.0	1.25	$\chi^2=11.801$ (df=6) N.S.
	20대	53.6	46.4	100.0	2.36	
	30대	50.0	50.0	100.0	2.53	
	40대	38.7	61.3	100.0	2.82	
	50대	29.4	70.6	100.0	2.85	
	60세	66.7	33.3	100.0	2.67	
	모름	44.4	55.6	100.0	2.78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지난 2017년 신설되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되기 전까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의 신고, 상담,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으로, 현재는 모든 신고 접수 및 문의를 스포츠윤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의 경우 선수의 73.5%, 지도자의 51.2%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전체적으로도 ‘모른다’라는 응답 수준이 51.7%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응답범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168^*$)고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068^*$).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인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9]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51.7	48.3	100.0	2.51	
활동 영역	선수	73.5	26.5	100.0	2.00	$\chi^2=9.168$ (df=3) p<.05
	지도자	51.2	48.8	100.0	2.51	
	심판	33.3	66.7	100.0	3.22	
	행정가	44.9	55.1	100.0	2.64	
선수 경험	있다	41.7	58.3	100.0	2.74	$\chi^2=3.306$ (df=1) N.S.
	없다	56.1	43.9	100.0	2.41	
나이	10대	75.0	25.0	100.0	2.25	$\chi^2=15.068$ (df=6) p<.05
	20대	75.0	25.0	100.0	2.04	
	30대	53.3	46.7	100.0	2.47	
	40대	37.1	62.9	100.0	2.84	
	50대	47.1	52.9	100.0	2.50	
	60세	83.3	16.7	100.0	2.17	
	모름	55.6	44.4	100.0	2.3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선수들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3월에 체육인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였고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해왔으며,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에 관한 인지도에 대한 분석결과 집단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모른다'는 응답률이 '안다'는 응답률보다 높았으며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모른다'는 66.0%, '안다'는 34.0%의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70]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66.0	34.0	100.0	2.28	
활동 영역	선수	79.4	20.6	100.0	1.91	$\chi^2=3.533$ (df=3) N.S.
	지도자	63.4	36.6	100.0	2.37	
	심판	55.6	44.4	100.0	2.44	
	행정가	64.1	35.9	100.0	2.33	
선수 경험	있다	59.2	40.8	100.0	2.43	$\chi^2=1.900$ (df=1) N.S.
	없다	69.7	30.3	100.0	2.24	
나이	10대	100.0	0.0	100.0	2.00	$\chi^2=5.007$ (df=6) N.S.
	20대	67.9	32.1	100.0	2.21	
	30대	63.3	36.7	100.0	2.27	
	40대	61.3	38.7	100.0	2.40	
	50대	73.5	26.5	100.0	2.18	
	60세	83.3	16.7	100.0	2.17	
	모름	55.6	44.4	100.0	2.33	

2019년 1월 25일 정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립을 발표하였고 2019년 2월 25일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위원회 조사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운영 중에 있다(문재태, 김상겸, 2020).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주요 기능은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스포츠인권의 진정사건 조사, 피해자 지원, 인권교육, 스포츠인권 캠페인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가 56.2%, ‘안다’가 43.8%의 응답률을 보여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영역으로 구분했을 경우 심판 집단의 경우만 ‘안다’라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71] 부패행위 제도적 장치 인지 여부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단위: %

		모른다	안다	계	평균	χ^2/df
전체		56.2	43.8	100.0	2.33	
활동 영역	선수	64.7	35.3	100.0	2.03	$\chi^2=2.947$ (df=3) N.S.
	지도자	56.1	43.9	100.0	2.38	
	심판	33.3	66.7	100.0	2.78	
	행정가	55.1	44.9	100.0	2.37	
선수 경험	있다	46.6	53.4	100.0	2.57	$\chi^2=6.529$ (df=1) p<.05
	없다	66.7	33.3	100.0	2.12	
나이	10대	100.0	0.0	100.0	1.25	$\chi^2=5.066$ (df=6) N.S.
	20대	64.3	35.7	100.0	2.14	
	30대	55.0	45.0	100.0	2.33	
	40대	51.6	48.4	100.0	2.45	
	50대	52.9	47.1	100.0	2.47	
	60세	50.0	50.0	100.0	2.33	
	모름	66.7	33.3	100.0	2.11	

나.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별 효과성에 관한 인식 수준

체육계 부패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인식 수준에 대한 분석이어서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때 응답은 1번='전혀 효과 없다', 2번='별로 효과 없다', 3번='약간 효과가 있다', 4번='매우 효과 있다', 그리고 9번='잘 모르겠다'의 5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때 '잘 모르겠다'를 9번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여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별 효과성의 경우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하지 않고 응답 범주끼리의 기술적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만 실시하였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전혀 효과없다' 7.8%, '별로 효과 없다'에 대해 37.2%가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45.0%가 '효과가 없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경우 38.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경우 37.1%만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여 응답자들은 스포츠윤리센터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윤리센터보다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51.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경우 59.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경우 56.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가 그간의 체육계 제도적 장치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되었음에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제도적 장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2]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 제도적 장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단위: 명, %

항목	전혀 효과없다	별로 효과없다	약간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잘 모르겠다	계
스포츠 윤리센터	10 (7.8)	48 (37.2)	49 (38.0)	17 (13.2)	5 (3.9)	129 (100.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9 (9.1)	29 (29.3)	53 (53.5)	6 (6.1)	2 (2.0)	99 (100.0)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12 (10.7)	40 (35.7)	47 (42.0)	9(8.0)	4 (3.6)	112 (100.0)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12 (12.2)	34 (34.7)	39 (39.8)	9(9.2)	4 (4.1)	98 (100.0)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5 (7.2)	26 (37.7)	28 (40.6)	9(13.0)	1 (1.4)	69 (100.0)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5 (5.6)	28 (31.5)	37 (41.6)	13(14.6)	6 (6.7)	89 (100.0)

다음으로 소속 집단별로 각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의 제도적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활동 영역별로는 선수, 지도자, 심판이, 선수 경험 유무의 경우 선수 경험이 없는 집단이, 연령별로는 30대 집단이 효과성이 '있다'라는 응답비율이 '없다'는 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활동영역, 선수 경험 유무, 연령 간 응답범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73] 제도적 장치 효과성 1) 스포츠윤리센터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45.0	51.2	3.9	100.0	2.59	
활동 영역	선수	25.0	68.8	6.3	100.0	3.00	$\chi^2=6.886$ (df=6) N.S.
	지도자	43.4	52.8	3.8	100.0	2.53	
	심판	0.0	100.0	0.0	100.0	3.20	
	행정가	56.4	40.0	3.6	100.0	2.47	
선수 경험	있다	44.6	52.7	2.7	100.0	2.58	$\chi^2=.796$ (df=2) N.S.
	없다	53.8	41.0	5.1	100.0	2.43	
나이	10대	26.7	66.7	6.7	100.0	3.00	$\chi^2=11.005$ (df=10) N.S.
	20대	58.5	36.6	4.9	100.0	2.38	
	30대	48.8	48.8	2.3	100.0	2.52	
	40대	27.3	72.7	0.0	100.0	2.86	
	50대	75.0	25.0	0.0	100.0	2.00	
	60세	0.0	75.0	25.0	100.0	3.0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선수의 경우 91.7%, 심판의 경우 100% 등 매우 높은 수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지도자의 경우도 59.5%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선수, 지도자, 심판에게 높은 수준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74] 제도적 장치 효과성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38.4	59.6	2.0	100.0	2.58	
활동 영역	선수	8.3	91.7	0.0	100.0	3.00	$\chi^2=1.432$ (df=6) N.S.
	지도자	37.8	59.5	2.7	100.0	2.58	
	심판	0.0	100.0	0.0	100.0	3.00	
	행정가	52.3	45.5	2.3	100.0	2.40	
선수 경험	있다	34.5	61.8	3.6	100.0	2.60	$\chi^2=1.903$ (df=2) N.S.
	없다	56.3	43.8	0.0	100.0	2.38	
나이	10대	0.0	100.0	0.0	100.0	3.00	$\chi^2=19.946$ (df=12) N.S.
	20대	25.0	75.0	0.0	100.0	2.88	
	30대	48.1	48.1	3.7	100.0	2.35	
	40대	41.2	58.8	0.0	100.0	2.53	
	50대	30.4	69.6	0.0	100.0	2.78	
	60세	33.3	66.7	0.0	100.0	2.67	
	모름	33.3	33.3	33.3	100.0	2.50	

다음으로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활동 영역, 선수 경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집단은 각각 75.0%, 54.3%, 71.4% 수준에서 '있다'라고 응답하여 '없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 53.8%, 없는 경우 29.0% 수준에서 '있다'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효과에 대해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5] 제도적 장치 효과성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46.4	50.0	3.6	100.0	2.49	
활동 영역	선수	25.0	75.0	0.0	100.0	2.81	$\chi^2=7.433$ (df=6) N.S.
	지도자	41.3	54.3	4.3	100.0	2.50	
	심판	28.6	71.4	0.0	100.0	3.00	
	행정가	62.8	32.6	4.7	100.0	2.27	
선수 경험	있다	43.1	53.8	3.1	100.0	2.52	$\chi^2=4.581$ (df=2) N.S.
	없다	64.5	29.0	6.5	100.0	2.24	
나이	10대	23.1	76.9	0.0	100.0	2.77	$\chi^2=13.909$ (df=10) N.S.
	20대	60.0	33.3	6.7	100.0	2.21	
	30대	50.0	47.4	2.6	100.0	2.46	
	40대	37.5	62.5	0.0	100.0	2.71	
	50대	50.0	50.0	0.0	100.0	2.50	
	60세	40.0	40.0	20.0	100.0	2.50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의 경우 선수의 7.8%, 지도자의 50.0%, 심판의 66.7%가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행정가 집단의 경우 58.1%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chi^2=18.852^{**}$).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도 행정가와 유사하게 55.2%가 효과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있다'의 41.4%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20대 미만의 경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없다'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3-76] 제도적 장치 효과성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46.9	49.0	4.1	100.0	2.48	
활동 영역	선수	11.1	77.8	11.1	100.0	3.38	$\chi^2=18.852$ (df=6) p<.01
	지도자	45.0	50.0	5.0	100.0	2.42	
	심판	33.3	66.7	0.0	100.0	2.83	
	행정가	58.1	39.5	2.3	100.0	2.31	
선수 경험	있다	48.3	48.3	3.3	100.0	2.41	$\chi^2=.382$ (df=2) N.S.
	없다	55.2	41.4	3.4	100.0	2.36	
나이	10대	0.0	100.0	0.0	100.0	4.00	$\chi^2=32.722$ (df=12) N.S.
	20대	28.6	57.1	14.3	100.0	3.17	
	30대	67.9	25.0	7.1	100.0	2.04	
	40대	48.7	51.3	0.0	100.0	2.49	
	50대	22.2	77.8	0.0	100.0	2.78	
	60세	0.0	100.0	0.0	100.0	3.00	
	모름	50.0	25.0	25.0	100.0	2.3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 효과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결과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응답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수, 지도자, 심판은 각각 응답자의 57.1%, 60.0%, 100%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행정가 39.3%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와는 달리 효과성이 없다고 60.0%가 응답하여 다수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 [표 3-77] 제도적 장치 효과성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44.9	53.6	1.4	100.0	2.60	
활동 영역	선수	42.9	57.1	0.0	100.0	2.86	$\chi^2=3.558$ (df=6) N.S.
	지도자	36.7	60.0	3.3	100.0	2.69	
	심판	0.0	100.0	0.0	100.0	3.00	
	행정가	60.7	39.3	0.0	100.0	2.39	
선수 경험	있다	38.1	59.5	2.4	100.0	2.63	$\chi^2=.851$ (df=2) N.S.
	없다	60.0	40.0	0.0	100.0	2.45	
나이	10대	44.4	55.6	0.0	100.0	2.89	$\chi^2=22.174$ (df=10) N.S.
	20대	54.5	45.5	0.0	100.0	2.41	
	30대	50.0	50.0	0.0	100.0	2.50	
	40대	22.2	77.8	0.0	100.0	2.89	
	50대	0.0	100.0	0.0	100.0	3.00	
	60세	25.0	50.0	25.0	100.0	3.00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제도적 장치로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분석해본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집단에서 각각 66.7%, 63.9%, 83.3%가 '있다'라고 하여 없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며 행정가의 40.0%와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도 58.2%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의 45.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78] 제도적 장치 효과성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단위: %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χ^2/df
전체		44.9	53.6	1.4	100.0	2.60	
활동 영역	선수	42.9	57.1	0.0	100.0	2.86	$\chi^2=3.558$ (df=6) N.S.
	지도자	36.7	60.0	3.3	100.0	2.69	
	심판	0.0	100.0	0.0	100.0	3.00	
	행정가	60.7	39.3	0.0	100.0	2.39	
선수 경험	있다	38.1	59.5	2.4	100.0	2.63	$\chi^2=.851$ (df=2) N.S.
	없다	60.0	40.0	0.0	100.0	2.45	
나이	10대	44.4	55.6	0.0	100.0	2.89	$\chi^2=22.174$ (df=10) N.S.
	20대	54.5	45.5	0.0	100.0	2.41	
	30대	50.0	50.0	0.0	100.0	2.50	
	40대	22.2	77.8	0.0	100.0	2.89	
	50대	0.0	100.0	0.0	100.0	3.00	
	60세	25.0	50.0	25.0	100.0	3.00	

2. 체육계 부패와 비리 근절 관련 정책에 관한 일반적 인식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번=체육계 비리, 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 2번=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3번=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4번=비리, 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5번=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6번=기타의 6개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40.4%가 선정한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육계 비리, 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가 20.7%, '비리, 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15.8%,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12.3% 순으로 분석되었다.

▶▶▶ [표 3-79]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체육계 비리·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42	20.7
비리·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82	40.4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18	8.9
비리·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32	15.8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25	12.3
기타	4	2.0
계	203	100.0

집단별로 구분하여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1순위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행정가 집단 모두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을 35.3%, 40.2%, 44.9%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 순을 보였으나, 심판 집단의 경우만 ‘예방교육 강화’를 33.3%가 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80] 부패 근절을 위한 정책 중요도 (1순위)

단위: %

		비리·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체육계 비리·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비리·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기타	계	χ^2/df
전체		40.4	20.7	15.8	12.3	8.9	2.0	100.0	
활동 영역	선수	35.3	29.4	23.5	5.9	5.9	0.0	100.0	$\chi^2=15.744$ (df=15) N.S.
	지도자	40.2	17.1	14.6	14.6	12.2	1.2	100.0	
	심판	22.2	33.3	0.0	22.2	11.1	11.1	100.0	
	행정가	44.9	19.2	15.4	11.5	6.4	2.6	100.0	
선수 경험	있다	38.8	20.4	16.5	12.6	9.7	1.9	100.0	$\chi^2=2.112$ (df=5) N.S.
	없다	45.5	16.7	10.6	15.2	9.1	3.0	100.0	
나이	10대	25.0	25.0	50.0	0.0	0.0	0.0	100.0	$\chi^2=37.873$ (df=30) N.S.
	20대	60.7	14.3	17.9	3.6	3.6	0.0	100.0	
	30대	45.0	21.7	15.0	10.0	6.7	1.7	100.0	
	40대	35.5	14.5	16.1	24.2	6.5	3.2	100.0	
	50대	29.4	26.5	14.7	5.9	20.6	2.9	100.0	
	60세	33.3	33.3	16.7	16.7	0.0	0.0	100.0	
	모름	33.3	44.4	0.0	0.0	22.2	0.0	100.0	

다음으로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리, 부패 행위로 인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가 3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20.2%,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19.2%,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17.2%의 순서로 나타났다.

▶▶▶ [표 3-81]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체육계 비리·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18	8.9
비리·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41	20.2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39	19.2
비리·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66	32.5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35	17.2
기타	4	2.0
계	203	100.0

제7절 | 체육계 부패 상황판단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6절에서는 스포츠 부패행위와 관련 있는 상황을 가상시나리오로 구상하여 3가지 유형별로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유형1번(예시1)은 스포츠 부패행위 중 횡령과 관련된 시나리오로 이 예시에서 나타난 부패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의견, 개인적 횡령 상황에 대한 의견, 집단을 위한 유용에 대한 의견 등 3문항으로 분리하여 물어보았다. 다시 말해 1번 문항은 예시 행동 그 자체를 어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는가에 대해 측정하였고, 2번 문항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는가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개인적 목적이 아닌 단체나 기관 전체를 위한 유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는가를 구분한 것이다. 다음으로 예시2번은 스포츠 부패행위 중 지도자에게 공금 이외의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시나리오로 예시1번과 동일하게 문항1, 2, 3번을 구성

하여 각 행위의 목적별 문제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시3번은 스포츠 부패행위 중 승부조작을 위한 담합에 관련된 시나리오로 이 상황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문제의식, 지도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 수준에 대해서 물어봤다.

1. 예시1에 관한 인식 분석

예시1은 스포츠 부패행위 중 조직사유화의 범주에 속해있는 횡령관련 시나리오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체육단체에서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상위단체에 청구하는데, 100만 원짜리 용품이라고 서류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이었다. 즉 20만 원의 차액이 남았다.

이 상황에 대해 각각 '이러한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1번 문항)', '이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2번 문항)', '이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소속 단체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3번 문항)'의 3개의 문항을 주고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은 동일하게 1번='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2번='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3번='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4번='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의 4개 범주로 제시하였다.

예시1의 상황에 대한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문항1번인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66.5%는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법으로도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23.2%로 나타났고,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라는 응답 비율도 8.9%로 나타났다. 즉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로 응답한 비율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 대상자는 경중의 차이, 법적 책임 유무의 차이는 있으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2]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47	23.2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135	66.5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18	8.9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2	1.0
모름/무응답	1	0.5
계	203	100.0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집단에서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행정가' 집단의 경우 59.0%만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여 이 응답 범주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항2번인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누군가(지도자 또는 회계담당자 등)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답하였으며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답변도 41.9%로 나타났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라는 답변도 4.9%를 보여 무응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부패행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3]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누군가(지도자 또는 회계담당자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107	52.7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85	41.9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10	4.9
모름/무응답	1	0.5
계	203	100.0

그러나 집단 간 응답 분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수, 지도자, 심판 집단은 모두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41.2%, 56.1%, 55.6%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행정가 집단의 경우보다 강한 입장으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라고 73.1%가 응답하여 행정가 외의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chi^2=43.480^{***}$), 20대-50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령 간 응답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6.729^{**}$).

마지막으로 문항3번인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소속 단체의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였다. 3번에 대한 응답은 개인적인 착복에 대한 응답과는 차이가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준과는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항목에 대한 답변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라는 응답이 25.1%,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에 대한 응답이 22.7%로 나타났고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이라는 응답 비율도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4]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소속 단체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구분	단위: 명, %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46	22.7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98	48.3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51	25.1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7	3.4
모름/무응답	1	0.5
계	203	100.0

3번 문항인 소속단체의 필요경비로 유용하여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대 미만의 경우만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chi^2=44.365^{**}$) 그 외에는

집단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2. 예시2에 관한 인식 분석

예시2는 체육계 현장에서 지도자와 학부모, 선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도자에게 추가 훈련을 부탁하며 별도의 강습료를 모아서 지불한 시나리오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문항 1=이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학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인식(문항2=이 예시에서 500만 원을 지도자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체육팀의 필요경비로 받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인식(문항3=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체육팀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상황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1번=‘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2번=‘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3번=‘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4번=‘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의 4개 범주로 제시하였다.

어떤 학교의 어떤 종목 체육팀의 학부모들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에게 추가 운동을 부탁하며 학부모들끼리 1인당 50만 원씩 모아 총 500만 원을 감독에게 전달하였다.

먼저 이러한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문항1)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43.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34.0%,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 18.2%의 응답률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나 학부모에게 지도자가 별도로 돈을 받고, 또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가 문제 수준의 경중 정도, 법적 처벌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5]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69	34.0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89	43.8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37	18.2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6	3.0
모름/무응답	2	1.0
계	203	100.0

학부모가 별도로 지도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행정가 집단과 선수 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30대 집단의 경우 각각 42.3%, 43.9%, 41.7%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경험이 있는 집단, 30대 이외의 집단에서는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서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학부모가 지도자에게 추가 운동을 부탁하며 준 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의 문제의식(문항2)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도 첫 번째 응답과는 상이하고 예시1번과는 유사한 입장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7.8%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고 다음으로 35.0%가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14.3%가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7%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6]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지도자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97	47.8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71	35.0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29	14.3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4	2.0
모름/무응답	2	1.0
계	203	100.0

구체적으로 활동영역별 응답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가의 경우 응답자의 59.0%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지도자, 심판의 경우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42.7%, 55.6%로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행정가 집단과 문제 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이하와 50대는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40대와 50대는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9.331^{***}$).

다음은 동일 상황이라 제공받은 금액을 체육팀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했을 경우의 문제의식(문항3)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43.8%가 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은 23.6%가 응답한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 이었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보는 경우는 18.2%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응답률도 13.3% 나타났다.

▶▶▶ [표 3-87]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체육팀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37	18.2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89	43.8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48	23.6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27	13.3
모름/무응답	2	1.0
계	203	100.0

그러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1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집단의 특성과 관계없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답하여 연령의 경우 집단 간 응답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hi^2=72.969^{***}$), 그 외의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예시3에 관한 인식 분석

예시3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4대약'으로 제시된 승부조작, 입시 비리와 관련된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체육계 부패는 조직사유화, 편파판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체육특기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입시 부정, 승부조작은 1970년대부터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하여 대학이 정원 내에서 우수한 엘리트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인 체육특기자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와 주무부처의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당수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체육특기자의 입시부정 등 학교스포츠의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특히 대학입학과 관련된 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김대회, 2013).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이해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

해 질문하였다. 시나리오는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선수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상대팀 지도자에게 주전이 아닌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낼 것으로 부탁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1은 '이러한 상황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고, 문항2는 '이 예시에서 B팀 지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문항3은 '이 예시에서 A팀 감독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문항1, 2, 3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1번='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2번='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3번='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4번='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의 4개 범주로 제시하였다.

A고등학교 ○○운동부는 올해 이미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B고등학교팀은 한 번도 전국대회에서 상위에 오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를 A팀과 앞두고 있고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3위에 오른다. 그리고 3위에 올라야만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B고등학교팀의 지도자는 자신의 대학 후배인 A고등학교 감독에게 은밀하게 부탁하였고 A고등학교 감독은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여 결국 B팀이 승리하였다.

먼저 이러한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하는가(문항1)에 대해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6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사전 모의를 통해 경기력이 낮은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27.1%로 높았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도 5.9%가 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3%만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이라고 하여 응답자의 대다수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88]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130	64.0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55	27.1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12	5.9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6	3.0
모름/무응답	203	100.0
계	203	100.0

이러한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와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그리고 20대 이해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60세 이상의 집단은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연령에 따른 응답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3.985^{***}$).

다음은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팀의 선수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후배인 상대팀 지도자에게 비주전선수를 시합에 출전시켜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합을 하고 승리를 얻어낸 감독의 행위에 관한 문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문항 2). 그 결과 58.6%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33.5%가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3.4%가 응답하였고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이라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 [표 3-89] 위 예시에서 B팀 지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119	58.6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68	33.5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7	3.4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1	0.5
모름/무응답	8	3.9
계	203	100.0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모든 집단에서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집단에서만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chi^2=193.956^{***}$).

반면 운동 선배로부터 은밀하게 주전선수가 아닌 비주전선수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행한 지도자 A의 행동에 대한 문제 인식 수준(문항3)을 조사한 결과 58.1%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도 33.5%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이라는 응답은 0.5%에 지나지 않아 응답자의 대부분은 선배의 부탁을 받고 승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해준 A감독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90] 위 예시에서 A팀 감독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	118	58.1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68	33.5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	8	3.9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됨	1	0.5
모름/무응답	8	3.9
계	203	100.0

A감독의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선수, 지도자, 행정가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에 대해 각각 47.1%, 56.1%, 6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심판 집단의 경우 55.6%가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범주로 나타났다.

제8절 | 체육계 부패 및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스포츠계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시스템의 인식 및 실효성, 스포츠계 부패행위의 신고, 적발 및 처벌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 행정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별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요약하고 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크게 부패에 관한 인식과 반부패 시스템에 관한 인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때 다시 부패에 관한 인식은 체육계 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와 체육계 현장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구분, 이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체육계 단체와 체육계 현장의 부패를 다시 전반적 인식 수준과 소속단체 또는 팀과 관련한 인식 수준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반면 반부패 시스템의 경우 신고, 적발, 처벌에 관한 인식과 과거와 현재의 제도에 관한 인식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부패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판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질문의 수준을 체육단체와 체육 현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할 이유는 스포츠 부패의 특성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사실 스포츠분야에서의 부패행위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부정 부패가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야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도 아니다. 또한 스포츠에서의 부정부패는 민간부패로서뿐만 아니라 스포츠경기의 당사자, 조직의 이해관계자 등 스포츠 환경을 둘러싼 모든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서희진, 2019). 그러므로 스포츠 부패는 국가별, 상황별 차이, 그리고 환경적 맥락과 종목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김기탁, 2018)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동일한 부패 행위에 대하여 먼저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2차적으로 소속팀이나 단체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1. 체육계 전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결과

가. 체육계 전반_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체육계 전반의 부패 심각성의 경우 7점 만점에 평균 5.15점으로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비교하면 행정가가 5.46점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도자, 선수, 심판 순서로 나타났다.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대한 심각성 평가 결과는 스포츠계의 솔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계 현장의 구성원들은 현재 활동 영역에 관계없이 부패가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체육계 전반_체육단체의 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체육계 전반의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분석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가 평균 5.3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계 전반의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1순위도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모든 집단에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행정가 집단의 경우 이에 대한 응답률이 59.0%로 집단별 응답 수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⁵¹⁾ 선수 경험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행정가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도 이 사안을 가장 심각한 부패의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결정권자 개인의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은 대표적인 스포츠계 조직사유화 문제이다. 스포츠계 조직사유화란 구성원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특

51) 각 종목 단체의 사무처장과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신임 회장이 구성된 이사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회장이 선임한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강창금, 2021.6.10. ‘대한공도협회에서 벌어진 조직사유화 논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98840.html).

정인이 자신의 이득, 혈연, 인맥 등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여러 비리 중에서도 조직사유화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4대약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415건 중 조직사유화에 관한 사례가 27.2%(1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문화체육관광부, 2016),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 센터의 2019년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종류는 조직사유화로 나타났다.⁵²⁾ 조직사유화와 관련하여 체육계의 자정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0월 ‘체육단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임원 중임 1회 허용, 동일학교 출신자 임원 비율 제한, 심판 공정성 확보 등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고 2014년 2월 3일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개설, 2014년 2월 3일 스포츠3.0위원회 및 2014년 2월 11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24일에는 스포츠 비리 근절에 관한 중요 제보 신고자에게 100-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하였다.⁵³⁾ 그러나 이러한 자정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직사유화는 체육계의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컬링 메달리스트의 문제제기로 2019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결과를 보면 2010년 이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는 정당한 절차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 해외에 파견하는 행위, 의식컬링센터를 개인 사유화로 활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관련자 수사의뢰 6명, 징계요구 28명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⁵⁴⁾ 특히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최숙현 선수 역시 소속팀이었던 경주

5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보도한 ‘최근 3년간 클린스포츠센터 민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45건이며 이중 조직사유화는 235건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 2019.10.15. ‘2019국감,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민원, 조직사유화가 최다, 뉴스핌).

5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는 2014년 3월 10일 ‘체육계 비리 근절의 중심,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TF)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더불어 TF를 통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3월 10일 보도자료), 2014년 3월 24일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를 통해 포상금지급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3월 24일 보도자료).

시청의 감독, 주장, 팀닥터 등에 의한 사유화의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체육계의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의 응답자들이 활동영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비율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을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며 동시에 조직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포츠계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 체육계 전반_체육계 현장의 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전반적으로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유형별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 정도'가 평균 점수 5.0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이 평균 4.89점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선수 경험이 없거나 심판, 또는 행정가로 활동하는 집단이 선수 경험이 있는 집단, 혹은 현재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보다 체육계 현장의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스포츠 장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정당화 측면에서, 즉 어떤 행동의 일탈성 여부는 행동을 평가하고 규범을 부여하는 준거집단에 달려있다는 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하위문화나 특정 조직 내 구성원에게는 외부인에게 일탈로 보여지는 것이 '허용된 일탈'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특정 행위의 경우 일탈이 아니라고 느끼고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실제 현실보다 과장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가.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_전반적인 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행위의 심각성의 경우 7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나타나 평균 5.15점을 보인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의 심각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다른 응답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54) 관련 내용은 2019.2.21.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특정감사 결과 발표의 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8438>).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응답 대상자 본인이 소속된 체육단체나 팀의 부패에 상대적으로 체육계 전반보다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수 집단의 경우, 지도자 집단의 경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행정가나 심판보다 상대적으로 심각성의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_체육단체 관련 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분석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부패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응답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가 평균 점수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유형별 부패행위에 관한 심각성 인식 조사와도 동일하다. 즉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에서도, 혹은 소속된 체육단체나 팀에서도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를 가장 심각한 부패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에 관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소속 체육단체나 팀과 관련한 부패행위 유형보다 다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의 경우 체육단체 전반에 걸친 심각성의 평균 점수는 5.39이지만,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과 관련된 심각성의 평균 점수는 1.16정도 낮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집단 간 차이도 살펴보았다. 선수의 경우 41.2%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지도자 집단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4%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여 선수 집단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행정가 집단의 경우 53.8% 수준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의 경우 20대에는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32.1%에 그쳤으나 30대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3.3%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20대와 30대의 소속 팀과 단체와 관련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이하 응답자는 소속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이 타 연령대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_체육계 현장 관련 부패 심각성에 관한 인식 분석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체육계 현장과 관련한 유형별 부패행위와 관련한 심각성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이 4.05점으로 2순위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체육계 현장과 관련한 유형별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수 및 지도자의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을 1순위로,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즉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체육계 현장과 관련된 유형별 부패행위와 심각성을 느끼는 분야는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점수차이는 나타났다.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정도의 심각성'은 체육계 전반적인 수준에서 평균 5.1점이 나왔지만 소속된 기관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4.34점으로 낮아졌다. '선수, 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역시 체육계 전반의 경우 4.89점으로 나타났지만 소속기관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4.05점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인 체육계 현장보다 소속집단에 대한 청렴성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3.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적발·처벌

가. 신고에 대한 분석

신고의 효과성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2.9%가 신고의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35.3%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답변의 대부분인 23.5%를 차지하고 있고,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는 각각 5.9% 정도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효과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는 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했던 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82개의 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신고했다는 응답률이 25.9%를 보여 이들 단체에 가장 많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속기관 16.1%,

스포츠윤리센터 13.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 경험이 아닌 신고의 일반적 효과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3.7%가 신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답변을 조금 정리해보면, '누군가의 신고행위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자의 53.7%는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고했던 경험자의 52.9%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한 1,2 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집단 간, 선수 경험 간, 연령 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39.4%의 응답률을 보여 1, 2순위를 합쳐 가장 높은 응답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활동 영역의 경우 심판 집단만 유일하게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에 대해 절반이 넘는 5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선수 경험 유무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선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를, 선수 경험이 없는 경우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신고 저하 요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본 경우 20대 집단의 경우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가 3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을 종합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면서 스포츠 분야 비리 신고 및 상담 창구가 스포츠윤리센터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창구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스포츠단체 내부가 아닌 독립된 단체에서 스포츠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여 미온적이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관련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으나, 박상현(2020)은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계층 및 대상, 소속 단체 및 종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 대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연구는 결국 체육계 행위에 대한 신고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종목 및 피해자의 특성의 이해에 기반한 명확한 증거 확보, 체육계의 인맥을 이용한 권력적 개입이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조사가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범죄는 같은 팀에 소속된 당사자 사이의 권력 관계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조치가 필요(남기연, 유소미, 2020)할 것이다.

나. 적발에 대한 분석

체육계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4.0%로 나타난 반면 적발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3%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적발에 대해 회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태린, 권관배, 김창우(2016)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조직사유화에서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조직 구조상 조직사유화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포츠계 부패행위인 대학 입시비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관련 사안이 학부모, 대학 및 고등학교 코치 간에 담합 하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공범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덮여지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태룡, 2011). 다시 말해 체육계의 파벌주의, 인맥주의, 학력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외부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으며 만약 드러나더라도 관계자들의 은폐에 의해 무마되기가 쉽다. 또한 편파판정이나 승부조작의 경우는 종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를 하더라도, 즉 적발이 되더라도 이를 부패행위로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⁵⁵⁾

55) 2020년 10월 29일 OK금융그룹 배구단이 고의 패배를 시도했다는 신고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OK금융그룹 배구단이 해당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승부조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2020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경찰은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면서 4곳에 감정을 맡겨 해당 경기의 선수 기용, 경기 내용 등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전문기관 4곳 모두 해당 경기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오지혜, 2021.9.30. '경찰, OK금융그룹 배구단 고의패배 시도 무혐의 결론',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20060000449?did=NA>).

다. 체육계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분석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처벌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0%로 전혀 없었고, 13.8%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스포츠 현장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체육계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시스템과 관련한 엄격한 처벌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남기연, 김대희(2016)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선수, 경기지도자, 심판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의 개인책임을 묻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속 구단이나 연맹 또는 협회와 같은 스포츠 단체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에 찾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체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데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응답한 1,2순위를 합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증거 확보 등 진실규명의 어려움' 42.9%, '사건 처리시스템의 부실' 42.4%,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 29.1%, 순이었고 '성적 지상주의'가 23.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다만 심판의 경우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직적 옹호'보다 '사건처리 시스템의 부실', '법률이나 규칙의 부재 혹은 결함', '성적지상주의'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체육계의 부패와 관련된 신고, 적발, 처벌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53.7%가 '그렇다'라고 하였고, 적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13.3%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처벌에 대해서는 13.7%가 '그렇다'라고 하여 응답자들은 적발과 처벌의 효과에 대해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처벌의 효과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은 결국 신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공정한 처벌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4. 체육계 반부패제도에 관한 분석

가. 체육계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2020년 8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각종 단체의 신고 기능이 통합, 일원화되었다(남기연, 유소미, 2020). 따라서 새로운 신고, 조사, 상담 및 피해자지원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하여 체육계 내의 부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인지 여부와 효과성에 관한 인지 수준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스포츠 윤리센터와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36.5%, 34.0%가 '조금 안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에 대해 각각 40.4%, 34.5%, 44.8%, 35.0%가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신설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이할 점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하여 선수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52.9%로 안다고 응답한 47.1%보다 높았고, 선수를 제외한 지도자, 심판, 행정가 집단은 각각 64.6%, 55.6%, 70.5%가 '안다'라고 응답하며 '모른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담, 신고, 조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전담기구에 대해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그 외 심판, 지도자, 행정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곧 선수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이다.

나. 체육계 반부패제도 효과에 관한 인식 분석

체육계 반부패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세한 수준에서 '있다'라는 응답률이 '없다'라는 응답률보다 제시된 6개의 제도적 기관에서 동일하게 높았다. 즉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51.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경우 59.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

권특별조사단의 경우 56.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라는 응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45.0%가 '효과가 없다'라고 답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경우 38.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경우 37.1%만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여 응답자들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그간의 체육계 제도적 장치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되었음에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제도적 장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체육계 부패와 비리 근절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분석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체육계 비리, 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비리, 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기타의 6개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1순위와 2순위의 답변을 소속 집단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이 60.6%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지도자, 심판, 스포츠 행정가 집단 역시 각각 54.9%, 55.6%, 73.1%로 동일하게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다. 선수 집단의 경우 이와는 달리 64.7%가 '예방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계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소위 솜방망이 처벌, 보여주기 식 처벌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등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양형을 분석한 이현정(2015)은 이러한 승부조작 사건들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보며 승부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제 4 장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이윤영 · 황지태

제4장

스포츠계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제1절 | 심층면접의 대상과 방법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제3장의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면접의 방법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스포츠계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되,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현 코로나 전염병 위기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인원을 선정할 수 없었으며, 선수 2인, 지도자 2인, 심판 1인, 스포츠행정가 2인 등 총 일곱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남성은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여성이다. 연령대로는 20대가 2명, 30대가 2명, 40대가 3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체육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토대로 한 것이다. 면접에는 7일이 소요되었고, 대상자들의 근무지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며, 각각의 인터뷰는 2021년 7월 15일, 16일, 19일, 20일, 22일, 25일, 26일에 실시되었다. 면접 내용은 피면접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하였고, 그 내용은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1차 기록물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다음 절에서 제시할 심층면접 내용은 그 기본적인 골격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 녹취록을 다시 한 번 가공한 후에, 최종적으로 각 피면접자들의 추가적인

서면 수정과 삭제를 거친 것이다. 최종 가공의 원칙은 ① 특정 개인의 성명의 익명화, ② 특정 단체의 명칭의 익명화, ③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인들의 최소화, ④ 본 연구의 주제와 크게 상관없는 내용(분위기 전환용 질문과 답변, 농담 등)의 삭제, ⑤ 부정확한 표현, 지나친 비속어, 개인의 습관적인 반복 표현 단어나 구문에 대한 교정 혹은 삭제, ⑥ 앞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가공된 내용에 대한 각 피면접자들의 최종적인 수정과 삭제 등이다. 또한 ⑦ 인터뷰 내용 중 면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스포츠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어서 줄이거나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패문제든 인권침해문제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남겨두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공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층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피면접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본고에 수록된 심층면접 내용이 체육계 전체의 의견을 오롯이 대변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기 바란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광대한 우리나라 체육계 내부의 목소리들 중 일부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소중한 목소리들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한다.

제2절 | 선수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대인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Q]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종목을 14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중략).. 제대로 된 시합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년체전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은메달 따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도 이제 팀, 선수생활하고 기숙사도 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합숙,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Q] □□종목 선수는 대학갈 때, 감독이 먼저 스카우트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친분이 돼서 부탁으로도 애 좀 받아줘라.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 학교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Q] 기준이 있어요? 대회에서 몇 등 안에 한 번은 들어가야 한다든지.

네, 이 대학교에 가려면 전국대회 금메달 세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아니면 또 다른 학교는 금메달 두 개 있어야 한다. 이런 학교도 많아요.

[Q]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춘 와중에 감독님이 스카우트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체육교육학과가 있고, 보안 관련학과가 있고, 스포츠과학 관련학과 등이 있는 경우, 체육교육학과에 오려면 금메달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Q] 그러면 감독님이 학교에 오라고 제안하면, 과는 선수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먼저 되는 애가 체육교육학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보안관련학과 등의 (순서로 풀라서 들어갑니다.)

[Q] 체육인으로서, 체육계에서 이런 건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체벌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체벌과 관련되는 인터뷰내용이 있으나, 체벌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아니라서 이와 관련된 이하의 인터뷰 내용들은 실지 않았다.)

[Q] 운동하시면서 이걸 좀 문제다,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심판이요. 저는 운동하면서, 심판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Q] 예를 한 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다른 학교와 제가 붙는다는 가정 하에, 저희 선생님이 아는, 친분이 있는 심판이 들어오면, ○○○○하는 게 경고를 받아야 하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반칙인) ○○○○하면 유리하니까요. (중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감점을 많이 안 주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 상대편 코치님하고 저를 봐주는 심판님이 친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불리하겠지요.)

[Q]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많이 그래요.

[Q] □□종목은 심판의 영향이 게임 중에 많이 있나요?

네. 많아요.

[Q] 그 이유가 뭘까요? 심판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는 코치가 들어왔으니까, 이기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Q] 소위 인맥, 이런 건가요?

네. 인맥 맞는 것 같아요.

[Q] 그러면 코치님이 심판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부탁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경기를 뛰고 나면 다 알아요.

[Q] 그러면 심판이 알아서?

네, 알아서. 몰래몰래. 제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경고 많이 주고.

[Q] 왜 심판은 그런 걸 할까요?

나와서 따로 뭘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사례를. 밥을 한 번 더 사준다든가. (중략) 그래서 소통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중략) 심판이 코치님한테 먼저 눈을 마주치면 알아서 진행을 하고, 경기를 이기게 만든 다음에, 나와서 뒤편으로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Q] 어떤 종목에서는 심판에게 노골적으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속한) □□종목계에도 아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Q]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수한테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치님, 심판님들 둘이 알아서 눈 마주쳐서 그런 경우만 많은 것 같아요.

[Q] 아무튼 선수들은 그 문제를 느끼는 거잖아요. 왜 표현을 못 하죠?

그래도 나의 지도자고 아니까...

[Q] 그러면 표현을 대부분 안 하겠네요.

거의 안 해요. '아 이렇게 해서 졌구나'하고 삼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던 적 많아요.

[Q] 그러면 그런 거에서 혹시 신고를 한 학생이나 선수 본 적 있어요?

(제가 속한) □□종목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Q] 신고는 안 하더라도,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은 '다시 하기'게임이 없어요. 내가 해서 재경기를 해라. 이런 게 없어요.

[Q] 근데 왜 적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적발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재경기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Q] 만약에 적발된 걸 처벌을 할 수 있다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게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큰일을 안 만드는 게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은 신고를 하면은 코치님이 잘린다든가, 심판이 정지를 먹는다는 거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벌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Q] 처벌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공정하길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 한 명이 총책임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종목계에는. 전국대회를 뛰게 되면 대한□□종목회에서 열리거든요? 대한□□종목회 회장님이 힘이 있는데, 그 신고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전 경기를 없애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Q]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저도 □□종목계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Q] 그러면 지금 소속과 대한□□종목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선수 등록만 하고,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선수등록 하고, 또 한 번씩 증명서 같은 거 받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어있어요.

[Q] 그러면 대한체육회랑 선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네, 별로.

[Q] 그럼 주로 소통하는 게?

○○지역 □□종목 협회.

[Q] 거기랑은 어떤 소통을 해요?

거기에 전국 이사님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 열릴 때 합숙하게 되면, 그 분이 합숙을 만들어 주시고, 돈도 다 해주시고 하나까.

[Q] ○○지역 □□종목 협회는 투명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회장님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하고, 돈 같은 것도 자기한테 안 들어오게 하고, 예산 남는 만큼 다 지원도 해주시고, 2020년까지 ○○지역 □□종목 협회는 별로.

[Q] 그런 거는 선수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잘 들려요. 지나가는 소문에 잘 들려요. 제가 직접 보고 이런 건 못하는데, 감독님, 선생님도 한 번씩 말을 해주시는 거 보면. "너희도 ○○지역 □□종목 협회에서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지? 예산은 남는데 우리한테 안 주는 거 같지?" 하고 한 번씩 말씀해 주셔요.

[Q] 그럼 느끼기에도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Q] 가장 크게는 어떤 차이점을 느껴요?

선수들이 ○○지역 대표가 되면 합숙 같은 걸 하기 싫어해요. 체전 열리면 나가기 전에 1-2주일 정도 하는 걸 좋아(합니다.) 8월부터 두 달 남은 체전을 소속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자 운동하고 있는데 주말에 불러가지고, 금, 토, 일 호출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에도 되게 불만이 많았었고. 합숙을 시킬 거면 월-금 시키고 주말에 쉬게 해야 하는데, 왜 토, 일 부르냐고, 이진 지도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전 ○○지역 □□종목 협회에서는 많이 고집이 세서 가지고...

[Q] 그렇게 □□종목 협회에서 불러서 일부러 더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체전 나가서 무조건 일등 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Q] 근데 선수들도 그게 부당하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느꼈을 거예요 아마. 몇 십 명의 선수들이.

[Q] □□종목 시합 한 번 하면, 보통 소속팀에서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오고 그러죠?

네, 맞아요.

[Q] 그러면 그 예산은 소속팀이 ○○지역 체육회랑 이렇게?

네, 많이 지원해주세요.

[Q] 선수 입장에서는 별도로 운동 외에는 크게 준비할 건 없겠네요?

네, 체중 조절도 안 해도 되고. 소속팀에서 스케줄대로 운동하고 시합 나가고.

[Q] 대한□□종목협회는 선수들 복지에 신경을 써 주나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한□□종목협회 지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Q] 어떤 면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대회 날짜가 나오면 날짜에 맞춰서 살을 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빼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공지를 빨리 띄워주세요.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도. 대진표도.

[Q]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기록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Q] 간단하게 운동에 대한 백그라운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기록종목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됩니다.)

[Q] 현재 OO에 소속 현역 선수이시죠? OO과, 기록종목협회, 대한체육회가 있으면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OO(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Q] 종목협회는 어느 정도예요? 대한체육회는요?

(둘 다) 딱히 영향받지는 않아요.

[Q] 사실 종목협회와 대한체육회도 선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건가요)?

네.

[Q] OO과 선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OO에서 연봉 같은 거 측정하고 그러죠. 장비나 지원 같은 거 시청에서 해(줍니다).

[Q] OO에 들어갈 때는 감독님이 뽑나요?

네, 감독님이.

[Q] 감독님이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그리고 연봉 같은 거 책정할 때는 OO. 이제 보고 같은 거 드리는 거는 시청한테.

[Q] 계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속 이런 거는 시 관계자랑 직접 일하기도 해요?

그냥 뭐, 연봉 사인이나 그런 거 할 때만 간간이 마주치고 잘...

[Q] 운동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Q]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팀이 현재 ○○이니까, 시의 영향이 크겠지요?

네

[Q] 체육인 입장에서 현재 체육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등수에만 연연하니까. 그래서 즐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Q] 등수에만 연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연봉이 많이 좌지우지되니까.

[Q] 혹시 승부가 공정하지 않다.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 이런 경험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선발전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떤 선배보다 더 한 등수가 높았는데, 제가 못 가고 다른 선배가 갔거든요. 저보다 등수 낮았던 사람이.

[Q]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코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선배가 나갔던 것 같아요.

[Q] 코치님이 힘이 없으면, 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대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코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다.”

[Q] 선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억울했죠.

[Q] 기록이 나오는 경기 아닌가요? 코치님이 힘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연맹 같은 데서 하라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딱히 연맹에... 딱히 입장을 잘 안 내세우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잘못된 게 있어도.

[Q] 기록경기임에도 힘 있는 코치의 선수를 밀어줬다 이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Q] 왜요?

지금 저희 감독님도 딱히 힘이 없으신 분인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Q] 지도자 선생님이 어떤 연맹이나 이런 데서 목소리를 크게 안 내서 출전 선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거죠? 다른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몇몇 제가 말한 사람들만?

[Q] 나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Q] 그래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네.

[Q] 그러면 경기장에서는 어때요? 웬지 상대방 선수를 더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Q] 단체 종목 같은 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부모들이 돈을 조금씩 걸어서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Q] 지금 실업팀이니까 지금도 그런 건 없겠네요?

네.

[Q] 지금은 선수가 생각하기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혹시 신고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 못 했고요, OO 2년차 있었을 때는 <<선배랑 그런 생각을 했었죠.

[Q]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선배들도 항상 그랬었고. 맞고, 욕먹고 이런 게 매일매일 맞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못 했어요. 선수들은 그래야 되는구나.

[Q] 위계질서가 센 편인가요, 종목이?

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Q] ○○에 있었을 때는, 너무 심해서?

(중략) 국가대표 훈련을 하면서, 같이 간 선배가, ○○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시켜 줘가지고 그때부터 “신고해야겠다.” 결심했던 것 같아요.

[Q] ○○○선수가 신고를 여기저기 다 했죠? 근데 어디서도 도와주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냥 “증거를 더 달라.”

[Q]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워낙 ○○에서 ㅈㅈㅈㅈ이 힘이 세기도 했고.

[Q]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직접 안 했을 때, 적발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그럴 가능성은 없었어요?

○○에서는 사실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알면서도 쉬쉬하는.

[Q] 왜 쉬쉬했을까요?

성적이 나니까?

[Q] 적발이라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알면서 모르는 척했으니까.

[Q] (중략) 처벌이라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 같아요?

무마할 것 같아요.

[Q] 왜요?

그것도 성적이 나오니까.

[Q] 근데 궁금한 게,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Q] 그건 지도자의 생각인가요?

지도자와 ○○?

[Q] ○○하고 협회랑은 관계가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Q] 근데 ○○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듣기는 했는데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Q] 특이하기는 하네요. ○○에서 그런 거 때문에 무마시킨다는 게, 결국은 처벌도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성적을 위해 또 무마할 것 같아서?

네

[Q]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그때 당시에 경험했다면, 신고를 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근데 만약 그때 신고를 했다면 증거를 다 모아서 했을 것 같아요.

[Q]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할 생각은 있고요?

그때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근데, 뒷감당하기가 좀 무서웠어요. 그게 흐지부지 하게 끝나면. 그 팀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Q] 흐지부지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네

[Q]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현역일 때는 신고를 잘 못하죠?

보복도 그렇고, 소속도...

[Q]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들어봤어요?

네

[Q] 거기는 독립적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때요? 선수들은 그런 기관을 믿나요?

무슨 기관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선수들이 어떤 기관이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딱히 신고할 기관을 잘 못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Q] 사실상 신고를 해도, 제일 신고를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익명으로 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 자기가 드러나서 흐지부지됐을 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흐지부지되고, 다 알려지고, 보복이 있고 그럴까?

뭐 아무래도, 감독님보다는 자기가 을이잖아요. 선수니까.

[Q] 그래서 그걸 알더라도 우리 편을 안 들어준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면 감독님하고 나중에 뭐 다른 팀 계약하거나 그럴 때도 안 좋은 이미지로... 다른 감독님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Q] 선수 입장에서 제일 갑인 존재가 감독이네? 감독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나요?

거의 연봉 같은 거 측정할 때도 감독님이랑 가는 것도 있고, 장비나 이런 것도 감독님이랑 합의하에 ○○에서 해 주시고 이러니까.

[Q] 혹시 뭐 장비를 사라고 강요한다든지, 반대로,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장비를 빙땅 쳐가지고, 그게 또 고소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Q] 크게 금전적인 거나 이런 문제는?

금전은 ○○에 있었을 때는 그랬고, ○○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Q] 그럼 선수 입장에서 체육계에 이 문제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그냥 선수들이 너무 등수에만 목매는... (그런 시스템이죠.)

[Q] 잘 하는 선수 못 하는 선수 다 비슷한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다 부담스럽고?

네.

[Q] 운동을 하다가 은퇴하면 지도자도 하고 코치도 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어떤 신고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도자나 코치, 심판을 하는 데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나요? 아니면 아예 그건 별개예요?

음...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Q] 그러면 문제를 다 떠나서, 지금 선수니까 제일 중요한 나의 목표나 이긴 뭐예요?

전국체전. 거기도 연봉이 책정되니까.

[Q] 그죠. 그럼 실업 선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이 종목과 상관없이 중요한, 가장 큰 목표고 그런 거겠네요?

네.

[Q]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순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전국체전이나 대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 전국체전에 몰빵하는 것보다, 다른 시험도 합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Q] 체육계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냥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소통 같은 거?

[Q]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뭘,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혹시 저희가 뭐 비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Q] 선수 사이에서 비리면 될까요?

음... 차별? 차별 대우? (중략) 등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도 연봉은 비슷하거나.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중략) 저희 연봉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내가 얼마 줄게" 이러면 그게 책정되는 거거든요.

[Q] 협상이란 건 없어요?

있긴 한데, 제가 전국체전에서 지금 같이 있는 선수들이랑 한 20등 정도 차이나요. 근데 연봉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Q] 선수가 팀을 찾아서 갈 수는 없어요? 꼭 감독이 오피(offer)해야 돼요?

찾아갈 수는 있는데, 감독님이 갑이다 보니까 좀 따지는 게 더 많다고 해야 되나?

[Q] 감독님이 갑인 시스템을 만약에 좀 보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선수가 있어야지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갑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Q]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문제를 좀 정리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선생님처럼 선수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좀 협회나 그런 데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충고 같은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Q] 감사합니다.

제3절 | 지도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개인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Q] 간단하게 스포츠 경력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종목에 했수로는 한 30년째 몸담고 있고요. 선수 생활 13년 하고 코치 생활은 현재까지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취미생들과 선수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Q] ●●종목에서 심판의 판정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비리가 있기도 한가요?

(중략).. 저도 들은 얘기고요. 제 스승님 계셨던 시절에는 시합 때 로비를 하는 해당 선수가 출전하면 관중석에 그 (선수) 후원했던 분들이 짝 들어오세요. 그러면 심판이 (그쪽을) 딱 보고 '아, 애구나' (판단했대요). 이렇게 그 아이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었고요. 실제 제가 겪은 것은 시합 끝나고 코치 선생님이 조그만 캐리어 같은 것을 주세요. 거기에 와인인 뿔든 뭐가 뿔든 들어 있는데, 저 심판한테 드리고 와! (그런 식으로) 제 얼굴을 알리면서 선물을 주고 오죠.

[Q] 그럼 대부분 받아요?

보통은 다 받았어요. 되게 반갑게. ..(중략).. ■■■이라고 해서 이제 점수를 최종 결정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마지막에 심판들이 점수를 정하고 나면 '그래 이 점수로 내보내도 돼'라고 결정을 하는 분이 ■■■심판인데 그분한테 보통 (드리죠)...

[Q] 스포츠계가 종목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스포츠 비리나 부정·부패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매너리즘이에요. ●●종목은 워낙에 선수층이 얇았었고 기득권이 워낙에 우세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Q]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팀 운동은 아니고 개인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잘 하는 선수를 데리고 있는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몰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 선생님들은 유독 서울에 집중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이제 네임 벨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선생님의 라인을 어떻게 땀느냐에 따라서도 그다음 패턴이 항상 정해졌었어요.

[Q]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으로만 생각하자면 학연 지연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로 인해 파생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었고 선생 헤드 코치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라인을 타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룰을 그 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였었을 테지만 그 라인을 부득이하게 못 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경우도 사실 많이 존재했어요.

[Q] 아직도 그런가요?

좀 있어요.

[Q] 각자가 그 라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략) 근데 그 공개 채용에서 들어온 사람이 정말 얌전해서 잘 조용히 지내면 괜찮지만 실력을 좀 인정받아서 아이들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그 집 라인에서 선생님을 그냥 파버려요. (후략)

[Q] (중략) 그냥 실력이 좋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뭘까요?

자기한테 복종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써먹어도 되겠냐?' 이런 식의 목적. 이제 그런 때 내가 너를 여기다 쫓았으니까 '네가 여기서 알아서 ■■을 좀 잡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넣어줘.' 이런 강요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Q] 그 라인은 끝까지 거의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걸 라인을 갈아탄다거나.

갈아타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쨌든 세가 물리는 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처음에 선수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은퇴는 이 선생님한테 꼭 해야 해 막 이런. 그 라인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Q] 이 선생님한테 꼭 은퇴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코치를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선택을 한다면 뭐 이 선생님 라인을 타서 서브 코치라도 하고 있었어야 인지도가 좀. '아 애 누구한테 배웠대' 이러면 일단은 뒷말이 좀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Q] 근데 뒷말은 진짜 체육계의 공통언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피해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회원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뒷얘기가 나올 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닌 거 알아. 아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 씻고 나온 경우죠. (후략)

[Q] 코치 선발이나 선수 선발도 그렇게 결합이 되나요?

코치나 선수 선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코치 중에서도 지도자 자격증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제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연으로 인해서 시험 때 불이익을 겪고 이런 거는 요즘엔 좀 덜한 편이에요.

[Q] (중략) 적발도 쉽지가 않겠네요?

학부모 같은 분들이 외부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 아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안이 결정이 되는 거지 선생님들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은 그냥 보통 거의 다 참고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상황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갈까 이런 상황을 사실 걱정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보통 못하죠.

[Q] 적발시 처벌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처벌은 좀 공정하게 나오나요?

처벌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학연 지연으로 이어져 있으면 보통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야, 너 왜 그랬어. 좀 오버하지 말고 조금만 자제해.' 이라고 끝나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공식적으로 무슨 공고가 나온단든지 그러지 않고요. 이제 신고를 한 담당 선생님이 있거나 그럼 그 선생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생님은 활동을 자꾸 제한한다든지. 그 선생님이 이쪽 선생님이 안 하는 무언가 행동을 이 선생님이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닥에서 약간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뉴스에도 간간히 그런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보통 이제 막 다른 운동에 관여 없었던 사람들은 "아이구, 재네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한 사람. 큰일 났다 이렇게 크게 나오면 저 신고한 사람은 영원히 묻힐 텐데 이 바닥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Q]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날까요?

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Q] 왜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미 그들끼리 너무 끈끈하고요.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쫓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난 이 바닥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너무나 이렇게 끈끈하고 이미 다 교류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결계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Q] 사실상 뭐 회장이 바뀌건 이런 것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신진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쪽에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관리자가 두 번이 바뀌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고요.

[Q] 그분들은 뭘 믿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관리자는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어 난 안 잘려 이렇게 되는 거죠.

[Q]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계속 켜켜이 쌓아 놓는 거죠. 이 장벽이 두꺼워지니까 누가 외부에서 하나,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면 이 사람은 팀장은 뒤에서 멀리. 지켜만 봐도 40명 50명이 이 사람을 공격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Q] 그게 또 통하는 거고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통해 왔고 그들끼리는 그냥 암암리에 그걸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항상 지내왔었으니까. 그거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코치 아예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많이 나왔고요. 저는 계속 코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Q] 결국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거나 조용히 남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 이 바닥에서 잘 계속. 어차피 계속 있을 거라면. 수궁을 하고 살거나 아니면 빨리 떠나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Q] 조금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요. 네 마이웨이로 가는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라인을 탄 선생님이 전화를 해야만 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공개 채용도 하고 하나까 ..(중략).. 이미 들어왔으니까 입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후략)..

[Q] 그러면 사실 바뀌기는 쉽지 않겠네요.

바뀌는 건 천지개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Q] 그러면 이런 문화를 흑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엄청 커지긴 했었고 국민 청원을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어떤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되게 강압적인데 그렇다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막 이거를 좀 약간 유하게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신문고 같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감히 하겠어요. 예전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서면 상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회사 팩스로 들어올 땐 실명이 공개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실명이 공개되기 시작해서 '이게 누구야. 누구 앞 후보지? 그러다 이 선생님은 누구야?' 또 이렇게 역학 조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은 물의를 일으킨 선생님이 된 거죠. 서면 상으로도 민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Q]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그런 만약에 그렇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물어보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명예훼손으로 막 너무 다른 선생님의 고유의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가서 써버리고 이런 경우도 무단으로 써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문힐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할 수 없는 거죠.

[Q]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원을 아무리 제기를 해도. '예 저희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안에는 문제가 엄청 커졌는데 이거를 체육계. 어떤 기관이든 다 민원 제기를 해봐도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달 지나고 연락이 오면 여기는 이미 여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이 이미 파지고 없어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내려오면 뭐 해요. '감사를 보냈습니다.' 통보를 하면 뭐해요? 어차피 끝났는데. 얘기가 불거지기 전에 이것을 다 예상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여기다 이미 민원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Q] (중략) 혹시 스포츠윤리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Q] 혹시 추후에라도. 뭐 부정·부패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신고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벌써 이렇게 17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혈기 왕성하게 '내가 이 판을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국민신문고에도 보내보고 대한체육회도 보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저만 계속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저의 미래보다 이제 제 자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팀을 떠나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Q] 맞아요. 최근에도 고등학교 하키 팀을 아예 없애 버리더라고요. 문제 생기니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네 그냥 그거를 없애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끝이지. 개선은 없어요. 보통 공무원의 행정 방식이 그런 거 같아요.

[Q] 스포츠 윤리센터가 혁신적으로 해보겠다고 출범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쓸모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분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그 상황들을 계속 몸으로 몸소 직접 느끼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할 것이며, 다수의 얘기가 들어갈 뿐이지.

[Q] ●●종목은 대학 가는 것도 선생님의 힘이 크게 작용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학 가는 거는 사실 뽑아주는 데도 거의 없고요. 뽑아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를 달지 않으면 그냥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는...

[Q] 그냥 체육학과로 대학 가고 싶으면 진학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중학생 때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어요. 선수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중학생 때 보통 다 접어버리고 공부를 시작하죠.

[Q] 현실적으로 입시 부정 같은 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한 발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계에서도 정말 국민청원 같이 개방적으로 아무나 글을 막 올릴 수 있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명 공개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그냥 일반 수강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어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막 들어오는 후배들도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후배들이 코로나에 너무 힘들어요. 직업을 바꾸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온 일생을 다 이 안에 갇혀가지고 했는데 직업을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꾼 거죠. 쿠팡맨이나 단역 배우, 엑스트라 알바,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는 선배의 대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기득권 세력들이 조금은 개선을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을 어떻게 찾으시면 좋을까요?

2. 단체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Q] 먼저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프로선수 생활을 한 10년 했고요. 지도자 경력은 한 5년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그냥 가볍게.. (중략).. 스포츠비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승부조작 같은 것. 심판들한테 뒷돈 주는 거.. (중략).. 대학 입시.. (중략)..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요?

[Q] 스포츠계의 부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연 지연. 자기네들끼리 푹푹 뭉치는 거?

[Q] 간단하게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만약 지도자 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집어넣으려고 자기네들끼리 정치 같은 거를 한다고 하죠? 건너건너 뭉치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방해할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네들 그런 학연 지연끼리 지도자를 같이 하려고 라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Q] 상식으로는 실력대로 들어가지, 못 들어가게 방해할 한다고 못 들어가나요?

만약 프로 선수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는 수도권에 살지만 모교들이 다 늘 수도권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도자 자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교 출신이나 중학교 지도자와 친한, 이렇게 넣고 싶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중략).. 실력만으로 지도자를 뽑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들어오면 또 텃새들이 있어서 못 버티고 다들 나가더라고요. ..(중략).. 특히 지방생들이 수도권에서 지도자를 할 때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Q] 스포츠계의 어떤 비리나 부패가 다른 분야보다 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야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원래 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융통성이 없고 무지에서 오는 태도,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같은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Q] 그들만의 리그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정서로 자라오고 그 다음에 세뇌 당해서 온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나중에 뭘 하겠어'라는 그런 세뇌당하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이 운동을 그만뒀을 때 확장성을 닫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운동밖에 한 게 없으니까 지도자를 해야 돼. 우리의 밥그릇이야. 외부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Q] 그러면 현재 ㉠종목 지도자 중에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없죠. 아마추어, 유소년에는 많지만 엘리트에는 거의 없죠.

[Q] 그러면 스포츠 비리나 부패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신고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부모들은 내 자식한테 피해 갈까봐.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계는 누군가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정보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애가 여기서 약간 좀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을 했을 때. 대학을 못 가게 한다든지, 주전으로 못 뛰게 한다든지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참았다가 대학교 갔을 때 만약에 대학교를 원하는 대로 잘 보내주면 그냥 묻고 가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몇몇 종목에서 터트리는 것 같아요.

[Q] 그러면 거의 스포츠계의 비리나 부패를 신고하지 않는 게 ‘피해가 갈까 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거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중략) 강남에 있는 어떤 팀에서 회비 같은 거 이중장부를 쓰게 해가지고 돈을 지도자들이 많이 받았다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을 이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다 터트려 가지고 감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그 입시 때문에 부모들이 참는 게 많고 또 심판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성적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들이 돈을 마련해서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Q] 심판들한테도 부모들이 돈을 만들어서 준다고요?

심판들한테 주는 돈을 부모들이 만들어서 지도자에게 주는 거겠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특히 체전 때나 이럴 때는 심했는데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계약 기간이 성적이 안 나도 규제 한도로 자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과거에는 성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아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Q]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을까요? 신고해도 피해 받을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신고를 했을 때 증거 자료를 갖고 와라. 그런 법적인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결국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도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냥 편하게 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코치들이 누가 얘기했는지 조사를 뒤로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누가 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특히 개인 종목보다 단체 종목은 나 때문에 팀에 피해 갈까 봐 이런 것들도 되게 크고요.

[Q] 그러면 적발은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스포츠 분야를 공부하니까 학교에서는 운동할 때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 걸린대요. 그래서 학교에 체육부장님이나 학교에서는 때리지 않는대요. 근데 전지훈련을 간다거나 자기네들끼리 외부에 나갔을 때 안 보이게 등짝을 때린다든지 이런 안 보이는 부위를 발로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즉각 찍을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씩의 폭력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Q] 승부조작이라든지 입시부정 이런 거는 적발이 어떨까요?

요즘에 입시비리도 개인종목은 개인순위가 나오지만 단체종목은 옛날처럼 지정을 해놓고 이 학교에 간다는 건 없어져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전선수와 비주전선수가 성적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수시 안 한다 하지만 뒤로는 수시로 넣어서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대학교에서는 또 운동부 운영이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지도자들끼리 전 대회에서 3위 입상한 팀은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에 가려면 입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팀에서 다 갖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후략)

[Q] 사실상 그게 승부조작 아니에요?

그게 승부조작이긴 하지만 애들의 미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선수들이 강팀에 가고 만약에 성적이 안 나는 팀에는 안 가게 되면 그 지방 팀들은 유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형평성들이 어긋나니까.

[Q] 승부조작이나 입시 비리가 사실상 적발이 쉽지는 않아요?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이 같이 시합하면 3학년이 성적이 나올 때면 1학년이 잘해도 좀 쳐주라는 그런 것들을 한대요.

[Q]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네 팀 3학년, 우리 팀 1학년이 경기를 했는데 우리 팀 1학년이 더 잘해. 그런데 여기는 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렇게 되면 열심히 안 해도 안 혼낸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뭔가 그런 길들이 오고가니까. 그런 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1학년들끼리 게임할 때는 감독이 조금만 못 해도 화를 낸다든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시합들도 있고. 그게 발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입시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아닐까요?

[Q] 조직사유화는 적발이 어려울까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 그거죠. 만약에 뭐 프로팀 감독을 뽑는데 그 팀 단장이 ○○대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대 감독이 됐다. 이거는 심지어 뭐가 없잖아요.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했잖아!" 이게 아니라, "서류 냈는데 뭐" 이러니까. 그렇다고 누가 회사처럼 "면접자료 공개하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뽑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뽑는 게 없잖아요.

[Q] 그리고 공개적이다 하더라도 이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죠. 그게 내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지도자들끼리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동문회를 나가서 눈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더더욱 없지 않을까요. 정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서.

[Q] 결국은 그 시스템이 있어도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학연이 되고 지연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선수들을 위해서는 대학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Q] 그러면 학연 지연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왜 학연 지연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그게 스포츠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밖에 조직 생활에서도 학연 지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똑같은 조직 내에서 보고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Q]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결국 선수와 지도자와 심판이 사실은 다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 ㉸종목이라고 하면, 심판이건 지도자건 다 ㉸종목 선수 출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심판들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체대 출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레벨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완전 우수 선수들은 심판을 은퇴하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고 지도자들도 완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가 있는 거는 진짜 불과 십 년도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학창 시절 때는 ▼▼종목하다가 ㉸종목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자리는 없고 은퇴 선수들은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밀리게 되고 프로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심판 쪽으로 또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Q] 그런 게 적발되었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건, 사고로 징계를 당해도, 또 지도자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스포츠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죠. 학연 지연뿐만이 아니라 없는 일들을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확인도 되지 않는 말들을 유포하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 지도자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는 그런 스포츠 환경이 싫다보니 학교 스포츠팀보다 학교 방과 후나 스포츠클럽에서 지도자를 많이 하죠, 사건, 사고를 징계 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창피함 없이 지속적으로 지도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금액 페이가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 방과 후, 학교 클럽이 옛날에는 돈 주고 스포츠를 배운다는 문화보다는 "그냥 뭐 나가서 놀아" 이진데 지금은 돈 주고 스포츠를 배우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애들을 즐겁게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 풀이 엘리트가 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Q] 예를 들어서 승부조작을 했다 그래서 스포츠 공정위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결론적으로 처벌이 약해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이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 제가 운동밖에 한 게 없고 저 사람을 복귀시켜주려고. 모두 그런 똑같은 사고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복귀를 시키려고 했다가 위에서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방송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해 주고.

[Q] 왜 그럴까요. 왜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대하다 그래야 되나요? 처벌이.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무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규칙과 규율은 배웠을지언정 사회성에 대한 규율과 규칙, 도덕성은 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팀도 시즌 도중에 호텔에. 이런 것처럼 사회성이나 도덕성이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거에 묻혀져서 덜 배운 게 아닌가...(중략)..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쪽에 아마 많을 거예요.

[Q] 왜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도자 하나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워딩을 안 가르쳐서. "그냥 너희가 잘못했어!" "네". 근데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행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그 무지함에서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우리가 처벌을 해서 나가더라도 몇 년 후에는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방 가서 지도자를 하고 있을 것이고.

[Q] 이거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지도자들이 은퇴를 하고 일정 기간 바로 지도자로 들어갈 수 없는 제도. 그리고 지도자로 가려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교육. 왜냐하면 선수의 정체성에서 지도자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선수였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코치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준비도 안 된, 그냥 운동만 잘했다는 이유로 누구를 지도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지도자인데 너무 안일한 태도로. "내가 운동했으니까 내가 이걸 제일 잘 하니까".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운동을 제일 잘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기술만 잘한다고 과연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것도 없고, 지도자를 어디에서 평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을까

[Q]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게 있죠? 선수들은 그게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보나요?

(공정하다 아니다 문제이기 이전에)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알까요?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나와 있는 건지, 지금 거기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뉴스에서만 뭐를 한다고만 얘기를 했지, 지금 현재 초·중·고·대학교, 실업선수들이 그런 데에서 어떤 걸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정확한 로드맵 같은 게 나와 있는지 (모른다고 봅니다.)

[Q] (중략).. 스포츠비리 혹은 부패의 가장 큰 주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수들을 키우는 건 지도자의 역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대한 정책이 잘못된 (탓일 겁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못 갖추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가 제일 지도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종목이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프로 종목은 은퇴하고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발령이 돼서 감독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수들한테 써야 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때에 쓰던 그런 비아냥거림의 언어를 쓰다가 바로 지도자가 돼서 선수한테 또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하면 선수들은 그거 갖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요즘에 축구 야구 농구 선수들 TV 나오는데 후배들이 일도 많이 하니까 나 때는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 새끼야" 이런 언어를 쓰는데 방송에서 그거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문화는 그래" 이렇게 넘어가니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써야지 운동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Q]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필요한 거네요.

저는 우리나라 정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도자는 운동만 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운동했다고 지도자를 한다? 이것은 진짜 오산인 거 같아요.

[Q] 그러면 지도자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나 이런 조금은 선진으로 정착이 되면 스포츠비리도 좀 많이 감소하거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학 입시도 축구 같은 경우는 수능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능점수는 솔직히 지도자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운동 성적이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선수들한테도 "운동만이 네가 살 길이 아니라 공부도 같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너네는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만 해" 이게 아니라 "운동도 잘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해"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중략).. 사고가 달라질 거란 이야기죠.

[Q] (중략).. 그러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잘 몰라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스포츠인권.. (이런 말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가령 ‘코치가 어떤 육두문자를 쓰는 것은 언어폭력이다’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으면 선수들이 알 텐데, 코치들이 이렇게 하면 언어폭력이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매일 듣는 학생들은 그게 언어폭력인지 저 선생님의 원래 언어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Q] 승부조작 같은 경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승부조작은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심판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심판의 페이(보수)가 너무 작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규직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승부조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볼 줄 몰라서 경기를 진다고 말할 정도로 심판의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가 꼭 그런 성적으로만 평가를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승부조작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4절 | 심판 대상 심층면접 결과

[Q] 먼저 간단하게 스포츠계의 백그라운드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종목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행정 쪽으로 일을 많이 했고요, 대한●●연맹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선수 때 대한체육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종목 선수니까, 선수등록은 대한●●연맹에다가 해야 하고, 대한체육회는 대한●●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그리고 대한●●연맹, 대한■■■연맹, ◇◇◇협회 이런 각각 종목들이 대한체육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Q]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대한체육회 소속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한체육회 소속은 아니고,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이제 대한체육회와 관련이 없는 이런 대회일 때는 이제 대한●●연맹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대회, 유니버시아드 이렇게 종합경기대회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Q] 그러면 그때는 어디 소속이다, 어디 있다 이런 게 크게 상관은 없었겠어요?

선수 등록이 꼭 그렇게 지도자분들이 거의 해 주시기는 하지만 선수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때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수등록증이라는 것을 봤어요. 선수등록증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신분증같이 사진도 있고 소속이 무슨 학교고, 대한●●연맹에서 도장 직인 찍어가지고 나오는 선수 등록증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소속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종목은 기록경기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경기인데도 다른 종목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승부조작이나 이런 게 있나요?

승부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발전을 하는데,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지 못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선전에 A라는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결승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우승한 선수인 B선수가 있다고 쳐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A의 예선기록이 결승전에서 우승한 B의 기록보다 빠른 상황)

[Q] 오. A?

A를 보낼 수도 있고, B를 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A는 전체 그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지만, 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데서 1등을 한 선수가 아니에요. 순위권에 없는 선수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을 잘 좀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일들이 있었죠.

[Q] 체육계에서 가장 큰 문제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은 대학 입시에서의 승부조작, 심판에 대한 불공정 이런 게 문제고, 어떤 데서는 그 조직이 다 학연이나 인맥으로 이어진 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상당 부분 체육계의 불확실한 처우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학연이 좋고, 지연이 좋고 이래도, 내가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 튼튼한 직을 걸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럴만한 사람은 현저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불확실하다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 스포츠계의 구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입김이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도와주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게 생겨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입시직이잖아요. 학교 지도자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그 자리에 자기를 들 수 있도록 도와준 누군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Q] 결국은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런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제 한 마디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끌어가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자르고 가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월급 150만 원 받고, 비정규직으로 했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신껏 하겠는데, 내가 당장 이 150만 원 월급 받는 게 없으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라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Q] 현실적으로 그런 게 통해요? 그런 게 통하니까 그런 걸 하겠죠?

당연히 통하죠. 가령, 힘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좀 처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 힘들죠. 거부를 했을 때 다가오는 불이익이 가령, "아 내가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면 나는 이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Q] 예를 들어 어떤 사례에 대해서.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는 뭐 많을 수 있겠죠. 체육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다 파리 목숨이니까. 다 비정규직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사, 체육 강사, 학교에 소속된 ●●종목 코치가 월급이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게. 근데 그 작은 거를 우리가 보충하는 게 학부모들한테 일부 좀 각출을 받아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런 편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 하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니까 전례와 같이 받았겠죠? 그랬더니 사이가 안 좋은 학부모가 그런 거를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가 잘리게 되고 뭐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고요. 아니면, A라는 선수가 잘 하는데, 이번 대회는 좀 B선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체전의 베스트 멤버는 A, B, C, D인데 A, B, C, D 말고 F를 넣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종의 압력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Q] 그런 압력은 결국 성적을 내기 위해 하는 건가요?

성적을 내기 위해 하는 걸 수도. 그러니까 A, B, C, D를 내야 베스트 성적인데, A, B, C, F를 넣는다는 거는 성적이 어느 정도 안 나오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F를 챙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Q] F를 챙겨줘야 하는 부탁을 받거나 이런...

그렇죠. 진학 뭐 이런 게 걸려있겠죠.

[Q] 결국 그러면은 돈인가요? 그건?

돈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월급 500을 누구의 도움도 없는 받는 지도자라고 하면 나는 A, B, C, D를 하지 A, B, C, F를 넣으라고 하는 압력에 굴복... 내가 스스로 A, B, C, D는 진학이 확정되고, 진학이 좀 불확실한 F를 좀 챙겨주고 싶어서 A, B, C, F를 자발적으로 넣으면 모를까, 외압에 의해서 넣는다는 거는 월급 500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Q] 그러면 결국 그런 외압이나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게 대학 입시로 봐도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Q] 대학 입시 다음에는 어떻게 실업팀으로 가는 것까지 영향이 있나요?

보통 잘 하는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바로, 요즘 추세는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실업팀을 가죠.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Q] 그러면 이 종목에 금품과 관련된 거는 진학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진학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F 선수도 실업팀 갈 실력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국 대회 실적이 하나라도 있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개 수십 개가 있는 거랑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전국 대회 입상을 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Q]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력으로만 안 가고 다른 요건들, 뭐 성적, 예를 들어 수능이나.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조금 이런 현상이 줄어들까요? 그래도 있을까요?

지금도 수능을 보고 결정이 되긴 하는데.

[Q]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그러면 엄청 큰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좀 상당 부분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가령 지금은 수능 점수를 가장 기본적인 최저 점수를 받더라도, 운동을 잘 하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냐는 얘기신건데.

[Q] 예를 들어, 미국 NCAA같은 것처럼.

NCAA같은 경우는, SAT 성적, 우리로 치면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학교 내신 성적이 낮아도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대신, 학교 내신이 낮으면 SAT가 높아야지 진학을 할 수가 있죠. 그 운동 경기력에 따라서 뽑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SAT와 내신 이걸 가지고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Q] 그러면 ●●종목은 기록경기니까, 심판에 대한 매수나 이런 건 조금 적다고 봐도 될까요?

●●종목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가령, 온 한국 ●●종목인이 한 마음이 돼서, 누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못 표현돼서 잘못 이행돼서 가령 스타트 할 때 출발신호를 그 선수에 유리하게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못된 거기는 하죠.

[Q] ▣▣▣▣ 선수는 그 지도자 선생님 때문에 그 ◎◎대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 이것도 중요하나요? 진학이나, 앞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중요하죠. 지도자에 따라서 그런 선수의 그 미래를 생각해서,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자기의 역량과 뭐 이런 걸 봐서, 가령, 어떤 지도자는 ▣▣▣▣선수에게 "◎◎대에 가지 말고 넌 처음부터 실업팀을 가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조언해주는 지도자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지도자는 "야, ▣▣▣▣아. ◎◎대 가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명문인 대학교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지도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야, ▣▣▣▣아.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면서, 네가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지도자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선수의 지도자는 ◎◎대를 가라고 조언을 해줬겠죠. 다 근데 뭐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실업팀을 갔으면 ▣▣▣▣선수가 지금도 많은 부를 쌓았지만, 더 많은 부를 쌓았겠죠.

[Q] 근데 지도자가 물론 ▣▣▣▣ 선수 같은 경우는 뛰어난 선수고, 일반적으로 내가 ●●종목계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코치, 심판 활동을 하고 이래야 할 때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줄을 타는지도 중요한가요?

요즘에는 ●●종목에서는 조금 덜 하기는 하다고 하는데, 있죠. 당연히.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에도, 비슷한 실력이면은 누구 코치 제자가 뭐 국가대표까지는 그걸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비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탁되는 데 유리하다고 했어요. 저 팀가면 엇비슷하면 국가대표 상비군을 한다.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이력이 있으면 진학도 유리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팀에 많은 선수가 물리겠죠?

[Q] 그게 가능해요?

그 지도자가 연맹에 힘이 있는 거죠. 아니면 힘이 있는 누군가와 절친하든지.

[Q] 그러면은 결국 힘의 문제네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Q] 바뀐 구조가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경기력 향상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런 소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조금 중앙 집권적인 연맹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소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많이 맡기는... 그런 식으로 좀 분산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과거와 같이 절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Q]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팀에 가면 비슷하지만 가면 타 경쟁 선수가 발탁되지 않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A팀 선수가 발탁된다. 그런데 A팀에 학부모들이 많이 몰리겠죠. 다른 팀에 가고 싶겠어요, 거기에 가면 국가대표 상비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선수는 A팀에 무상으로 훈련하지 않잖아요. 수십만 원씩 한 달에 몇몇이 훈련을 하면, 잘 나가는 팀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70만 원을 낸다. 잘 나가는 팀은 5-60명 되는 팀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3500이라는 돈이 한 달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비용은 물론 빠지겠지만. 그게 전국적인 지사처럼 있다고 하면은 그게 더 커지겠죠? 그럼 꽤 적지 않은 비즈니스가 돼요. 뭐 친한 사람끼리는 그 중에서는 이거는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상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Q]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럼요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목에서는 연맹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A팀의 원 창시자다. A팀에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후계자인 거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Q]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납을 했는데, 그에 맞는 대응을 못 받았다, 소위 말해 배신을 당했다...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싸워도 대놓고 뭐라고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암묵적인 혈맹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연맹의 권력자는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차 00이가 사줬다".

[Q]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현실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이의신청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윤리센터도 없었고, 국민 체육회의 신문고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얘기해봐야 연맹에 이야기하는 건데, 연맹에 얘기해봐야 연맹에서 묵살하면 사실 뭐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태권도도 한 부모님이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자살을 하신 경우도 있고 안 먹히니까. 신고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눈 밖에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수 년 한 거를 그만두면은 뭐 다른 길 할 길도 막막하니까...

[Q] 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신고를 하는 현장에 있는 체육인들은 사실은 그 뒤로부터는 되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신고를 안 하고 적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적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 적발이 돼요? 누가 경찰이 와서 현장을?

[Q] 네 뭐 예를 들어, 감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적발이 된다? 뭐 가령, 프로야구 선수 승부조작 같은 게 적발이 된다는 건 본 적이 있었어도, 글썽요. 체벌을 누가 뭐 신고를 했다는 건 있어도 적발이 됐다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Q]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국 신고한 사람만 다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가해자도 보여주기 식으로 자격정지하고 잠잠해지면 풀어주고 이런 게 만연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덜 한 것 같기는 해요.

[Q] 자격 정지하고 풀어주고 이런 게 왜 과거에 만연했을까요?

약간 사회 분위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과거 10-2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음주운전하는 거를,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하면 안 됐던 거지만,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taboo시 되기는 하지만, 큰일 난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측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체벌도 만연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또 했던 걸 가지고 딱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어제까지 체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예를 들어 자격 정지 6개월인데, "야 너부터는 알짬없어. 2년이야." 이렇게 되기가 좀 힘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Q] 규제나 규정이 얼마나 잘 또 인지가 되고, 그게 적용되는 시점 이런 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래도 ●●종목은 풀(pool)이 조금 커서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저변이 작은 종목은 누가 없으면 거의 그 종목 자체의 존재가 걸리는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종목은 더더욱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를 빨리 풀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겠죠.

[Q] 현재 체육계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꼭 해결이 되어야지 뭐 좀 "깨끗해질 수 있다", "청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체육계가 건전해져야 된다.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조그만 종목 단체들이 비리가 많은 게, 없는 예산가지고 예산 돌려막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비리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 풍족하면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러고 싶어요. 그때그때 딱 떨어지게 하고 싶죠.

[Q]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횡령이라고 안 하고 유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업체한테도 자기네가 일을 주는 업체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뻔히 적은 예산인 걸 알고 일을 시키는데, 업체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하는데, 연맹에서는 "다음번에는 예산 넉넉하게 받으면 그걸로 좀 해줄게."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니까 비리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좀 그런 게 넉넉히 있었으면, 부족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횡령이 나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그건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악질적인 횡령하고,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횡령하고, 결국에는 말이 좀 돌았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을 알고 좀 충분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니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가 하나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이런 비리나 이런 게,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단체는 성폭행이 없고, 비리가 없고, 횡령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는데, 스포츠가 좀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다 보니까, 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서 그런 거지. 의사도 환자 성폭행하고, 의사도 진료 부풀리기 하고, 정치인도 비리를 저지르고, 이게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지.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은 스포츠계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Q] 대부분의 주변 체육인들이 스포츠 비리나 부정부패가 뭔지 인지는 하고 있나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는데... 다만 그 비리인 걸 알고 하는데, 본인들도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켜야 할지 모르는 거죠.

[Q]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절 | 스포츠행정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종목협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Q]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스포츠행정가로 모터스포츠에서 시작해서 근 한 20년 정도 됐죠.

[Q] “스포츠계 부정부패”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체육인들의 정신적인 부정과 부패가 생각나는데, 오롯이 사비를 들여 국위 선양하는 체육인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즐기는 것이 스포츠다”라는 슬로건을 오역하여,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며 국위선양이라는 모순적 태도는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냉전시대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는 이미 문화 콘텐츠가 한류열풍의 주역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 등 아마추어 메가 이벤트에 참가하는 유럽의 선수들 사회적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포츠선수로서의 활동이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스포츠정신으로 인류에 귀감이 된 훌륭한 선수들의 스포츠 업적에 누를 끼치는 선수가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그 다음에 또 스포츠계 비리라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스포츠계 비리”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의 소위 ‘가윗돈’ 같은 금전적 거래의 폐단과 학연으로 이루어지는 선수의 선발 등 현장에서의 비리가 생각이 나는데 스포츠계 재정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체육인들은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길 강조하였고, 체육단체 기관장의 분리나 정치권의 불참을 호소하는 과정 중에 자칫 폐쇄적이거나 편향적인 협의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한 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합법적이고 건강한 로비활동 등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금전적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종목은 기록경기잖아요. 기록경기도 학연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지도자가 학연관계로 선수를 선발하고자 할 수 있지만, 기록계측이나 단체 팀워크로 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지도자가 원치 않는 선수가 발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명분 없이 지도자의 권한으로 해당선수를 불인정할 수 없으니 팀 내에서 집단 따돌림 같은 방식으로 선수를 괴롭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다고 인지하는 게 쉽나요?

일반인들은 언론 보도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Q] 그럼 내부자들요? 내부인?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는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분열이 생기고 그 시점부터 불거진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조직 내에 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러면 그 모를 수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삼길 원치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살이 아닐까요?

[Q]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하기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보도를 원하기도 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Q] 그럼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적발은요? 적발되는 것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거는 어렵고, 감사를 통하거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만 알려지는 거죠.

[Q]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관련 구성원끼리 말을 맞추거나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사실관계를 실무진들이 알았을 때 그 실무자는 공익 제보를 통해서 직속 상사나 직속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제보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았죠.

[Q] 보고를 하는 의무가 시스템으로 이제는 조금 구축이 되었다는 건가요?

네, 이게 규정상에도 어떠한 비리 행위를 목격을 하거나 발견을 했을 때에는 즉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제 누락이 되었을 때에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익 제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어떤 비리 행위나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 본인들만 아니라는 건 체육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각 소속팀이나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 행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청원이라든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많이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현장에서 느낀 경험상, 제보를 했을 때,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처벌이라는 거는 규정에 입각하기 때문에, 각 협회 내에 있는 자체 상벌 위원회에서 규정에 입각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저희 협회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상벌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기준으로 징계가 가해지는 경우 징계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Q] 규정이 생긴 지는 보통 얼마나 됐어요? 규정이 좀 최근에 다 생기지 않았나요?

규정에 대한 제정 자체는 각 조직들이 처음 설립이 되면서부터 필수 규정으로 다 존재를 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그 규정이 없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위 기관의 모범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Q]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처벌이 강해지면 문제발생 빈도나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조직 구성원 간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규정에 입각하여 처리하면 국가차원이나 세계연맹 차원의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Q] 규정대로 하면 어느 정도 공정할 수 있는데, 규정까지 가기 전에 손을 쓴다?

알리는 행정은 좋은 정책이지만 사사건건 공론화시키는 것 보다 조정 가능할 때 밸런스를 잡는 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무마시키려면 무마가 돼요?

그게 밝히려고 투명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보통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즉시 보고를 하고 그 체계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Q] 그 수순을 지키기 전 단계에서 무마하는 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지금도 각 현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텐데, 예를 들어서 “폭력이다”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가해를 했을 때, 명확하게 그게 “가해다”라는 규정이 폭력에 대한 명시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 선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집단 따돌림으로 가해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이라고 봅니다.

[Q] 조직 사유화는 현재 스포츠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단체라는 곳은 그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알리고 간소화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권과 패권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비전문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조직의 전략, 기획, 운영을 폐단으로 이끌고, 서로 전문가라는 주장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체육조직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조직사유화는 사실상 어느 종목이나 일정 수준 정도 있고, 그런데 조직사유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거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돼요? 학연? 지연?

조직은 구성원 간의 협력과 단합이 생명력입니다. 조직이 한 세력으로부터 사유화가 된다고 가정하되 정책이 건강하고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면 비교적 건강한 조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의 다수가 조직정책을 신뢰하고 수호하며 건강히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비전문가의 기득권 다툼에 순수 전문 원로들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Q] 조직 사유화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Q] 그러면 조직사유화는 사실 드러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명확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며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Q] 근데 현실적으로 조직사유화 진행 과정에서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조직의 집행부가 범법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되거나 스스로 인정하여 성명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슈 없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Q] 그러면은 사실상 조직사유화라는 걸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학연에 의해, 인맥에 의해,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행정운영, 각 대회 운영은 수십 년간 발맞춰왔던 업무 관계 사람들이 협업해야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유화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스포츠에서 척결대상이 되었던 비위행위나 잘못된 정책의 결과의 원인으로 비전문가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Q] 현실적으로 조직사유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 명시하고 입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정책과 운영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Q]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사유화를 통해서 부정·부패까지 해서 드러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혹시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출신의 지도자가 있고, 그 출신의 선수들을 뽑는데, 타 학교 ▲▼대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선수들을 기준에 의해서 발탁하기 때문에 일단 발탁은 될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팀의 구성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경기에 내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배제를 시키거나, 조직 내 숙소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완력이라든지 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이 만연하다고 보일 수 있죠.

[Q] 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렇다 할, 어떻게 보면 “불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Q]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선수들은 알고도 신고를 할 수도 없겠네요, 알아요. 그런데 선수들도 이런 조직사유화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나요?

선수 및 지도자들도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데 선수나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가 규정을 계속 손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말씀하신 회장도 연임 2회 이상 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사유화는 사실은 어느 단체나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임금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을 바쳐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화시켜 희생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학연, 혈연관계에 대한 기준을 막는다는 자체가 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Q]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조직사유화, 스포츠 비리, 부정·부패, 원인이나 해결방안이나,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일단은 체육이라는, 스포츠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는 □□□ 사건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독립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래서 만든 게 스포츠윤리센터인데... 독립성이 잘 유지되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적인 부분은 피부로는 많이 못 느끼고,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돼서 해가 거듭될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죠.

[Q]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 지방체육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Q] 간단하게 스포츠계의 백그라운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엘리트는 아니지만 ●○종목선수도 하고, ▣○종목도 좀 하다가 체육 쪽으로 대학을 가서 체육대학 다니다가 졸업하고, 체육계 정식 행정직원이 됐습니다.

[Q] 주요 자금의 출처는 ○○도인가요?

아닙니다. 지자체입니다. 저희는 ○●시가 되겠죠.

[Q] 그러면 이제 지휘, 감독 기관도 ○●시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따로 법인이 되었으니까. 시군구 체육회의 예산, 예를 들어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등의 운영비는 98-99% 거의 지자체, 즉 ○●시에서 나옵니다. 각 시군구마다 체육계 정식 직원은 조금 다르지만, 운영비 자체가 거의 100%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Q] 현실적으로 ○○도나 대한체육회랑은 커뮤니케이션할 것은 많지 않겠네요?

체육회 문제점이 그겁니다. 모든 규정이라든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원은 안 해주면서. 법이나 정책을 정해놓고 너네는 따라오라고만 해서, 말단인 지자체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Q] ○●시 체육회 주요 업무는 소속 선수와 감독 관리죠?

그렇죠. 그것도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할 게, 방금 선수들이라고 하면 엘리트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시청 축구부와 같은. ●○도 체육회 소속인 선수가 있고, 도청 선수가 있습니다.

[Q] 체계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시청의 관리감독 아래 ○●시 체육회가 있고, ○●시 체육회 아래 종목 단체들이 있고.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정회원 단체, 준회원 인정 단체 해서 ○○개가 있습니다. 생활 체육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Q] 지금 연구하는 게 체육계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구조적으로 있냐는 건데요.

많죠. 조직 구성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원 뽑을 때. 얼마 전에 ●■시인가? 직원을 뽑았는데 임용을 안 시켜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 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구성할 때,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시와 관련된 캠프에 좀 있었다든지. 관하고 연결된 직장은 보조를 받든 어쨌든, 선거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Q] 줄이라는 게 어떤 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쪽. 쉽게 말해 인사 청탁.

[Q] 이게 어떻게 요새도 먹히죠?

형식은 다 거칩니다. 형식이라는 게 공개채용.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구 9급 일반 행정직 모집합니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느 기관에 정해 놓고 뽑는다. 그런 식 인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선거 캠프에 아버지가 누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직장도 못 잡고 스물 대여섯 짜리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직장도 못 잡고 있다. 이번에 체육회에 직원 하나 있는데, 직원 뽑을 거다 말해주고 지원하는 거죠.

[Q] 완전히 자기의 조직처럼 사람을 뽑고 이런다는 거죠?

네.

[Q] 그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방금 예를 든 이 부분은 진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적발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신고도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들 암묵적으로 아니까, 신고해도 체육회 자체에서 행정상 다 맞춰놓는다는 거죠. 분명히 말이 나오면 서류는 거의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그것도 내정자를 위해서 완벽하게 구색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해도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서류상으로는 99% 하자가 없습니다. ●■시 예를 들자면, 한 청년이 체육과 나와서 운동하면서 먹고 살려고 당당하게 공기업 채용에서 붙었는데, 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Q] 왜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 체육은 선진국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위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오는 스타일이잖아요. 위에서 다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진짜 능력이 좋아서 일반직 직원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S대 나오고, 운동 잘하고 확실한 경력이 있어서, 반박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전에 논의된 사람이 뽑힌다고 봅니다.

[Q] 힘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

회장이 될 때도 있고요. 루트는 다양합니다. 취직을 시켜야 되는 당사자가 체육회 관리직과 아는 경우 직접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친한 사람이 체육회 관리직과 아는 경우는 통해서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 직원 뽑을 때는 전문가를 명시를 하잖아요. “컴퓨터 전공자에 한함” 이런 식으로. 근데 체육인의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체육인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체육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체육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체육인이 아닙니다. ..(중략).. 어떻게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체육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 하러 왔는데 자기가 체육인이래요. 체육에 대해서 뭘 안다고 체육인일까 싶은 거죠. 일반 회사 뽑을 때에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 전공자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놈의 체육회는 이상하게 일반인들도 운동 해가지고 쉽게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 해에 체육 쪽으로 전문대 2년제, 4년제 배출되는 인원이 꽤 많은데, 이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체육은 물리치료자 이런 거 다 전문분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체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도자 하고 있고, 지도자 하다가 좀 지나면 체육인... 이런 쪽으로도 정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Q] 전문성을 지켜줄 정책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그게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짜니까 그렇겠죠. 민간회장님 체육진흥법 바뀔 때, 체육인들은 민간회장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민간회장 뽑은 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예요. ○○체육회 지금 난리난 거 보세요. ●○도 ▣▣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시끄러운 데가 많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Q] 금전적인 문제는 없나요?

많죠. 체육회에 감사를 받잖아요.
 행정적으로 경험치가 쌓이니까, 100만 원짜리 용구를 사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리고 80만 원으로 100만 원 어치 용구를 충분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어치 남는 걸 그렇게.. 체육회만 아는 게 아니라 용구를 파는 업체도 다 아는 거죠. 공개적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서류상으로는 거의 99.9% 다 맞춰놓습니다. 용구에서 남겨먹고, 체육회에서 사놓은 모든 용품, 옷 같은 거 대부분.

[Q] 또 금전적으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 지원비에서도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받는데 20만 원 주더라도 뭐...

[Q] 선수들은 큰 문제의식이 없고...

아닙니다. ○●시에도 ..(중략).. 선수들이 어렸다가 크니까 아는 거죠.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달라 그러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이제는 조금 바뀔 거 같아요. 물갈이만 되면, 지금 현재 코치직이나 관리직이 나가면 상납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이제 깔끔하게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창원에서 부장 하나가 옷 벗고 나갔죠.

[Q] 조직 내부에서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 후임자가 일을 배웠다고 똑같이만 안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만 없다면 바뀔 것 같아요.

[Q] 이 외에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비리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누려야 할 체육 복지 중에 비리로 인해서 못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움직이니까, 시군구 체육회에서 돈을 받았으면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 근데 100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80만 원어치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직접적인 건 고수 아니고서는 모를 거예요.

[Q] 밝혀지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 밝혀지면 처벌은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공정하지는 않죠. 관례 때문에.

그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비리를 했던 사람과 위에 관리직이 아는 사이이면 처벌이 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 벗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징계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도 있게 회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솔직히 옆에서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나 싶어요. 회의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서 나오니까.

[Q]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맡지 않는 이상... 정말 깨끗한 백지 상태여야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Q] 선수들은 이제 신고 자체를 되게...

꺼려하죠. 자기 선수활동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하니까.

[Q]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을 탄 데 유용하는 게 종목, 기관, 협회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예산도 부족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요. 솔직히 개인 돈 쓰기 싫어하잖아요. 행사하다 보면 따로 챙길 데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Q] 이걸 횡령이 아니라 유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쓴 돈도 분명히 있는데, 밥도 먹어야 하고 행사 끝나고 술도 먹어야 하고 이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져왔던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조금 눈치는 보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조금씩 눈감아 주는 거고. 지금 유용하고 이런 게 하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지금 운동하는 애들이 올라오면 그때는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Q] 지금 운동하는 애들은 조금 다른가요?

형식상 공부도 같이 하나니까요. 그런데 크게 변화가 생길까 하는 물음표는 항상 달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성적내고 이런 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새는 신문에 한두 줄 나오고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에, 지자체에서 운동선수 직장 개념으로 잡아줘야 하니까. 그런 게 크다고 봅니다.

[Q] 그럼, ○●시 체육회 예산은 100%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수익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예 100% 보조금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긴 한데, 솔직히 어렵죠.

[Q] 부정부패나 비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국민 신문고 이런 데 올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는 비리가 아니니까, 이거 외에 금품 비리, 채용 비리, 조직 비리 이런 것의 원인은 수요가 있어서, 쉽게 말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히는 것 같아요. 학연, 지연 이런 거는 기본이고...

[Q] 스포츠가 아니라 다른 영역도 그런데, 체육계가 더 심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작은데 단합이 잘됩니다. 우리끼리 놀았으니까요. 우리 때는 대외적으로 엘리트에만 힘을 쓰지, 체육계에서 누가 일하는지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나마 일반 회사들은 다양한 데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거고, 체육회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모르거든요.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운동 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제6절 |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소결

심층면접에 응한 스포츠계 종사자들의 종목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수많은 종목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몇 명에 지나지 않고 프로팀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포츠계를 온전히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문제로 거론된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우선, 모두 다른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인터뷰에서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문제 중의 하나는 심판의 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현역 심판은 물론이고, 종목이 전혀 다른 두 명의 선수와 두 명의 지도자

및 특정 종목협회 스포츠행정가가 모두 심판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선수 선발과 연관된 심판 판정의 문제였고, 그 중 일부는 입시와 관련된 선수 선발 과정과 연관된 것이었다.

선수 선발과 관련된 심판 판정의 문제와 관련해 피면접자들은 타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고 둘 다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판정시스템의 변화 및 기계장치 등의 도입 등으로 인해 확실히 나아졌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그런 문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심판의 판정문제의 이면에는 스포츠계의 인맥이나 학맥 혹은 인맥과 학맥을 토대로 한 권력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시 말해, 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일부 심판들과 결탁하여 공정한 판정을 거슬러 자신들이 후원하는 선수를 선발하는 부당행위를 오래된 과거에 혹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물을 가장한 크고 작은 뇌물이 오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 없이도 자기 패거리의 강화를 위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심판 판정에서의 문제는 누가 보아도 대단히 큰 실력차이를 뒤바꾸는 정도의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엇비슷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형태의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판정이나 승부조작의 문제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사건들도 의심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선수 선발과 관련된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한편, 인맥과 학맥 같은 연고주의 또는 조직사유화 등의 문제는 선수선발과 관련된 심판 판정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의 부정부패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의심 역시도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되고 있다 할 만하다.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비리를 인지했을 때, 만약 이를 신고하기라도 한다면 어느 특정한 패거리들이 온갖 종류의 힘을 발휘하여 이를 무마하기 때문에, 부패행위자나 인권침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만 고통이나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은 신고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설령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기구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연고주의나 조직사유화는 스포츠행정직 등에 있어 인사 채용 비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는 입장, 더 나아가 그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해치면서 병든 조직을 만들어내며 특히 연고주의나 조직사유화 문제가 비전문성과 결합되었을 때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과 아울러 스포츠계의 재정적 문제, 그리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거론되었다. 가령, 특정 단체의 운용예산 자체가 넉넉하다면 단체 운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편법적인 횡령행위도 줄어들 것이고, 심판의 보수가 적지 않다면 특정 세력과 결탁한 승부조작이나 편파 판정의 유혹을 좀 더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등이다. 또한 일부 성공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연고주의와 조직사유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제 5 장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부패방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남 기 연

제5장

스포츠계 부패방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제1절 |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의 변천과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2012년도부터 최근(2019년)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⁵⁶⁾(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에 프로스포츠 종목에서의 경기조작 파문을 스포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①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시하여 선수, 지도자 등 관련자를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②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경기장뿐만 아니라 숙소 등 일상감시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기조작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기감독관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경기조작관련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암행감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모든 경기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부정행위 의심자

56) 문화체육관광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2.02.21.

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공정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연 1회 실시되던 예방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계약서 상 선수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자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강화하였으며,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⑤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연 2,400만 원) 도입과 연금제도를 확대하였다. ⑥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방안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특별수사 실시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을 기존 6주에서 2~3주로 단축하였다. ⑦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륜, 경정 장외매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입장 정원제를 준수하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사행 심리를 억제하기로 하였다.

▶▶▶ [표 5-1]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 내용

대책	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2012.2.21)	△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 (2013.10.7)	△ 경기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 경기단체의 운영 및 책임성 강화 △ 경기의 공정성 제고 △ 경기단체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 지속가능 개혁 추진 (2014.1.28)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운영 △ 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 신설 △ 스포츠 3.0 위원회 출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 (2016.3.15)	△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스포츠 적폐 청산 위한 체육정상화 TF팀 출범 (2017.11.1)	△ 제보를 통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병행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2019.2.8)	△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정립 △ 대학 체육특기자 종합역량 평가로 선발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부 관련 수입을 학교회계에 조기에 편입하도록 유도하고, 개별적인 금전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재정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② 학기 중 진행되던 종목별 대회를 주말 리그제로 점차 전화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을 구상하였다. ③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자 고용시 표준계약서에 직무교육, 자격조건, 계약해지 및 보수 등 필요사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자 관리를 위해 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과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비리 관련 임원 등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체육단체의 회계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과 협찬금 등의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사에게 위탁하거나 회계팀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⁵⁷⁾(2013년)

스포츠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하지만 일부 종목 단체에서 편파판정, 조직의 사적 운영 등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당시 언론이나 민원이 발생한 승마, 태권도 종목을 중심으로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 사례

① 가족 등 지인 중심의 이사회 및 회장단 추대, 임직원의 장기재직, 동일인의 주요 보직 겸임, 특정 연고 또는 학교 등에 의한 임원진 다수 점유 등을 통한 자의적 조직 운영, 사익 추구, 협회 운영 및 정책결정의 공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5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10.07.

조직사유화 및 파벌주의, ②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을 위반한 협회장 선출 방식 유지의 선거 불공정, ③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 임직원 등 자녀의 불법채용, 임직원 등 소유업체의 특별혜택 제공 등 공정성 저해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 운영의 부적절, ④ 학연 및 지연 등에 따른 편파 판정, 심판의 전문성 결여, 경기위원의 자의적 경기규칙 변경 등의 경기 불공정 등이 확인되었다.

2) 경기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① 단체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고,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단체 내에서의 임원 겸직을 제한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임직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파벌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체 운영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자가 전체 임직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 및 비경기인을 의무적으로 임원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③ 단체의 장 등의 선출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하여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경기단체의 운영 및 책임성 강화

① 단체의 운영비 등 예산집행에 있어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집행 지침과 함께 단체장 등의 친인척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직원 채용 지침을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회장, 임원 등이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대한체육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비리가 있는 경기단체와 임원을 퇴출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이상의 부진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는 지위가 관리 단체로 강등되고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되며 이후 모든 체육단체에서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경기의 공정성 제고

① 중앙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정을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판에 대하여 자격을 강화하고 심판 관리를 위한 심판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동료심판, 선수, 지도자 및 심판위원회에 의한 심판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심 횟수 등에 따라 강등되거나 자격박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심판제를 도입하고 심판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④ 심판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디오 재판독 의무화, 상고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대회 심판을 사전에 공개하여 선수나 감독 등이 심판기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① 시도 단위의 단체가 규약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중앙경기단체가 승인하도록 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시도경기단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경기단체에는 시도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하고 대한체육회에는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및 징계권을 주었다. ② 체육단체의 비리를 제보받아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다. 지속가능 개혁 추진⁵⁸⁾(2014년)

2013년 10월 발표한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공정체육센터가 대한체육회에 설치되어 스포츠 비리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중앙경기단체, 시도경기단체 등이 대한체육회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정체육센터와는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을 스포츠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4대악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5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개설, 지속가능 개혁 추진", 보도자료, 2014.01.28.

1)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운영계획

동 센터는 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등 스포츠계 부정 및 비위의 신속한 척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스포츠 4대악 관련 신고 접수, 이첩 및 조치 관리를 총괄하는 국민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기구이다. 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관단체로 이첩하거나 정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센터는 신고 접수부터 조치결과의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2)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윤리 과목 신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윤리가 체육지도자의 기본적 소양으로 체득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체육지도자 검정 자격에 스포츠 윤리에 관한 과목이 없었으나 2015년부터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여 선수와 인권,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도핑,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등의 내용을 기본 교육내용으로 하여 미래 체육지도자들의 스포츠 윤리 관련 자질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3) 스포츠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스포츠 3.0 위원회' 출범

지속가능한 스포츠 개혁을 추진하고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전문, 생활, 학교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스포츠 기본권의 개념 정리와 체육 관련 법령의 정비,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 종합대책⁵⁹⁾(2016년)

지난 201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에서 사전적 예방조치로써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적 제재조치로써 입학비리 관련자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1)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① 입학전형에 있어 경기실적 등 객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실기, 면접 등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성평가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성평가에서도 외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입학전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기실적증명서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경기실적 기록부터 입력, 관리, 발급,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③ 선수, 지도자, 입학관계자 등 누구나 필요시에 경기영상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④ 학교 운동부에서 비리가 발생할 시 학교가 직접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 등의 비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추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의 입학비리 근절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관련 내용의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였다.

2)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① 입학비리가 발생한 경우, 선수와 지도자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특별히 운동부에 대한 제재 및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입학비리를 근절하고 상호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비위행위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하였다. ②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영구퇴출 되도록 원 스트라이크

59)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보도자료, 2016.03.15.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비리에 관련된 학생선수는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③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을 중단하고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마. 스포츠 적폐 청산을 위한 체육정상화 TF 출범⁶⁰⁾(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분야 관련 기관으로부터 실무 인력을 지원받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총 4개월간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체육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였다.

1) 제보 접수를 통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병행

특별전담팀은 접수된 사건의 진상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바.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⁶¹⁾(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빙상종목에서 불거진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출범하여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와 증진방안,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사안을 검토하였다. 2020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중에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 및 상황을 점검했다. 스포츠 (성)폭력 문제를 계기로 탄생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비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2차 권고 ‘학교스포츠 정상화’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6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출범”, 보도자료, 2017.10.31.

6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2019.02.08.

1)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정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시스템 확립

① 자격기준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되는 때에는 경기 실적, 내신 성적, 실기 등 종합 선발기준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의 선수는 차순으로 배정한다. ③ 선발기준에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공정한 입학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사전 스카웃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 대학 체육특기자 종합역량 평가에 기반한 선발 원칙 확립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은 경기실적만으로 체육특기자가 선발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 성적, 출결, 경기력 등 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②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전형의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2. 대한체육회 정책

2013년도부터 최근(2019년)까지의 대한체육회의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조성을 위한 체육단체비리근절대책⁶²⁾(2013년)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리 발생 시 엄격한 규정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 비리 발생 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 실시

스포츠 단체의 정관과 제 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및 보완하고 이미 발생한 스포츠 비리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가칭 비리근절대책위를 설립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 8~9월에는

62) 대한체육회,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단체 비리근절 대책”, 보도자료, 2013.08.07.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 단체의 자정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횡령, 배임 등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이 실시되며, 오는 2013년 9~12월까지의 경기단체의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전문가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 [표 5-2]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 내용

대책	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단체 비리근절 대책 (2013.8.7)	△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 실시 △ 공정한 경기를 위한 심판 교육 및 평가 실시
국민생활체육회,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2013.8.27)	△ 불합리한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및 보완 △ 회원단체 직무교육 및 회계감사 강화 △ 객관적 성과평가 실시
스포츠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공정체육센터 발족 (2013.11.19)	△ 체육계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실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2016.7.14)	△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 개선 △ 경기실적정보 관리 및 입학비리 처벌 강화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2019.12.26)	△ 회원종목단체 회계감사 의무규정 명문화 △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 기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2) 공정한 경기운용을 위한 심판 교육 및 평가 실시

대한체육회 소속의 경기단체가 추천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성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가 개설된다. 먼저 2013년 9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 첫 번째 심판아카데미가 개설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와 심판등록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판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기단체의 심판 활동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종목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경기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 위의 제도를 통해 투명한 경기진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⁶³⁾(2013년)

국민생활체육회는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리와 부정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등 유례없는 쇄신활동으로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 불합리한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및 보완

단체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스포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생활체육계에 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기 제한을 두었으며 이는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단체의 운영에 있어 창의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과거 스포츠 비리에 관여된 자는 회장, 임원 등 후보 등록을 막고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승인요건에 공직자 윤리강령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2) 회원단체 직무교육 및 회계감사 강화

단체의 예산 집행내역과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 경영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을 반드시 회계전문가로 구성하고 회계 관련 업무를 회계사에 위탁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지출결의 등 세무회계 교육을 연 2회 진행토록 하였으며 모든 회원단체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회원단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감사를 통한 비리 관련자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체육계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3) 객관적 성과 평가 실시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포상과 단체지위의 강등 등 불이익을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를 회장의 리더십, 경영효율화, 사업활동 및 성과 등으로 구분하고 리더십 부분에서는 윤리 및 공정성 지표를 확대하였다.

63) 국민생활체육회,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보도자료, 2013. 11.

다. 스포츠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공정체육센터 발족⁶⁴⁾(2013년)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계의 관행적인 비리, 파벌, 편파판정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체육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기존 감사실, 선수권익보호팀, 클린스포츠TF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체육계 비리, 불공정 행위 및 선수폭력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담 업무기구인 공정체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1) 체육계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실시

공정체육센터는 규정/제도개혁팀, 감사실, 특별조사팀 등 3개 부서를 통해 ① 대한체육회 소속단체의 불공정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및 감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②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③ 스포츠 청렴 교육 및 반부패 관련 각종 정보제공, ④ 승부조작, 편파판정 인권 침해 등 윤리 및 공정 위반 행위 조사, ⑤ 대한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불공정성 여부 검토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⁶⁵⁾(2016년)

대한체육회는 2017년도 대학 입시철을 대비해 다시 한 번 입학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체육특기자 관련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회원종목단체의 경기 동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단체가 보유 중인 경기 영상을 취합하여 선수, 지도자, 학부모, 입학관계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 개선

대회에 출전한 각 선수의 경기실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기 영상을 연계하기로 하고, 경기실적의 원본을 검증할 때 대학 입시 관련자가 대회의 상세정보 및 경기영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64) 대한체육회, “스포츠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공정체육센터 발족”, 보도자료, 2013.11.19.

65) 대한체육회,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16.07.14.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체육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이루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대상으로 경기영상 촬영 및 영상편집 전문가, 경기실적 입력책임자를 투입하는 등 경기영상 및 경기실적 등록관리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경기실적의 체계적 관리로 선수의 객관적 평가자료 제공에 이바지하였다.

2) 경기실적정보 관리 및 입학비리 처벌 강화

단체종목에서 선수 개인의 기여도 표시 등 경기실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다. 또한, 각 대회별 참가인원, 대회 수준 등 대회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으며, 경기영상 및 관련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선수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교 운동부에는 대회 출전과 신입생 선발을 정지시키고 지원 중인 예산이 있다면 예산지원을 중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하였고,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 선수 등 관련자는 영구제명하도록 하였다.

마.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⁶⁶⁾(2019년)

대한체육회는 법률 및 체육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조직하여,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 정비를 실시하였다.

1) 회원종목단체 회계감사 의무규정 명문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제도개선)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대한체육회 소속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배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예산 집행 관련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스포츠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의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66)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보도자료, 2019.12.26.

2)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소속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적 운영을 위해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관계 등의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강화하였다.

3) 기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대한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등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준용 법령 및 규정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다.

제2절 |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1. 국민체육진흥법의 역할과 변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초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인구의 확장, 86아시아게임·88서울올림픽 개최, 2002 한일 FIFA월드컵대회 등으로 인한 스포츠 인프라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 및 체육계의 변화에 대응하며 다수의 개정을 통해 체육계의 모범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⁷⁾ 이에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비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비리 척결을 꾀하고 있다.

2021년 2월 19일 개정에는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를

67) 김종백, 신현규,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체성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05, 4., 8면.

척결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조(목적)⁶⁸⁾에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하였다. 또한, 동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스포츠 비리를 유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공무원 파견 요청권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조사)을 신설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직장운동경기부 내 (성)폭력,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체 합숙 훈련에 대하여 선수 개인의 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68)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동 법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경기 관련자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고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수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

-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로 하여금 선수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스포츠 비리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등에게 부과된 징계정보, 수상이력, 소속 등 세부 인적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스포츠산업 진흥법 : 프로스포츠 분야

지난 2021년 6월, 전(前)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소속의 윤성환 선수가 고의 4구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불법스포츠도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져 프로야구계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 종목을 막론하고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승부조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입찰비리 등의 조직 사유화 및 뇌물 수수, 불법 약물 등에 의한 도핑 등 프로스포츠에서도 스포츠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산업⁶⁹⁾, 즉 프로스포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비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이지만 제정 당시 스포츠산업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및 체육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4월 6일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수들은 스포츠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의 권익 보호가 필수 요소이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동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승부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69)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기본계획에 프로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3. 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년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현재의 통합단체로 변모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고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등 체육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올림픽운동을 보호, 증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올림픽주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개정 2017. 6. 8.>

③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약칭 OCA)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④ 체육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비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올림픽헌장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올림픽헌장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2.>

⑥ 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등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3.>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9호7)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단체 및 지역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7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대한체육회 정관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3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⁷¹⁾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주체 전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⁷²⁾ 위원회는 체육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체육회 소속 및 관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단체 임원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71) 2016년 3월 21일 제정된 후 총 12회의 개정과 2회의 전부개정을 거치고 2021년 2월 4일 최종 개정에 이르렀다. 회원단체(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으로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72) 스포츠 비리는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입시비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입시비리(진학을 위한 승부조작 포함)에서 학부모가 스포츠 비리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경우 이 외에는 대부분 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이 사건의 당사자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에서는 단체운영, 대회진행 등에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비위사건, 입학비리,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불법도박, 부정참가 및 대회진행 방해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사 및 징계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비리 혐의자가 사임, 임기만료, 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지도자, 선수, 심판 및 임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구분된다. 중징계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나뉜다. 또한, 비위 사실이 밝혀진 운동부에는 출전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2. 경징계 : 견책
-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징계 사안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 장관 이상의 표창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같이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입학비리,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절 | 스포츠계 부패/비리 관련 국내외 기관 현황

1. 국내 기관 현황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 관련 국내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2014.1.22. 설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스포츠 4대악을 척결하고 스포츠 비리근절 대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그림 5-1] 스포츠 공정 관련 기관 관계도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센터는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인지에 의한 조사를 진행한다. 센터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 관련 비리를 신고할

73) 2014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체육계에서 없애야 할 4대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출범한다. 센터는 2015년 6월 12일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수 있는 창구로서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는 각종 비정상 행위 및 관행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⁷⁴⁾ 신고자는 전화, e-mail,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 사건에 관한 설명 또는 자료 요청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감사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⁷⁵⁾

나. 클린스포츠센터(2017.1.25. 설치)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2005년 7월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11월 '스포츠인권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6년 3월 '스포츠인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스포츠인권센터와는 별개로 2017년 1월 25일부터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부정 및 위법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클린스포츠센터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 및 그 단체의 임직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등 회원과 각급 운동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위법 또는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실시한다. 센터는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등과 관련한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이로 인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 신고의 접수가 없이 센터가 인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또한,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도 실시한다.⁷⁶⁾

다. 체육인 지원센터(2018.9.13. 설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3년 6월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74)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백서", 2020.2. 557면.

7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6)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고하기 위해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2018년 4월, 현재의 ‘체육인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대회 이후 장애인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2의 인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센터는 장애인선수 권익 보호와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 업무 등 장애인 선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총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체육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기능을 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체육인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이러하다.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익 관련 교육 및 홍보,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센터에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하여 권익보호 상담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선수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운동에만 전념하여 학업과 자기 개발을 위한 기회 및 시간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가 힘든 장애인 체육인에게 전문진로상담사 2명이 센터에 상주하여 1:1 진로상담 및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육인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인선수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은퇴 선수의 취업지원을 위한 체육전문가 및 체육행정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라.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2012.4.30. 설치)

정부는 2012년 야구, 축구 및 배구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한 경기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일환으로써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합콜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 입학, 조직, 회계, (성)폭력, 기타 민원 등의 영역에 대한 민원 접수 및 해결을 통해 스포츠계의 자정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불법행위자 제보 관련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비리 관련 신고 요령 및 포상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⁷⁷⁾

마. 스포츠윤리센터(2020.8.5. 설치)

계속되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권고(1차 권고)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2020년 8월 5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정서, 법률 등 종합적 지원을 하며,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 교류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기존 스포츠 비리 관련 기구의 통합 및 독립적 지위 획득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의거한 법정 기구로서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얻어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2)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사업⁷⁸⁾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① 체육계 비리 전반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②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 요구, ③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④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와 외부전문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위해 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스포츠윤리 및 인권에 관한 인식개선, ②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77)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2020, 66면 이하.

78)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최종방문일: 2021.10.21.)

③ 스포츠윤리 및 인권향상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①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에 방 교육 실시, ②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③ 각종 홍보자료(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④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체육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방안으로 ①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징계이력관리, ②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2. 국외 기관 참조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 관련 국외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International Committee for Fair Play

1963년 유네스코와 여러 국제 스포츠 관리 기구에 의해 창립된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Fair Play)는 전 세계적으로 페어플레이⁷⁹⁾ 정신을 알리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스포츠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기구를 대상으로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페어플레이상⁸⁰⁾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4년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s, YOG)을 개최하여 올림픽, 사회적 책임, 스포츠 기술 개발, 자기표현 및 웰빙,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조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Universiades - World University Games)를 통해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79) 위원회는 페어플레이를 스포츠의 필수요소이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예로써 공정한 경쟁, 존중, 우정, 팀 정신, 평등 등 스포츠의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80) INTERNATIONAL FAIR PLAY COMMITTEE 홈페이지, <http://www.fairplayinternational.org/home> (최종방문일: 2021.10.21.)

나. Canadian Center for Ethics in Sport(CCES)

CCES는 진정한 스포츠가 개인, 지역 및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 기반 및 원칙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안전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스포츠를 추구하고, 스포츠 Integrity를 추구하고자 한다. CCES의 이사회는 캐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스포츠, 의학, 법률, 윤리 등과 같은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로는 윤리 및 정책 상담 지원, 조직 가치 개발, 윤리 문제 검토 등의 윤리 관련 서비스와 소변 및 혈액 샘플 서비스, 도핑 관련 물질에 대한 상담 등의 도핑 방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업무의 진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 교육 및 인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감사 및 평가 등의 사무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연간 보고서⁸¹⁾를 제작함으로써 스포츠 윤리,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 Australian Sport Commission(ASC)

1989년 호주스포츠위원회법(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ct 1989)에 따라 1985년에 설립된 호주스포츠위원회(ASC)는 호주인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고 스포츠 참여와 이를 통한 강력한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²⁾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호주인, 견고하게 연결된 스포츠산업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국제적 스포츠 성과를 통한 애국심 및 영감 창출을 통해 스포츠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⁸³⁾ ASC 주도로 Integrity Sports, Member Protection Policy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ntegrity Sports를 스포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 윤리를 지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승부조작, 불공정 경쟁, 학대, 폭력, 차별, 도핑 등을 Integrity Sports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⁸⁴⁾ 또한, 2000년부터 스포츠 윤리를 고취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및 협회를 위한 핵심문서(Member Protection Policy)를 제작하여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법적, 윤리적 권리와 책임 및 행동 기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81) Canadian Center for Ethics in Sport 홈페이지, <<https://cces.ca>>(최종방문일: 2021.10.21.)

82) MEMBER PROTECTION POLICY, Gymnastics Australia, 2020.

83) SPORTAUS 홈페이지, <<https://www.sportaus.gov.au>>(최종방문일: 2021.10.21.)

8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운영방안 연구”, 2013.12, 26면 이하.

라. European Fair Play Movement(EFPM)

1994년 5월 유럽 14개국의 대표들이 페어플레이를 위한 유럽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년 동안 자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정성을 위한 캠페인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EFPM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EFPM는 비정부 협회로써 유럽 차원에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페어플레이를 촉진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본 기구에 속한 스포츠 단체가 주도하는 페어플레이 캠페인을 홍보, 회원국과의 교류를 통한 페어플레이 주제 선정, 회원국 간의 정기적 교류 제공 등 회원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EFPM Awards⁸⁵⁾을 수여하여 유럽에서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리고 있다.

85) European Fair Play Movement 홈페이지, <<http://www.fairplayeur.com>>(최종방문일: 2021.10.21.)

제 6 장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스포츠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남 기 연

제6장

스포츠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1. 스포츠단체 관리 주체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체부는 체육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 체육종합계획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등 국내 체육의 정책 및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문체부 내 체육정책과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⁸⁶⁾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원,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동 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문체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8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staff/staffGuide01.jsp?pDeptCode=0723000000&pTeamCD=1371773>(최종방문일: 2021.10.21.)

나. 대한체육회

엘리트 및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3월 대한체육회(KOC)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대한체육회(KSOC)⁸⁷⁾가 탄생하였다. 대한체육회⁸⁸⁾는 스포츠 시스템 혁신, 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스포츠 참여 확대,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는 권리와 의무⁸⁹⁾의 차이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로 구분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등에 관한 감사)는 대한체육회의 필요에 따라 체육회 관계단체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회원단체의 강등·제명)는 정회원단체가 정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⁹⁰⁾는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의 비위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는 소속 단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기준, 대한체육회 소속 시·도체육회 현황⁹¹⁾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총 17개의 체육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회원단체는 대한검도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골프협회 등 총 62개 단체, 준회원단체는 대한서핑협회, 대한주짓

87) 스포츠혁신위원회 7차 권고문,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2019.08.22., 12면.

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를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89)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시·도체육회 규정 제6조(시·도체육회의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단체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고, 해당 단체가 목적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단체가 가지는 의무로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지도 및 지원, 재정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등이 있다.

9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 회원종목 및 시도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91)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sports.or.kr/home/010607/0010/main.do>>(최종방문일: 2021.10.21.)

수회, 대한카라테연맹 등 총 6개 단체, 인정단체는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요가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등 총 11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⁹²⁾

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⁹³⁾는 장애인 경기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체육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을 주요 업무 및 역할로 삼고 있다.⁹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조직가맹을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로 구분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를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와 제12조(회원의 제명)에서는 소속 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2회의 부진단체로 평가하여 준가맹단체로 강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설치된 법제·상별위원회⁹⁵⁾는 장애인체육회의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법제·상별위원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속 위원회로 두고 소속 단체 및 개인의 비위행위를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시도지회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등 총 17개 단체, 정가맹단체(종목별 경기단체)는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등 총 30개 단체, 정가맹단체(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이상 2개 단체, 준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이상 1개, 인정단체는 대한장애인검도회, 대한장애인다트연맹, 대한장애인

92)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sports.or.kr/home/010612/0000/main.do>>(최종방문일: 2021.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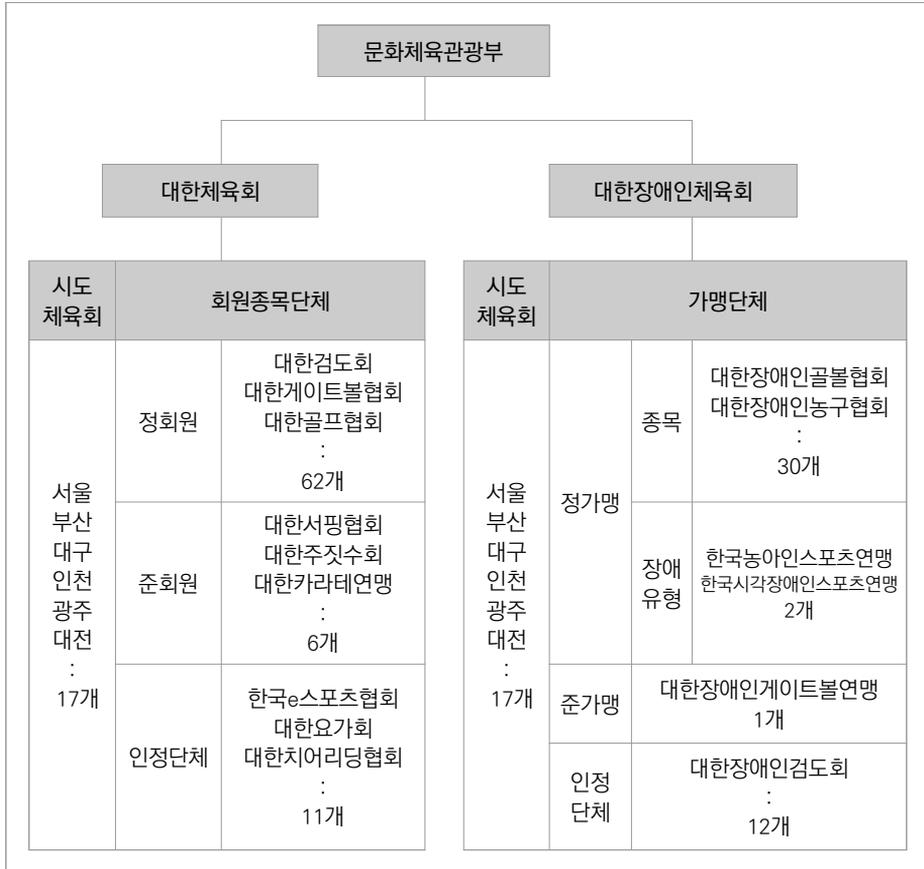
9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를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94)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npc.kr/ibuilder.do?menu_idx=22>(최종방문일: 2021.10.21.)

95)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안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 단체의 법제·상별위원회에서 최초 심의 및 의결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최초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별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제청하여 결정을 받는다.

e스포츠연맹 등 총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⁹⁶⁾

» [그림 6-1] 스포츠 단체 조직관리 현황



2.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독상 부적절 사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문체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왔다. 동 센터는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와 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 징계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 비위 행위에

96)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npc.kr/org/info.do?per_menu_idx=119&menu_idx=125&tabCnt=2>(최종방문일: 2021.10.21.)

대한 감사자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관리 단체와의 교류 미흡 등의 원인으로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가 동 센터에 접수되었음에도 신고에 대한 직접 또는 이첩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사건을 이첩한 뒤 조사 실시 및 징계처분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신고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등 스포츠 비리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⁹⁷⁾ 또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동 센터가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여 종목단체에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특정인에 대한 징계처리는 없이 다른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징계만을 실시하여 특정인을 징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⁹⁸⁾

동 센터는 2018년 1월 대한체육회 소속의 대한□□협회 임원의 비위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졌다.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한□□협회의 임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한□□협회는 임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임원의 지시를 받고 위법행위를 도운 직원만을 징계하고 이를 동 센터에 회보하였다. 동 센터는 임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본 사안을 내버려 두어⁹⁹⁾ 스포츠 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서 발생하는 부정하고 불공정한 비위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클린스포츠센터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징계당사자에게 조사를 맡긴다거나 각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동 센터는 대한△△연맹 소속의 심판과 관련하여 심판자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사건을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연맹에 이첩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하지만 소속 심판이 동 연맹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¹⁰⁰⁾

97)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16일에서 2017년 9월 25일 사이에 접수된 10건의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신고 사건이 짧게는 1년 7개월 길게는 4년 9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98)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체육단체에 징계를 통보한 10건의 사건이 최장 3년이 지나도록 조치되지 않았다.

99) 감사원,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20.2, 67면.

100) 감사원,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20.2, 68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¹⁰¹⁾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종목 및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 제43조(규정 제·개정)¹⁰²⁾에서는 산하단체의 규정을 동 규정에 따라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협회, 서울특별시 ○○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닌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으로 수정을 요구하지 않아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심을 실시하여 각각 3년 자격정지에서 1년 자격정지, 임원직이 상실되는 1년 자격정지 처분에서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6개월 자격정지로 감경처분¹⁰³⁾하여,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가. 징계요구 및 처리 등의 시스템화

스포츠 비리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비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대상의 징계이력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10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102)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103) 감사원,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 ·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20.2, 71면.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신설하여 문체부장관이 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동 규정은 문언 그대로 징계 이력에 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스포츠 비리 사항에 관한 신고에 따른 이첩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조사 결과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건의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에 관해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문체부장관이 보고 받는 대상은 스포츠 비리로 체육단체에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의 실시, 징계 절차의 확인 등 사건과 관련된 징계처분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규정 제18조(결과처리)¹⁰⁴⁾에서도 스포츠 비리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송부하고 동 센터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문체부장관에게 징계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안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신고 후 조사의 미실시, 징계요청에 대한 무응답 등 스포츠 비리로 인한 징계가 무용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에서 스포츠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현황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과정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루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제2항에서 보고 대상을 스포츠 비리

10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규정 제18조(결과처리)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센터에 송부하여야 하고, 센터는 심의결과 및 법 제18조의4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로 징계를 받은 자로 확대하고, 문체부장관이 보고 받는 대상의 범위를 징계의 결과뿐 아니라 징계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진행상황 등의 내용도 포함되도록 동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선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 ,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징계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 경감이 있을 때에는 경감이유, 징계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문체부장관의 징계요청이 발동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조사, 징계의 경감상황 등의 사항 등을 적시에 확인하고 징계에 대한 절차 및 적용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갖추어 징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스포츠 비리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의 내용에는 성별, 나이 등과 같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문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¹⁰⁵⁾하고 있다.

10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성별·나이·종목·지역·소속·자격·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 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동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 센터에서는 설립 이후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에 관해 몇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선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학부모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¹⁰⁶⁾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천대, 경기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에 대하여 투기종목(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태권도) 학생운동선수 423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강화교육 및 실태조사’¹⁰⁷⁾를 추진하였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동 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문체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가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것으로 대동소이해 보인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의 실태조사를 문체부장관과 동 센터로 그 주체만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동 센터가 문체부장관의 감독¹⁰⁸⁾하에 있다는 사실은 실태조사를

106)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실태 조사를 2021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웹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07) 스포츠윤리센터, “선제적 실태조사로 체육계 인권침해 조기 대처”, 보도자료, 2021.10.13.

108)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동 센터가 스포츠 비리 타개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설립된 만큼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한 전권을 동 센터에 위임하고 문체부장관은 본 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제2절 |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한계

지금까지 스포츠 비리 관련하여 문체부 소속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前, 스포츠 4대 약 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신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 등 다양한 기구가 스포츠 비리를 타개하기 위해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스포츠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故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2020년 8월 5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정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사업은 ① (성)폭력,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사항, 체육입시비리, 스포츠단체와 관련 있는 자의 횡령 및 배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②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③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이 있다. 신고와 관련해서는 동 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에 따르면, 누구나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그 즉시 의무적으로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에 관하여 동 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수사)에서는 ① 당사자의 출석요구 또는 진술 청취, ②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③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 법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에서 물리적 공간의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나 정지 등의 조치, 당사자 간의 접촉금지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와 피해로 인해 그 누구도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4호¹⁰⁹⁾는 동 센터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며,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 및 조사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동 센터는 인권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¹⁰⁾

인권감시관이라는 명칭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감시관의 주요 업무를 분석해 보면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 및 조사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스포츠 비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감시관의 업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스포츠 비리의 유형 중 (성)폭력에 관한 사건은 인권침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인권감시관의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조직 사유화, 입시비리 등의 스포츠 비리에 관한 조사 및 조사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은 인권감시관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동 센터는 경영기획팀, 인권대응팀, 교육홍보팀, 조사1팀(부패), 조사2팀(불공정)으로 총 5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스포츠 비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인원은 전문조사관 2인, 전직 경찰인 전문조사원 12인, 파견경찰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¹⁾ 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및 지도자(동호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는 각각 104,632명, 16,206명 총 120,838명¹¹²⁾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근거로

109)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110) '스포츠윤리센터 제1기 인권감시관'을 모집하는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매회 20명 내외의 인원이 활동하고, 주요 임무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괴롭힘, 기타 인권침해 현장 점검·보호 활동, 인권상담·교육·홍보 등이다. 인권감시관의 자격 요건으로 스포츠 인권 분야에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월 1~2회의 상담, 교육, 자문 등의 현장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며, 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인권 전문 교육 이수·경력자, 상담 및 사회복지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록 선수 경력 5년 이상의 은퇴 선수 중 인권 활동 경험자는 선발에 우대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제1기 인권감시관 모집 공고", 2021.06.23.

111)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00일, 스포츠윤리센터 활동 실적", 보도자료, 2020.11.12, 2면.

112) 스포츠 지원포털, <<https://g1.sports.or.kr/stat/stat01.do>>(최종방문일: 2021.10.21.)

보면 총 17명의 센터 조사원은 1인당 7,10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경찰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422명¹¹³⁾에 비해 무려 약 17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는 스포츠단체 임직원의 수는 제외한 것으로 이들이 포함된다면 조사관 1인의 담당 체육인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조사의 질을 보장하지 못해 결국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운영되는 인권감시관 제도의 운영범위를 체육계 현장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스포츠 비리에 대한 조사 및 조사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선안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관한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감시관 운영

이와 같이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는 한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現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스포츠윤리감시관¹¹⁴⁾으로 변경하고, 감시관의 운영범위 또한, 스포츠 비리에 관한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스포츠 비리에 대해서도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센터의 설립 목적인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센터 조사관 1인이 담당하는 체육인이 7,000명이 넘는 데서 오는 문제는 장기적

113) 경찰청, “2019 경찰통계연보”, 2020.11. 9면.

114) 2021년 제도가 처음 시작되어 관련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올해 실시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관 제도의 주요업무,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여 법적기반으로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의 전문성,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으로 조사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120,000명이 넘는 모든 체육인을 통계의 기준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의 현상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 및 비리행위를 뿌리 뽑자는 심정으로 세워진 동 센터의 설립취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스포츠단체 관련 임직원 및 심판을 제외한 120,000명의 숫자는 그 기준으로 약소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 외에 직권¹¹⁵⁾으로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¹¹⁶⁾으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직과 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부실한 조사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조치 등은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스포츠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센터가 설립된 지금 앞서 존재했었던 관련 기관들처럼 부실한 조사로 스포츠계를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 센터의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예견되는 문제적 상황은 조사 내용의 부실화, 조사 기간의 장기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첩중심의 사건처리가 실시되고, 이첩받은 체육회 관계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은 스포츠 비리의 신고 및 조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 불신으로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¹¹⁷⁾일 것이다. 이는 동 센터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신고센터 등과 같이 이미

11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117)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74건에서 197건, 84건으로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사례집”, 2016.09. 11면.

스포츠 영역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했지만 그 소임을 마치지 못하고 사라진 기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처럼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예견되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전문적인 조사와 우수조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MOU)¹¹⁸⁾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부족한 조사인력을 대처할 맞춤형 방안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동 센터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총 1,189건의 신고 및 상담¹¹⁹⁾을 접수했고, 이 중 30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요청, 수사의뢰 등 총 116개의 사건을 종결하였다.¹²⁰⁾ 이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2014년 274건 접수 후 189건 처리, 2015년 197건 접수 후 119건 처리, 2016년 6월 84건 접수 후 16건을 처리한 현황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높은 상담 및 신고접수 수치이며, 조사율이다. 동 센터가 지금과 같은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7항에서는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나, 동 센터의 정관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등에서 필수조사인력¹²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동 센터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위에서 열거한 인권감시관의 주요업무 내용, 센터의 조사인력 현황에 관한 문제점 외에도 문체부로부터 재정지원¹²²⁾을 받고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¹²³⁾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118)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보도자료, 2020.09.23.

119)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은 276건, 신고는 184건을 접수하였다.

120)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2021.08.05., 2면.

121)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센터의 조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22)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은 국고보조율 100%(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소관 및 실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2권”, 2021.01, 264면.

12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와의 차이점이 없어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동 센터의 소관 부처를 문체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¹²⁴⁾과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스포츠 분야에도 도입하자는 주장¹²⁵⁾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3절 |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1.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스포츠 비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자 스스로의 인성, 환경 등의 사유로 일어난 일종의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해 왔다. 반면 관련 스포츠 단체는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통한 처벌을 진행하고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스포츠 비리 사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조직사유화로 대표되는 스포츠 비리의 경우 스포츠단체의 조직구조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승부조작, 횡령 및 배임 등의 스포츠 비리로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¹²⁶⁾ 스포츠 비리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비리에 관하여 오직 가해자의 징계처분만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 책임으로만 치부하여 소위 꼬리자르기식의 사건 마무리에 급급한 해결방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스포츠 비리 근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스포츠 비리와 관련한 단체의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⁷⁾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¹²⁸⁾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124) 박상현,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기대효과 분석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제6호, 한국체육학회, 2020, 456면 이하.

125) 남기연, 유소미,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179면 이하.

126)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백서", 2020.02, 556면.

127) 남기연, 김대희, "지도자와 심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87면 이하.

128)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한 자'에게 타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비리에 있어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① 스포츠단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사이의 사용관계, ② 사무집행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사용관계라 함은 사용자가 타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는 관계를 말하고 이는 사실상의 지휘 및 감독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¹²⁹⁾ 스포츠단체와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의 스포츠 비리 당사자 사이의 사용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는 예를 들어 구단, 협회 등 스포츠단체와 감독, 코치 등 지도자와의 사용관계는 지도자의 선임에 있어 단체가 원하는 목표(프로구단의 목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경기력으로 우승을 하는 것, 시도단체의 목표는 전국체전 등의 대회에서 우승을 통한 소속 시도 지역을 홍보하는 것, 종목단체의 목표는 올림픽 등의 세계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 등)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단체가 지도자를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우승 등 경기결과를 놓고 지도자의 재계약, 재신임을 논하는 경향은 단체와 지도자의 사용관계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시도 및 종목의 스포츠단체와 임직원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위해 선발되는 직원에 대해 당연한 사용관계를 가지고, 이사회 등에 소속된 임원 또한, 단체의 운영 목적을 위해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간의 사용관계 또한,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외형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기만 하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다.¹³⁰⁾ 감독, 코치 등 지도자의 직무¹³¹⁾는 소속 팀과 선수가 가지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9) 송덕수, "신민법강의", (주)박영사, 2021.01.05, 1421면 이하.

13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31)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4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의 건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선수의 기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도와 효율적 경기운영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감독이 승부조작을 위해 실력이 모자란 선수를 선발명단에 올리는 행위는 감독의 직무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앞에서 서술된 스포츠 비리 사례 중 임원이 자신과 관련된 회사를 이용하여 협회의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에서 임원은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로 운영비의 사용을 의결하는 만큼 임원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방안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체육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5조(징계대상) 제1항에서는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등 비위의 사건, 체육 관련 입학비리 사건, (성)폭력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속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비위행위로부터 스포츠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동 규정 제25조(징계대상)에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현행	개정안
<p>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p>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p>⑥ 징계혐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체육회 관계단체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규정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동 규정에 스포츠단체의 소속 회원(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동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체육회 관계단체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신설하여 스포츠 비리에 있어서 스포츠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스포츠단체 스스로가 소속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4절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정비

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징계기준 현황

동 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직권남용, 입학비리, 승부조작 등 동 규정 제25조(징계대상)에서 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표 1(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 중 4대 스포츠 비리와 관련 있는 규정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제명
	운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위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배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체육 관련 입학비리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 있는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는 행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제명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징계기준의 경미성, 중대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기준(협의금액 100만 원 이상)에 나타나 있거나 입시비리와 같이 중대성과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한 징계(영구제명)가 내려질 때에는 징계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경우의 판단기준이 명확해 징계수위를 정하는데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에 관한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경우의 판단기준이 없어 관련 스포츠 비리 행위를 징계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표 6-1] 4대 스포츠계 부패 중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경우의 판단기준 유무 여부

유형	판단기준 유무	내용
조직사유화	×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	100만 원
입시비리	×	
승부조작, 편파판정	○	심판매수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선 방안

스포츠 비리 중 대표사례로 손꼽히는 조직사유화는 다른 유형의 스포츠 비위 행위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조직사유화를 통해 운영비, 훈련비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이 이루어지고¹³²⁾, 스포츠단체의 이사회, 심판위원회, 선수위원회 등을 장악한 일부 세력에 의해 승부조작¹³³⁾과 편파판정, 입시비리¹³⁴⁾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직사유화의 끝이 횡령 및 배임, 입시비리, 승부조작과 같은 스포츠 비리 행위로 귀결되는 까닭인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는 조직사유화에 대한 정확한 위반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이 조직사유화에 근접한 위반행위로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방점을 두고 고려할 때, 조직사유화를 창구로 다른 유형의 스포츠 비리를 자행한 경우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징계 또는 승부조작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면 결국 조직사유화라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직사유화라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징계는 아니므로 자칫 조직사유화를 방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에 대해서는 일반기준에서 심판매수를 통한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주요 혐의내용으로 예시함으로써 이러한 경우는 중대한 경우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조작의 경우 선후배 사이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인적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¹³⁵⁾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1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20면.

13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96면.

13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106면.

13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2016.09, 82면.

경미함과 중대함을 구분할지에 관해 그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처럼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의 수범자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인 스포츠공정위원회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세우는 방안 중 하나는 지금까지 축적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에 대한 징계결정을 분석하여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경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시를 추출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815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¹³⁶⁾ 이 중 조직사유화와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을 이유로 징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혐의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6) 전양준, 김상겸,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05, 170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황 지 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1절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중의 하나로, 본 연구의 특색은 스포츠계 부패 문제 혹은 스포츠비리, 더 나아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의 근저에 이른바 '조직사유화'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사유화란 개념에 다소의 모호함이 없지는 않지만, 본고에서는 조직사유화 개념을 '스포츠 관련 단체 및 조직이 특정 인물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의 영향력으로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 및 이해관계인의 안위와 재산의 축적, 권력의 유지 등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제2장 참조)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 다른 종류의 부패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적발, 처벌 과정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조직사유화의 문제는 언론보도나 각종 감사 자료 등에서 여러 다양한 사례로 밝혀지기도 하였고(제2장),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으로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제3장),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부당한 심판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비리행위를 신고해도 이를 무력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다는 점(제4장)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사유화의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 종류의 청렴도 조사에서 스포츠계의 반부패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제2장)와도 맞물린다.

이러한 현실 파악에 대응하여 본고에서는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시 기능강화는 단체운영의 시스템화, 특히 징계 시스템의 정비를 촉구한 것이고,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는 조직사유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오직 가해자 개인의 징계처분만으로 사건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스포츠비리와 관련한 단체의 조직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조직사유화에 대한 정확한 위반 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로 생긴 스포츠윤리센터의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좀 더 효율적인 스포츠비리 방지 기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모든 논의들은 우리나라 체육단체들의 사적 성격을 줄이고 공적 성격을 늘려나가자는 제안임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운영방식으로 변모해 나아가자는 제안으로 요약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 연구의 한계

스포츠계의 부패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어려운 연구이다. 우선 생각보다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하다. 기본적으로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가 있고,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도 학교체육과 일반 아마추어체육이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이 있다. 이 모든 다양한 분야가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각 하위분야마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부패 혹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과 특성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는 양상도 모두 다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승부조작의 경우만 예로 들더라도, 프로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과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있어서의 승부조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시간적인 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인력의 측면에서 모두 역량이 부족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에 있어 프로스포츠 종사자들을 포함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고, 좀 더 많은 인원, 좀 더 다양한 종목을 포괄하지도 못하였다. 대책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프로 스포츠와 전체 종목을 아우르는 대책을 다루었음에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에서는 그와 같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의 폭이 작아졌다는 사실도 본 연구가 가진 큰 한계 중의 하나라고 시인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향후 여건이 된다면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개의 세부적인 연구가 수행될 경우 본 연구와 같은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문헌 단행본·논문·자료집·연보 등]

- 감사원, 「감사보고서 -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2020.02.
- 경찰청, 「2019 경찰통계연보」, 2020.11.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2020.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11.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결과 보고서」, 한국
리서치 닐슨코리아 글로벌리서치,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13-2020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201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2019.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권」, 2021.01.
- 국제스포츠재단, 「클린스포츠 활성화 방안」, 집중조감 2016-5호, 2016.10.
- 김기탁, “스포츠 부패에 대한 이해: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적 고찰”, 한국체육정책
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18.
- 조정훈·이종영,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10년, 반성과 조언”, 스포츠사이언스
제33권 제1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15.
- 김대희, “대학스포츠 선수선발과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트와 법 제16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 김대희,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비리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김미숙·박영옥·성문정·김홍식·주종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체육정책 개발」, 체육과
학연구원, 2010.
- 김미숙·성문정·한태룡,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
개발원, 2014.
- 김미숙·김대희·김양례·남상우·성문정·정현우·한태룡·김일광·윤동식, 「대한체육회 회

- 원종목단체 심판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 김상겸, “스포츠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 김상범·허 용,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김영호, “문헌고찰을 통한 스포츠 부정부패의 개념체계와 해석적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6.
- 김영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스포츠윤리 환경모순: 승부조작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21.
- 김잔디·김대희,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 김종백·신현규,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체성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05.
- 김혁·최성주·김중호, “스포츠심판 편파판정과 개선방안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5권 제5호, 한국체육과학회, 2016.
-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 제13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11.
- 남기연·김대희, “지도자의 심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남기연·유소미,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문지태·김상겸,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 문형구·한종희·이민호·김성호, 「학교운동부 운영업무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 한국윤리전략연구원, 2008.
- 박상현,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기대효과 분석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제6호, 한국체육학회, 2020.
- 박선영·박복순·고현승·김현아·정지원,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9.
- 박주한, “철인3종경기 폭력사건의 원인과 근절을 위한 과제(고 최숙현 선수 사례를

-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8권 제4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20.
- 서희진, “스포츠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스포츠사회학적 접근”, 2011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1.
- 서희진, “스포츠에서의 부정부패의 전개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9.
- 성문정·김경원·박재우·김미숙, 「유럽국가의 학교·생활·엘리트체육간 연계운영 실태 분석: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원, 2009.
- 성문정·김미숙·김대희,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운영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13.
- 손석정,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4판, 박영사, 2021.
- 안재찬·김지혁,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어제와 오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체육철학회, 2020.
- 윤석민,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의 인권 측정: 통합연구」, 2017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7.
- 이미정·김영택·이인선·동제연·홍연주,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방법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
- 이창영,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 코칭능력개발지 제8권 제4호,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06.
- 이현정,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및 양형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학회, 2015.
- 전양준·김상겸,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 정배근, “스포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상 특별 취급의 정당화 여부와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 정윤영·김병준·천성민, “엘리트 운동선수의 선수정체성 구성개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21.
- 정태린·권관배·김창우, “대한공수도연맹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조직사유화와 불법행위

- 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16.
- 정혜원·권수현·장안식,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 정혜원·강지현·손누리, 「경기도 비장애인선수 스포츠인권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 정혜원·정지연, 「경기도 장애인선수 스포츠인권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 체육단체 관계자 편」, 2016.
- 한승백, “스포츠계의 공정 이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스포츠과학 제153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 한유진·고은정·이유리·한준혜·김미옥·김대희·조현주,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 한태룡,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2011.
- 허현미,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인권 측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0.
- 황지태·최진욱·박중훈·박진아·최원석,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국내정보 보도자료·신문기사·인터넷 자료·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43”, 2011.12.14.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권익위,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2012.11.26.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3년 공공기관 청렴도 7.86점, 예년과 동일”, 2013.12.1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7.78점, 전년대비 소폭 하락”, 2014.12.03.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7.89점, 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 2015.12.0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 2016.12.07.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 2017.12.06.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어”, 2018.12.05.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2019.12.0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2020.12.09.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단체 비리근절 대책 추진”, 2013.08.07.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스포츠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공정체육센터 발족”, 2013.11.19.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설명회 개최”, 2016.07.14.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2019.12.26.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 지속가능 개혁 추진”, 2014.01.28.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조금 횡령 및 협회 권한 남용한 사익 추구에 철폐’, 2016.02.1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2016.03.15.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 적발’, 2016.10.13.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프로야구 비리 관련 수사 의뢰’, 2017.07.1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출범”, 2017.10.3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18.05.23.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2019.02.08.
-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2020.09.23.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출범 100일, 스포츠윤리센터 활동 실적”, 2020.11.12.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추진 성과”, 2020.12.31.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21.08.05.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선제적 실태조사로 체육계 인권침해 조기 대처”,
2021.10.13.

한국대학신문 2021.01.28.,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교수 4명 1심 실형.... “평가
공정성 해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3753>,
최종검색 2021.10.13.

한겨레 2021.02.04., “‘대학 입시비리’ 대학야구연맹 간부...검찰은 무혐의, 협회는 영구
제명”,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81802.html>, 최종검색
2021.10.13.

조선일보 2021.10.12., “외면받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https://news.v.daum.net/v/20211012060042000>, 최종검색 2021.10.1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20210.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2017.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202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1.

대한체육회, 정관, 2021.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10.0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7차 권고문,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 2019.08.22.

[해외정보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Canadian Center for Ethics in Sport 홈페이지, <https://cces.ca/>

EUROPEAN FAIR PLAY MOVEMENT 홈페이지, <http://www.fairplayeur.com>

International Fair Play Committee 홈페이지, <http://www.fairplayinternational.org/home>

MEMBER PROTECTION POLICY, Gymnastics Australia, 2020.

Abstract



Corruption Practices in Sports and Related System Improvements

Hwang, Ji-Tae·Nam, Kiyeon·Lee, Youn-young

Based on analysis on the concept and types of malpractice or corruption in sport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various literature data and press releases. It also tried to examine current corruption practices in sports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those engaged in sports industry.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orruption-related laws, policies and organizations in sports and suggest a plan to build fair and transparent sports environments.

First, in chapter 2,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sports was redefined and categorized. Then, press releases on such corruption were examined by each category (overseas cases were also examined for comparison). In addition, various statistical data were quoted to analyze such corruption practices from a multi-perspective.

In chapter 3,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analyzed. The goal of the survey was to examine how much athletes, coaches, referees and sports administrators are aware of the severity of such corruption, each team's integrity, reporting, uncovering & punishment of corruptive acts and anti-corruption systems.

In chapter 4, the results of an in-depth interview with those from sports industry were described. The interviewees we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athletes, coaches, referees, sports administrators. There was a Q&A session on key topics

such as organization privatization, school connection issue, college admission bribery, unfair call and sports manipulation.

In chapter 5, anti-corruption policie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were reviewed,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Furthermore, the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anti-bribery and corruption in sports and their roles were examined.

In chapter 6, problems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current anti-corruption-related laws, policies and organizations were examined. To resolve such problems, the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liminate bribery and corruption in sports by enhanc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ports organizations, duties & roles of Sports Ethics Center and sports organizations' responsibilities and improv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air Play Commission of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In chapter 7, lastly, the study was summed up, and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B3.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혹은 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순위 선택)

1순위	_____ 번
2순위	_____ 번

- ①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 ②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 외박 제한 등)
- ③ 승부조작
- ④ 편파판정
- ⑤ 기 타 (_____)
- ⑥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기 사항과 관련이 없음 (SQ1의 4) 스포츠행태평가 응답자만 보기 제시) → 문C1로

문B3-1.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B3-2.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시간 외 운동, 식사선택권, 외출·외박 제한 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B3-3.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승부조작"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B3-4. 귀하께서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에서, "편파판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B3-5. 귀하의 고교 시절 소속 팀에서,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심각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교시절 소속팀이 없거나 운동선수를 한 적이 없음 (SQ1의 ④ 스포츠행태평가만 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 다음은 체육계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D1. 아래는 체육계 내의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알고 있다
1) 스포츠윤리센터	①	②	③	④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①	②	③	④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②	③	④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①	②	③	④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①	②	③	④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①	②	③	④

문D2. [D1 1)-6)에서 3, 4 응답자만]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있었다고 보십니까)?

항목	전혀 효과없다	별로 효과없다	약간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잘 모르겠다
1) 스포츠윤리센터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①	②	③	④	⑤
3)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①	②	③	④	⑤
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①	②	③	④	⑤

문D3. 체육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번
2순위	_____ 번

- ① 체육계 비리·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 ② 비리·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 운영
- ③ 체육단체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 ④ 비리·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 ⑤ 체육계 비리 행위 등 체육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 ⑥ 기 타 ()

E. 다음에 이어지는 예시들(문E1~문E3 관련)은 생각하기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예시들입니다. 각각의 예시들에 대한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문E1. 관련 예시

어떤 체육단체에서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상위단체에 청구하는데, 100만 원짜리 용품이라고 서류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이었다. 즉 20만 원의 차액이 남았다.

문E1-1. 귀하께서는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1-2.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누군가(지도자 또는 회계담당자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1-3. 위 예시에서 남은 20만 원을 소속 단체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2. 관련 예시

어떤 학교의 어떤 종목 체육팀의 학부모들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에게 추가 운동을 부탁하며 학부모들끼리 1인당 50만 원씩 모아 총 500만 원을 감독에게 전달하였다.

문E2-1. 귀하께서는 위 예시의 행동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2-2.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지도자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2-3. 위 예시에서 500만 원을 체육팀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3. 관련 예시

A고등학교 OO운동부는 올해 이미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B고등학교팀은 한 번도 전국대회에서 상위에 오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를 A팀과 앞두고 있고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3위에 오른다. 그리고 3위에 올라야만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B고등학교팀의 지도자는 자신의 대학 후배인 A고등학교 감독에게 은밀하게 부탁하였고 A고등학교 감독은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여 결국 B팀이 승리하였다.

문E3-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3-2. 귀하께서는 위 예시에서 B팀 지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문E3-3. 귀하께서는 위 예시에서 A팀 감독의 행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다.
- ②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다.
- ④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행동이다.

끝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G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GD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_____세)

- ① 20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GD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전남
⑭ 전북
⑮ 경남
⑯ 경북
⑰ 제주

GD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중퇴 및 재학 포함)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하 ③ 대학원 이상

GDQ5. [SQ1-1의 ② 응답자 또는 SQ의 ②, ③, ④ 응답자만]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GDQ6. [SQ1-1의 ② 응답자 또는 SQ의 ②, ③, ④ 응답자만] 귀하의 한 달 평균 소득(세전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400만 원 미만 ④ 400-600만 원 미만
⑤ 600-800만 원 미만 ⑥ 800-1000만 원 미만
⑦ 1000-1500만 원 미만 ⑧ 1500만 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 체육계 문제점에 대한 젊은 체육인들의 서면 답변

제4장의 심층면접과는 별도로, 익명의 몇몇 젊은 체육인들이 심층면접 대신 서면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체육계의 문제점들을 연구진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부록에 첨부하고자 한다.

[제1답변자, 20대]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 문제점 및 이유

1)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체육전공자 이외 일반인들의 진입

* 낮은 진입장벽으로 체육계 일자리 및 전문성 확보 차질

- 국가자격증(면허증)이 있어야 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보건의료 계열의 경우, 면허증 취득 조건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과정 이수 및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증이 발급되면 졸업 후 본인 직무에 맞게 취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아주 전문성이 강함. 반면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경우는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전공자들 외에 일반인들도 지원 및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계의 희소가치와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생김.
- 일례로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체육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센터에 비교적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체육전공자들의 일자리마저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 또한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전문성 검증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생김.

2) 체육전공자의 대학 졸업 후 취업 문제

* 체육계 직종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처우에 관한 문제

- 체육전공자들이 2년, 4년 동안 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려 할 때, 시·군 체육회나, 관내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안정성과 처우가 보장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취업 준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일례로 스포츠센터, 일반피트니스센터, 국민체력 100 (체력측정사, 건강운동관리사), 수영장, 선수부 코치, 감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처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3) 체육계 전문 직무 및 직업 개발

*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체육지도자를 보건 의료계열 종사자들처럼 전문직 인식개선

- 건강운동관리사(구 운동처방사 1급) 자격증은 체육전공자들에게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자격증임.
- 체육계 국가자격증은 취득 후,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임. 그렇기 때문에 건강운동관리사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전문직업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시켜 보건소나 병원, 체육회, 공기관 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체육인들이 당당하게 전문 인력으로 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제2답변자, 연령 정보 없음]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의 문제점

- 우선 먼저 크게 보면 체육계의 문제점은 정말 많다. 앞서 말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체육인들의 일터에서도 잘못된 관행, 악습, 폭행, 욕설, 갑질, 채용비리, 상하관계, 부당징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강력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응하여 처리를 하면 뿌리째 뽑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체육계 속에서는 갑질 등을 신고하더라도 안일한 대처, 낮은 징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체육계가 우리나라의 정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여 구조적인 환경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체육계에서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일명 높은 직위의 사람들에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줄만 잘 타면 빠르게 진급하고, 잘못 서면 좌천당하고 무시 받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체육계는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만 변화하는 척 하지만 그 내부에는 아직까지도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인지도 급격하게 바꾸어버리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이 한 번에 터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뿌리째 뽑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체육계에 높은 사람들이 모두 정치와 연관이 되어서 그럴까? 많은 의문이 든다.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아직까지의 체육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점차 없애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 엘리트 체육을 예로 들면 체육이 생활체육이 되어 되고 그리고 예전 국가 개발 단계에서는 성적을 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폭력, 특히 성폭력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아직도 체육계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 이번에 성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성적을 잘 내고 있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시대 사람들과 지금의 학생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만큼 체육계에는 보수적인 관행 및 생각을 가진 인원들이 많고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 체육을 온전히 체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정부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을 인지하고 급격하게 바꾸어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이 한 번에 터질 수 있어서 전부 암묵적으로 내부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및 징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각각의 체육계에 위치하고 있는 리더들의 리더십 (리더의 자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끌어 주는 것이 리더인데 체육계의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밑에 직원들을 해아려주지 않고 아직까지 단순히 일만 시키고 구시대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체육계의 회장 측, 대한체육회를 예만 들어도 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런 애매한 제도가 체육회의 리더십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체육계의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체육을 정치로 이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체육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3답변자, 20대]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의 문제점

① 엘리트 체육에 편향된 체육

- 2010년대에 엘리트 체육을 경험하며 자라온 체육인으로서,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시선으로 보면 '정말 무식하게 운동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의 시스템은 프로선수가 아니면 제2의 대안이 없었고, 2021년인 지금도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제자리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 관계로만 보았을 때는 정말 앙숙이지만, 일본 체육의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교류한 경험이 있는데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취미로 즐기는 친구들이었고 야구부라는 느낌보다는 동아리에 가까웠습니다. 공부가 1이고 야구가 2인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야구부가 거의 모든 학교마다 있었고 그 중에서 특출난 선수들만 전통이 깊은 야구부가 있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여 프로 선수를 목표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는 취미 활동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야구가 아니라도 각자 목표가 다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좀 더 파격적으로 변화하여 학교 동아리 팀 위주로 운영하다가 재능이 있고 특출난 선수들만 이어가고 나머지는 각자의 꿈을 찾아 지금처럼 체육을 그만두고 방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② 비 선수출신 및 비전공자도 취득하기 쉬운 지도자 자격증

- 선수 경험 및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쉽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니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 그거 따는 건 개나 소나 다 하지.'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게 제 주변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공지식이 없는 비선수 출신 및 비전공자들이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우후죽순 일어났고 수박 겉핥기 정도의 시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체육계의 시선이 더 안 좋게 비추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들이 많이 생기니 체육 선수출신 및 전공자들은 갈 곳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입장벽을 높여 양질의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체육인들이 일어설 곳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든 빨리빨리, 좋은 결과를 바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금 같은 체제가 뿌리 깊게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종목인 야구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리그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긴 MLB, NPB 리그에 비교했을 때 물론 실력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갭 차이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장점이 맞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습이 더 많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성적을 위주로 한 체육 시스템 체계로 인하여 내부적인 악습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장 큼니다.

[제4답변자, 28세]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 문제점

(1) 학교 체육

- 학교 체육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체육 교육과정,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체육 속에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속에는 항상 신체적, 점진적,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더불어 전인적 인격형성을 목표로 체육을 지도한다. 스포츠의 가치는 학술적으로는 구체적 개념을 갖춰가고 있으나 아직까지의 학교 내에서의 인격 및 인권은 승리를 위한 선택적 가치로 전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이러한 전인적 인격 형성을 위해 과연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체육을 지도하고 있을까? 체육인으로 살아오면서 봐왔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아나공'¹³⁷⁾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수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학교체육 교육 속에서의 폭력, 성폭력, 승리지상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현장 및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체육계열 대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론적인 체육지식과 스포츠 현장에서의 실기능력을 주로 교육한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사 및 지도자, 시설, 장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아직까지도 체육 대학에서 입시비리, 학교 내 부조리, 악습, 선후배 상하관계 등 이러한 것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구시대부터 내려오는 체육계의 문제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온 대학교 인데 이러한 일을 겪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학교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구시대적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전 시대의 체육인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러한 관행 및 악습은 뿌리째 뽑혀나가야 한다.

(2) 생활체육

- 생활 체육의 문제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체육 속에서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운동에 관심이 없고 접해보지 않았던 일반인들이 많다. 그러나 현대에는 건강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만 둘러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운동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흥미를 잃기 마련이다. 생활체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 참여자들을 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더불어 나아가 평생체육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지도자들은 많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대우, 처우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도자들 또한 많이 그만두고 있고,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맞게끔 지도하고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137) "아나(여기)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공 여기 있다."고 교사가 공을 던져주는 것에서 유래.

(3) 전문체육

- 전문 체육의 문제점은 악습, 비리, 폭행, 인권침해, 가혹행위 등 아직까지도 번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은 아직까지 승리 및 결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인권위원회 등 그리고 얼마 전 빙상계의 부조리 등을 통해서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 환경, 합숙 등 많은 것들이 파헤쳐지고 개선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부조리 등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우리 체육회만 봐도 이러한 문제점을 뿌리째 뽑긴 힘들다. 아직도 어느 곳에는 폭력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체육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법안 및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간단한 징계가 아닌 강력한 처벌 등의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부조리 등에 대해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렴한 기관 및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 나쁜 악습 및 관행들의 대처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시대의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라!!!

[제5답변자, 29세]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 문제점

-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너무 높은 수준 차
- 지나친 국위선양과 경쟁과 성적만이 중시되는 엘리트 체육 (ex. 폭행, 욕설, 음주운전 등의 인성 논란)
-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아닌 협회를 위한 선수
- 협회장을 위한 직원과 협회 (체육협회, 단체장과 상급자의 비리, 횡포, 갑질)

2.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지나친 분리는 생활 체육의 수준을 계속 하락·유지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기본 소양 교육의 미비”이다. 지나치리만큼 우리나라는 “국위선양”과 “성적중심”이 중요하다. 특히나 엘리트 체육은 그로 인해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1등이라는 것만 생각하며 다른 행동들은 통제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심리는 엉뚱하게도 쾌락과 범죄로 그 사람을 몰들인다. 또한 선수를 위해 봉사하는 협회, 단체는 없다. 협회, 단체장들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바쁘다. 그로 인해 조직은 겉으로만 잘 돌아가게 되니 그 안에 당연 폭력, 갑질, 비리, 횡포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는 분께선 제발 문제점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인식을 바꿔 주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6답변자, 연령 정보 없음]

1. 체육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체육계 문제점

- 아직도 학연 지연으로 잘못 보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선수 엘리트에도 따돌림 또는 엔트리에서도 빠질 수 있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복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전공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피해자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 구조에서 특권의식을 가진 가해자가 공존하고 있다.

2.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 스포츠 폭력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가 성적만 좋으면 잘못된 행동도 묵인하는 엘리트 특권의식이 깔려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해결될 기대나 희망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단순한 선후배나 동급 간의 문제에서 확산돼서 코치나 감독 성인에 의한 폭력까지 수직, 수평 관계에서 모두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부록3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비리 관련 조항

[정의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의무 조항]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 조항]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51조(몰수·추징)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체육인보호·비리방지 조치 조항]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 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

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을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총서 21-A-02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발행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 S B N | 979-11-91565-14-0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